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줌머난민의 이주 생애와 인정투쟁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Migratory Life and Struggles of Jumma Refugees

2021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어 경 준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줌머난민의 이주 생애와 인정투쟁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Migratory Life and Struggle of Jumma Refugees

2021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어 경 준

이 논문을 어경준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1년 8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난민들이 지닌 문화적 배경과 상이한 새로운 정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인정투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저항, 인정과 수용, 공존과 통합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로 이주한 줌머난민의 난민 인정과정과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과 정체성 및 인정투쟁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취득 과정에 인정의 무시, 인정의 수용, 인정의 획득을 위한 노력 등 절실한 삶의 여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미디어,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간행물, 신문기사, 저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Merriam(2009)의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의 삶의 인식과 시각을 난민 신분을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생 전환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인적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과정에 방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줌머난민의 인정투쟁의 경험은 상위범주를 토대로 인정욕구 차원 경험,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으로 분류하여 의미를 기술하였다.

첫째,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는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와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라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 범주에서 도출된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에는 '뿌리째 뽑힌 줌머족의 대항, 해체 위기에 맞서는 좀머 가족들, 짓밟힌 삶과 재건을 꿈꾸는 민족' 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에는 '공공기관에 최소 생계비 도움 요청, 인간의 기본권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 자문화 유지보다는 살기 위해 선택한 동화' 라는 의미가 드러났

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줌머난민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에는 '이주민 차별' 과 '난민 무시' 라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 범주에서 나타난 '이주민 차별' 측면에는 '장시간 노동해도 한국인과 수입 차이, 경제활동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 국적취득 조건 충족해도 또 다른 어려움' 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난민 무시' 측면에는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난민으로 인식, 사업 잘되면 주겠다는 월급, 난민의 호소, 무시도 참고 아픈 마음도 인내한 시간' 이라는 의미가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인정훼손에 대해 극복하고자 하는 줌머난민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에는 '난민 공동체와 연대' , '사회적 기여' 라는 하위 범주가 드러났다. 하위 범주로 도출된 '난민 공동체와 연대' 측면에는 '줌머연대, 난민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줌머연대와 함께 문화적응과 교육 활동, 줌머연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사회적 기여' 측면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에 보낸 성금, 고국과 전세계 줌머족을 위한 모금운동,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 희망' 이라는 의미가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정주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줌머난민의 다문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줌머난민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정주국에서 난민 인정 욕구를 실현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인정투쟁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삶의 지평을 확장시켜가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체적 행위자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난민 문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연대를 통해 언어적·문화적 동질감을 갈망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줌머난민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높은 삶의 질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즉 주류사회의 다수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국적을 취득한 난민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시민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해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적취득, 줌머난민, 인정투쟁, 정체성, 생애사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표 목 차 ····· vii
그림목차 ····· ix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연구 문제 ····· 6
3. 연구 동향 ····· 8

Ⅱ. 이론적 논의 ····· 14
1. 이주와 난민정책 ····· 16
1.1. 초국적 이주사회와 난민 ····· 17
1.2. 한국의 난민 현황과 난민정책 ····· 22
2.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 42
2.1. 줌머족의 특성과 현황 ····· 42
2.2. 줌머난민의 인정투쟁과 정체성협상 ····· 47
3. 소결 ····· 68

Ⅲ. 연구 방법 ····· 69
1. 연구 개요 및 절차 ····· 69
2. 연구참여자 ····· 72
3. 자료수집 및 분석 ····· 77

4. 연구의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 81

Ⅳ. 줌머난민 이주과정의 생애사적 경험 ····· 83
1. 생애사적 경험 개요 ····· 83
2. 줌머연대활동으로 꿈을 펼치는 연구참여자 1 ····· 85
3.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연구참여자 2 ····· 92
4. 벽돌공장에서 꿈을 키우는 연구참여자 3 ····· 99
5. 쌍쌍둥이의 꿈을 지원하는 연구참여자 4 ····· 106
6. 한국 최초 줌머족 난민 연구참여자 5 ····· 113
7. 한국 국적이 자랑스런 연구참여자 6 ····· 120
8. 남동생의 수술을 꿈꾸는 연구참여자 7 ····· 126
9. 소결 ····· 133

Ⅴ.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 135
1. 인정투쟁 경험의 개요 ····· 137
2.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 ····· 138
2.1.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 138
2.2.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 143
3.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 148
3.1. 이주민으로서 차별 ····· 148
3.2. 난민으로서 무시 ····· 152
4.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 ····· 157
4.1. 난민 공동체와 연대 ····· 157
4.2. 사회적 기여 ····· 163
5. 소결 ····· 168

Ⅵ. 결론 ····· 173
1. 요약 ····· 173
2. 논의 및 제언 ····· 177

참고문헌 ····· 181
ABSTRACT ····· 188

표 목 차

<표 Ⅰ-1> 국내 난민 관련 연구(2000-2019) ····· 9
<표 Ⅱ-1>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세계 강제이주 동향 ····· 23
<표 Ⅱ-2> 유엔난민기구(UNHCR) 보호대상자 ····· 23
<표 Ⅱ-3>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세계난민 동향(주요국) ····· 24
<표 Ⅱ-4>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난민발생 상위국 ····· 25
<표 Ⅱ-5> 유엔난민기구의 2019년, 난민 비호 상위 상위국(전세계 68%) ···· 26
<표 Ⅱ-6>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허가 ····· 33
<표 Ⅱ-7> 난민 인정자 권리와 처우 ····· 34
<표 Ⅱ-8> 국적취득 절차 ····· 39
<표 Ⅱ-9> '치타공 산악지대' (CHT) 인구 분포 (2011 년) ····· 43
<표 Ⅱ-10> 방글라데시 난민현황(1994~2018년) ····· 45
<표 Ⅱ-11> 방글라데시 난민 사유별 현황(1994~2018년) ····· 45
<표 Ⅱ-12 국내 줌머족 유형별 난민 인구현황(1994~2020년) ····· 46
<표 Ⅱ-13> 개인의 자기의식 형성 과정 ····· 48
<표 Ⅱ-14> 인정의 유형과 가치 ····· 51
<표 Ⅱ-15> 무시형태 ····· 55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 76
<표 Ⅲ-2> 심층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 78
<표 Ⅲ-3> 연구참여자 인터뷰 개요 ····· 79
<표 Ⅳ-1> 연구참여자의 생애 시기별 주요 내용 ····· 83
<표 Ⅳ-2> 연구참여자 1의 생애사 경험 ····· 85
<표 Ⅳ-3> 연구참여자 2의 생애사 경험 ····· 92
<표 Ⅳ-4> 연구참여자 3의 생애사 경험 ····· 99
<표 Ⅳ-5> 연구참여자 4의 생애사 경험 ····· 106
<표 Ⅳ-6> 연구참여자 5의 생애사 경험 ····· 113
<표 Ⅳ-7> 연구참여자 6의 생애사 경험 ····· 120
<표 Ⅳ-8> 연구참여자 7의 생애사 경험 ····· 126

<표 Ⅴ-1> 인정투쟁 경험의 범주와 요소 ····· 136

그림 목차

[그림 Ⅱ-1] 인종문화 집단과 유입국 사회의 문화적응 전략 ····· 19
[그림 Ⅱ-2] 체류중 난민 인정 신청 ····· 36
[그림 Ⅱ-3] 출입국항 난민 인정 신청 ····· 37
[그림 Ⅱ-4] 줌머족의 거주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 ····· 42
[그림 Ⅱ-5] 이주자의 문화변용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유형 ····· 62
[그림 Ⅱ-6] 글로벌·다문화사회의 정체성 형성 ····· 64
[그림 Ⅱ-7] 난민의 정체성협상 모델 ····· 66
[그림 Ⅳ-1] 연구참여자 1, 2, 6의 이동경로 ····· 84
[그림 Ⅳ-2] 연구참여자 3, 4, 5, 7의 이동경로 ····· 84
[그림 Ⅴ-1] 줌머족 보이사비축제(2019. 4. 19: 김포) ····· 162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한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정보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초국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국가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점점 하나의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다(김영순, 2017). 또한 지구촌에 불어온 세계화 현상은 국제 이주를 가속화 하였으며 국제이주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이주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난민의 증가 또한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병하, 2017). 유엔난민기구(UNHCR)[1]에 의하면, 2017년에 박해, 분쟁, 폭력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출신국을 떠난 강제 이주민의 수는 66,543,154명[2]을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유엔난민기구(UNHCR), 2017). 이처럼 난민의 증가는 국제 정치 질서의 심각한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난민 증가문제는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며 2018년 5월에 한국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이 대거 입국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바가 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난민 수용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난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난민 수는 일부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내전, 종교 갈등, 인종차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2,000여 만 명을 넘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에 의하면 한국 내 전체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48,90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심사완료 결정자는 23,208명이고, 난민 인정자는 936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988명으로 총 2,924명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난민 신청자 수는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 2019년 15,451명으로 집계되었고, 난민 인정자 수는 2017년 121명,

1)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유엔 난민 문제 고등 판무관)1951년 1월에 발족한 UN의 산하기구로 국내・국제분쟁이나 재해에 의한 난민의 보호, 구제, 자발적 귀국 등의 알선을 한다. 이후, “유엔난민기구(UNHCR)”로 표기.

2) 유형별 인구 통계: 난민, 난민과 같은 상황, 망명 신청자, 실향민들, 무국적자, 기타.

2018년 144명, 2019년 7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2017년 318명, 2018년 514명, 2019년 169명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통계를 볼 때, 앞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난민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내 난민 유입 및 정착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난민 공동체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여지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난민 신청 이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시리아 난민들과 2018년 입국한 예멘 난민들은 국가나 민족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밀집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난민 인정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김포, 안산시 단원구, 용산구, 부천, 부산진구, 부산사상, 평택, 인천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난민 밀집지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2018년 9월 말에 서울의 구로와 용산구, 경기도 포천, 인천 연수구 등 다수의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안산 단원구, 평택, 광산구, 동두천, 파주 증지에 거주지를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부평구에는 미얀나 카렌족이 재정착난민으로 집거지를 형성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경기도 동두천, 안산 등에는 아프리카의 지역 난민공동체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최영일, 2019).

난민들은 초기의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점차 실제적인 지역 생활단위인 읍·면·동으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민족별 밀집도가 강해졌으며 규모 역시 확장되었다. 또한 지자체(읍·면·동 단위)의 난민들은 이주민, 선주민들과 다양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로 공장지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비가시적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난민들은 가시적인 존재들로 시민사회와 접촉하면서 정체성의 갈등과 혼돈 및 여러 가지 혼종적 변화에 더욱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결합이나 이미 가족 단위별로 입국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양육・교육・경제・언어・사회문화・법과 제도적 등 다양한 제약들과 직면하기도 한다.[3] 다수의 난민들은 난민 인정과정에 관한 논쟁에 이어 난민 인정투쟁, 민족 정체성 투쟁 등을 동반한다.

3) 가족정착은 사회복지제도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접촉점에서 혜택뿐만 아니라 배제나 차별의 문제들 또한 경험하게 된다.

난민들은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르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생활 체계 안에서 선주민과 이웃으로 공존을 하기 위하여 난민 정착에 필요하고 유효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난민의정서 비준, 그리고 201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에는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후, '난민에 대한 지원제도 미비, 저조한 난민 인정율에 대한 비판, 예산 부족, 초기 심사의 전문성 부족, 난민 심사 전담공무원 부족, 난민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난민의 무관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화가 되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난민 처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난민 수용을 비판하는 의견과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상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과거 일제강점기 혹은 한국전쟁 중에 우리 민족이 경험한 난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과 난민 인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국제적 문제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해결하는 국가로 인지된 만큼 그 역할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포함해 여러 인권조약을 맺고 있는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연합뉴스, 2019).

세계 각지에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안전한 삶을 찾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오늘날의 난민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들은 집과 가족, 그리고 모국을 포기하고 낯선 땅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기복, 2003).

근대화의 길지 않은 역사 속에 난민의 삶을 경험한 한국는 증가하는 있는 난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미 한국 사회로 진입한 수 많은 난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국적 이주를 단행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난민인정자, 혹은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보다 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위해 강인한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난민 발생 규모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19년 4월말 기준, 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낮은 비율로 국제적

협력하에 선제적으로 난민수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난민심사와 인정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제도적 쟁점에 집중되어 있다. 실질적 난민 이주 과정, 난민 인정과정, 국적취득 과정, 주류사회구성원 간의 사회통합 문제, 해결 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난민들이 이주 과정에서부터 난민 인정과정, 국적취득 과정, 그리고 국적취득 이후 삶의 전반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가정할 때 난민들의 어려움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인정투쟁의 경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의 경험을 인정투쟁의 렌즈로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으로 유입되어 국적을 취득한 난민 경험의 의미를 통해 정착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난민 정책이나 사회통합정책에 제시하고자 하며 국적취득 후 난민의 삶에 나타난 경험에 근거하여, 선주민에 대한 이해와 지평을 확장시키며 문화적 소수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미 한국 사회로 유입되어 난민인정을 받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난민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주국에서 적응하며 지역사회, 일터, 그리고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소속감, 문화, 경제, 국가관 등 다양한 인정에 대한 결여를 경험함과 동시에 소수자로 살아남기 위하여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과 투쟁이라고 할 만큼의 어려움을 경험한다(Lazarus, 1976).

자신의 모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후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이며 모험과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난민들의 난민 인정과정, 국적취득과정, 국적취득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드러난 과정과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종전의 국가와 한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 이주와 정착 과정의 갈등 및 저항, 인정과 수용, 공존과 통합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줌머난민 7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한국 이주 과

정, 난민신청 과정, 그리고 줌머난민의 삶, 이후 한국 국적취득 과정, 국적취득 후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특히 난민들의 적응과정에서 인정투쟁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상세한 이주생애 경험을 경청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생애사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문제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슈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난민의 수는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난민인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난민에 대한 인정률이 매우 낮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에 사회통합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난민의 이주 과정에서부터 난민 인정과정 및 국적취득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연구가 미미하였으며 이런 실정을 직면하여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의 이주 과정에서부터 난민 인정과정 및 국적취득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생애사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인정투쟁의 이론적 렌즈를 동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생애사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한 개인이 스스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던 삶의 여정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수집하고자 함이며, 이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어 한국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생애사적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 문제 1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의 이주 과정, 난민 인정과정 그리고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생애사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 2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 경험의 의미를 인정투쟁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및 내용, 그리고 연구동향을 고찰하였고, Ⅱ장에서는 이주와 난민정책을 다루면서 초국적 이주 사회에서의 난민, 한국의 난민정책과 난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줌머난민의 인정투쟁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 렌즈를 마련하고자 줌머족의 특성과 줌

머난민, 줌머난민의 정체성과 인정투쟁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연구하기 위해 생애사연구를 통해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개인의 이주 과정, 난민 인정과정, 그리고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난민의 생애 경험 속에는 삶의 전환기마다 치열하고 투쟁적인 삶의 경험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연구 문제 2를 해결하는 Ⅴ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인정투쟁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이어 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난민의 삶에서 한국 국적취득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의 생애사적 경험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자 신분에서 난민 신분으로, 난민 신분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주류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을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 동향

2000년 중반까지 난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고려 없이 간헐적으로 논문화되는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밀입국 난민, 불법 체류 난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강하게 한국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고착되었다. 이후 난민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난민 수용 정책, 제도, 치안, 안보, 경제 등에 미치는 비판적인 시각과 대응 방안을 다룬 연구가 하나둘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난민 정책이나 제도와 같이 난민에 대한 일반적이고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을 뿐 내면적인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요원한 상황이다.

난민 발생 국가의 배경에는 과거 우리가 경험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와 닮은 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는 하나 지난 역사를 잊은 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연대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최근 난민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난민에게 가지는 관심과 연구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는 난민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난민' 이라는 1차 키워드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여 152건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분류한 논문 8건(5.2%)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난민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다음 <표 I-1>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표 Ⅰ-1> 난민 관련 연구(2000-2019)

(단위:건)

년도 / 주제	'00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
난민 실태	4			3	3	4	8	7	15		44	30.6
난민법과 인권	3	1	1		2	3	1	5	1		17	11.8
난민정책	3	1			2	1	14	12	6		39	27.1
재정착난민				1		1				1	68	2.1
난민적응(인정, 보호, 수용)	13	1		3	2	3	6	7	6		41	28.5
계	23	3	1	7	9	12	29	31	28	1	144	-
%	16	2.1	0.7	4.9	6.3	8.3	20.1	21.5	19.4	0.7	-	100

<표 Ⅰ-1>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이후부터 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난민 관련한 논문이 2016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해외국가 및 관련국 간의 움직임이 이슈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난민 관련 연구는 난민 실태, 난민법과 인권, 난민 정책, 재정착 난민, 난민적응 등 5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난민의 실태에 관한 연구(박종일・이태정, 2013; 송영훈, 2016; 권한용, 2016; 김현미, 2018; 허영식・강현석, 201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일・이태정(2013)은 난민발생의 문제는 글로벌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경제시장의 확대를 비롯한 국가의 실패, 그리고 분쟁과 전쟁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은 난민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글로벌한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도모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송영훈(2016)은 난민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난민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전문가 양성 등의 과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민 정책의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권한용(2016)은 한국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하에 난민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신청 대기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한 난민 보호 정책 및 정착지원제도를 제안하였다. 김현미(2018)는 난민을 보호대상이나 시혜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난민과 선주민이 함께 일하고 거주하고 상호교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적 연대자로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영식・강현석(2018)은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쟁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적·구조적·사회적 통합을 고려할 것과 사회통합·다문화사회·이주사회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면서 실제적인 조치와 정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과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고려사항, 그리고 난민 발생 국가의 현안적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역할 등 난민 유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난민법과 인권에 관한 연구(박선욱, 2013; 송효진・김소영 외, 2015; 오승진, 2016; 박인현, 2106; 한종현・황승종, 2018)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박선욱(2013)은 난민정책과 규범의 발전과정, 그리고 한국의 난민협약 이행과정을 살피고,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과 난민 권리의 실질적으로 보장 및 법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송효진・김소영 외(2015)는 난민여성 정책 및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다문화정책 및 여성권익에 관련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난민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승진(2016)은 한국의 난민법의 문제점으로 난민 인정자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일반 규정의 부재, 난민신청 시 사실 은폐에 대한 판단 결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애매한 지위 발생,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조력의 권리가 형식적인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인현(2106)은 난민법을 검토하여 난민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전환, 학교 교육의 난민 인권교육 도입, 일반 시민 대상의 인권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극복, 난민들의 취업에 대한 배려 등 난민과의 상생 측면에서 인권교육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종현・황승종

(2018)은 난민법의 취지, 난민 인정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난민신청자의 개념과 체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난민법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인권, 난민 여성 문제, 정책과 제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난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포용하고 피해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난민 정책에 대한 연구(오병훈, 2015: 김시정·김지은 외, 2016; 한동호, 2016; 김대근・강태경・이일, 2017; 홍정화・김은혜, 20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병훈(2015)은 난민 심사 이후 강제 퇴출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난민신청의 회수제한을 없애거나 주기적인 강제퇴거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수를 완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여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호혜 조치를 상시적 운영 등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시정・김지은 외(2016)는 난민 취업과 관련한 난민 정책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난민신청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기간 단축, 국가 차원에서 취업 제도 및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난민의 사회경제적인 지원 등 난민 취업과 관련한 난민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동호(2016)는 한국 난민 정책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필요성,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체제구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NGO 사이의 역할분담과 효율적이고 긴밀한 협업체제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대근・강태경・이일(2017)은 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는 일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살펴보고 난민인정 절차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시도하였다. 홍정화・김은혜(2019)는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통해 난민 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파악하고 난민 정책의 기본인 난민을 보호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난민 인정절차에서의 입증문제, 전문통역 인프라구축 문제, 난민신청자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문제 등의 해소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난민 심사 시 난민 인정의 문제점, 경제적 활동, 중앙과 지방의 협치 등을 제안한 연구로, 난민에 대한 인정은 정착국의 보호 의무이기 때문에 국내적 상황이 고려되

어야 하며 특히 국민 정서, 경제, 안보, 치안 등의 전반적인 요인을 살펴야 하므로 국가적 부담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다.

넷째, 재정착난민에 대한 연구(신예진・신지원, 2013; 옥영혜, 2015; 이병철・송다영, 2018; 박봉수・김영순, 2019)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신예진・신지원(2013)은 재정착 난민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착 난민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과정, 전문적인 지원체제 구축, 정착지원 초기 프로그램과 종료 후 프로그램이 지역정착과정과의 연계성, 지역밀착형 초기 정착지원 프로그램실시 등 한국의 새로운 난민법과 재정착 난민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옥영혜(2015)는 재정착 난민제도(Resettlement) 및 난민 정책(Refugee policy) 관련 문헌 및 논문들을 분석하여 재정착 난민의 새로운 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해 학교 교육과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병철・송다영(2018)은 자원활동가들의 재정착 난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를 밝히고 추출된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박봉수・김영순(2019)은 재정착 난민의 초기 정착지에서의 생활을 살펴보고 재정착 난민이 되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과 이주 후의 경험, 이 과정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삶의 궤적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난민 문제를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분산하고 재수용하여 난민의 안정적인 재정착 생활에 관심을 둔 연구이다. 한국 사회도 2000년대에 재정착 난민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섯째, 난민적응 관련 연구(이용호, 2007; 정인섭, 2009; 안성경・윤이숙, 2013; 오태곤, 2016; 손주희, 2017; 김은정, 201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호(2007)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유엔난민기구(UNHCR)의 규정(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기초하여, 난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 사회가 난민협약의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난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같은 인권보장을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인섭(2009)은 한국은 협약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난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난민 문제가 신속하고 전문적으

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난민을 사회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난민 문제를 인류 보편의 인권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안성경・윤이숙(2013)은 독일의 난민법을 분석을 통해 한국 난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 제시하였다. 한국의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투명성 확보가 진전되었고 난민 인정자의 사회권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난민 인정자 처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오태곤(2016)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제고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은 난민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난민심사관의 직제를 늘리고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손주희(2017)와 김은정(2017)은 난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 적응 등의 어려움에 따르는 해결방안으로 난민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제도적 개입, 의료지원 보장, 출신 국가별로 활성화된 자조 모임 및 자국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 모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 내 네트워크 확대 등 한국 사회의 제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난민에 관한 연구들이 난민법, 난민정책, 난민의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은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며 난민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과 세계적 기구에 동참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난민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시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구성원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이나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구성원 모두 주체로서 인정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들의 이주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의 삶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민족・종교・인종・정치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내전 등이 발생하여 모국에서 자신들의 생존 및 안정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에 처한 경우, 낯설지만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찾아 모국을 떠나는 난민들이 전 지구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난민의 문제는 특정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난민의 문제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복지를 이상으로 삼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소명을 가져야 한다. 특히 난민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가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애,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국제 사회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난민 구호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밝히고 있다. 첫째, 난민의 국제적 원조와 보호를 제공한다. 둘째, 자발적인 난민의 본국 귀환이나 새로운 동화가 국내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한다. 셋째, 관련되는 국가 정부의 승인 아래에 민간단체 및 이와 관련한 지원 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난민의 영구적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넷째,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지니며, 그 임무는 일반적으로 난민 집단 및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과 관계되는 인도적,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김철민, 2012).

1951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난민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이후부터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여 국내법상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과 수용적 차원에서 외형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외형을 갖춘 이후에도 실질적인 난민 수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오승진, 2012).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동참 요구를 받아들여,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

함으로써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난민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을 국제문제로 이슈화하고, 나라마다 자국의 처지에 걸맞게 분담과 역할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난민의 문제는 국제 사회의 큰 관심사로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나라가 함께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참하고 있다.

난민은 20세기 말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부터 1989년까지 유럽을 시작으로, 1990년 연방 해체가 된 유고슬라비아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였다. 동유럽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민족분쟁과 내전 등으로 마케도니아에서는 23만 2천여 명의 난민과 실향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이슬람국가와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초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온 예멘인 400여 명의 난민신청을 기점으로 난민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난민의 발생 요인으로는 민족 간 갈등, 종교·문화의 모자이크, 강압 통치, 쿠데타와 테러리즘, 이데올로기의 차이, 자원에 의한 분쟁, 민족 간의 인종청소, 자연재해와 환경적 요인, 국력과 지역적 우세, 인권 유린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시리아, 미얀마 등에서 매년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머족은 자국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이주 압박에 의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줌머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줌머족은 대부분 방글라데시의 산악지대에 모여 살면서 불교를 숭상하고, 선대로부터 황량한 지대를 물려받아 비옥한 땅으로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수 사업 등을 이유로 저지대 타지역인들을 줌머족의 지역으로 이주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민족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방글라데시에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줌머족 거주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거의 이슬람 종교를 가진 민족들이었다. 소수민족인 줌머족은 다수 이슬람인의 이주를 반대하며 정부의 군과 경찰과 대치하다 타지역 이주민들로부터 폭행, 폭력, 살인, 방화 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이 일구어온 터전을 버리고 도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줌머족의 도피처는 가깝게는 인접 국가인 인도, 스리랑카에서부터 멀게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로까지 피신하였고, 그중에서 일부 줌머족은 한국행을 선택하

면서 오늘날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본 장은 초국적 이주의 개념과 난민정책 현황을 탐색하고, 연구참여자인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연구를 위한 이론과 개념을 논의할 것이다.

1. 이주와 난민정책

‘이주’, 그리고 ‘이주민’이란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표준화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로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오거나 가서 사는 행위, 그리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정책입안자, 국제기구, 학계 등에서는 ‘이주민’의 개념으로 난민, 경제적 이민자, 망명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주’를 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나은 기회를 찾고자 타국의 국경을 넘어가는 능동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며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난민(難民, refugee)’의 경우, 그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이주와 달리 난민은 현재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국의 무장분쟁과 정치·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월경하는 비자발적인 이주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고국에서 견디기 힘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국경을 넘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자국의 보호를 원치 않으며, 국제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등지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반(反)난민 정서를 이용한 극우적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난민을 테러리즘의 싹으로 여기며 ‘이슬람 포비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난관에 맞서 난민이 사회 속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난민의 사회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한국도 2018년, 대규모 ‘예멘 난민’의 제주도 유입 사태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가열되면서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난

민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난민 문제는 이성적이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류공동체로 바라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해야 한다는 관점과 하나의 사회 또는 민족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과 역사, 생활의 문화 차이 등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립될 수 밖에 없는 관점이 존재한다. 난민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 다양성의 존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 한국 사회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난민의 사회화는 난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하는 사회통합의 관점임은 자명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마련이다. 즉 난민의 인권 보호와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상적인 인류애와 자국민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부딪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각 나라의 고민이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각 나라의 공통된 고뇌와 고민을 잠시 덮어두고, 이주와 난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술하기 위해 문헌 자료를 통해 초국적 이주 사회와 난민, 그리고 한국의 난민정책과 난민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1.1. 초국적 이주사회와 난민

난민이 증가하고 초국적 이동이 잦아져도 난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세계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우리가 이들의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난민에 대한 갖는 선입견과 전형성은 어쩌면 차별과 배제라는 우리 내면의 위계 된 구조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난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대 화두는 바로 난민과의 공존이다. 난민이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화 과정을 돕고 주류사회의 다수 국민과 문화적으로 함께 어울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만날 때 다양한 문화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난민은 정주국가에 거주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마찰을 경험하면서 문화적응 문제에 따른 갈등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오베르크(Oberg, 1960)는 1960년대에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단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그는 개인이 타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네 단계의 정서적인 반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첫 단계는 우호적인 단계로 새로운 문화를 접해 보면서 황홀, 열정, 감탄 등을 느끼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로 조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회복 단계로 위기를 모면하고 해결하면서 문화를 배워 나가는 시기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문화를 적응단계로 기능적으로 즐기며 유능해지는 단계라고 하였다.

베리(Berry, 1997)는 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문화접촉 현상은 어느 한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난민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문화적응유형은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Berry, 1991), 소수집단의 이주자들은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이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ilz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베리가 주장하는 문화적응 전략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은 더 큰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사회의 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동화유형은 새로운 이주 사회에 흡수되기 위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분리 및 차별 격리는 이주 사회 성원들과는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이주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문화 유지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여기서 차별 격리는 이주 사회 주류집단과 분리되어 살게 되는 수동적 행동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 유형은 자신의 문화 유지 및 이주 사회와 관계를 갖는 것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라고 하였다(Berry, 1997).

이주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응 태도를 이주 사회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어떠한 유형들을 가질 것인가는 이주자 자신 스스로가 결정한다. 베리는 유입국

에 대한 이주자의 적응만을 조명하는 일차원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교차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차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그림 Ⅱ-1]는 베리의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 이외에 이주자가 유입국 주류사회의 구조적 상황과 유입국 사회가 이주자에게 제시하는 문화적응 네 가지 전략이 추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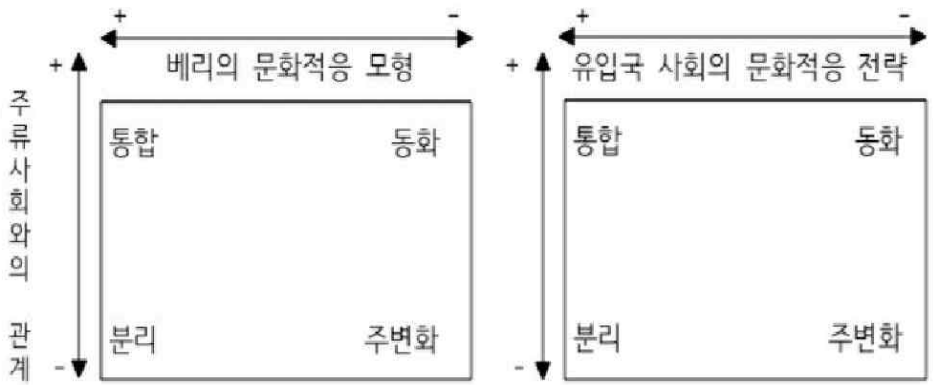

[그림 Ⅱ-1] 인종문화 집단과 유입국 사회의 문화적응 전략

첫째, 유입국 사회의 용광로 모형은 주류사회가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흡수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전략이다. 이 모형에서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지속성은 부정되고 일괄적으로 하나의 국민,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 즉, 동화 모델은 유입국 주류사회에 의해 용광로 모델이 강력하게 추진될 때 구축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하나의 비빔밥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이주자의 분리 전략은 이주자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에 소극적이며, 유입국 주류사회 역시 이주자를 강제로 분리할 때 분리 전략을 한다. 셋째, 유입국 주류사회가 이주자를 강제로 배제할 경우, 이주자는 주변화 전략을, 유입국 사회는 배제 전략을 사용한다. 넷째, 이주자의 통합 전략은 유입국 사회가 전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목표로 삼고, 상호 간의 문화를 수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다문화주의 모델이라 한다.

이주자가 유입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유입국의 사회문화를 포함

한 모든 환경적 요소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며, 이주자는 이러한 유입국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반응하게 된다. 이주자들이 유입국에서 실질적인 시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키려는 규범을 새로이 내면화해야 한다. 난민의 사회적 적응은 문화적응 과정 또는 결과의 한 측면에서 문화적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화적 학습은 유입국에서 재사회화, 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익힘으로 행동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사회화의 결과로 사회제도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가고 이념과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며 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난민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는 데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세 가지 사회화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박정서, 2012).

첫째,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은 이주자에게 이주 이전 초기의 정치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이론이다. 저항이론에 의하면 생애 형성기에 만들어지게 된 저항성과 정치적 정향성의 견고성 때문에 이주자가 새로운 규범과 행위, 정치 지식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초기에 얻어진 정치적 성향과 태도는 강력한 지속성을 지니게 되어 초기에 습득한 내용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메시지들은 피하거나 거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민성과 정치 사회적 적응으로의 전이가 부정적이라는 견해이다(오욱환, 2003).

둘째, 노출 이론(exposure theory)은 이주자의 사회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유입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출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정체성은 이후 어떤 정보나 정치적 환경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새롭게 다시 재구축된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새로운 정보와 정치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질수록 더 많이 적응한다는 보고, 적응과 노출 정도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전이가능성 이론(Transferability theory)은 이주자가 모국에서 축적되어 온 정치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전제이다. 전이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과 소양이 유입국으로 전이되어 정치적 태도나 행동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주자들은 주체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는 것이다. 이주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의 노출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정치적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과거에 이미 발달시킨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전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의 경우 역시 누적된 경험과 능력에 따라 새로운 정치 학습과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모국에서의 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미숙, 2019).

난민들이 정주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 공동체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내국인의 관심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A.시걸(2018)은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공감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틀이라고 하였다. 공감은 개인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고 중요한 개념이다. 개인적 공감은 대중적 차원이나 매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감이며,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에 토대를 두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려면 외모가 다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하며, 사회적 공감은 타자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전세계 이민자 수는 2019년 2억 7200만 명으로 2010년부터 5100만 명이 증가하였다. UN이 2019년에 발표한 추계에 의하면 국제이민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8%에서 2019년 3.5%로 높아졌고, 국가별로는 유럽이 가장 많이 국제이민을 받아들였으며(8,200만 명), 북미(5,900만 명)와 북아프리카・서아시아(4,99만 명)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United Nations New York, 2019).

난민을 비롯한 이주자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와는 서로 다른 측면이 많을 것이다. 문화 차이에 따른 세계관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에서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다원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다른 문화와 통합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가지각색의 다양한 존재인 문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발전적이고 이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문화적응과 재사회화를 통한 이해와 공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 한국의 난민 현황과 난민정책

1.2.1. 한국의 난민 현황

오늘날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4] 의 채택 이래로 '사실상 난민', '현장 난민', '협약 난민', '실향 난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1969년 '아프리카기구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의 개념이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난민협약상에 규정된 난민에 대해서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즉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의 난민 인정은 상주국에서 법적 지위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 UN총회 결의 및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보호 활동을 한다.

UN난민협약 제1조에는 난민을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세계난민 동향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으로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난민협약에서는 조약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은 1967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보통 난민의정서라고 부른다.

<표 Ⅱ-1>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세계 강제이주 동향

구분	항목	인원(명)
강제이주난민	국내실향민[5]	4,570만
	난민※	2,960만
	난민 신청자[6]	420만
	총	7,950만

출처:유엔난민기구(UNHCR), 2020

2020년 6월에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 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으로 7,950만 명이 강제이주 난민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한 최대 규모의 강제실향민이다.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혹은 '실향민' 은 국내 실향민, 난민 그리고 난민신청자를 의미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보호의 목적은 난민을 위한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전하게 타국에서 보호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유엔난민기구(UNHCR) 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	정의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비호신청자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
국내실향민	비호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

5)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이다.

6) 난민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으로 난민 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난민심사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 역시 국제적 보호를 받으며 강제송환 될 수 없다.

귀환민	자국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
무국적자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이 처한 상황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정과 본국정부등의 가정체제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의 여성
	보호대상자인 모든 아동들의 니즈에 대처필요한 어린이
	노인층의 권리와 기여 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여 노인층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의 노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특수한 니즈를 충족이 필요한 상황의 장애인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2018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을 보호 대상자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난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제공하는 2019년 세계난민 동향은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세계난민 동향(주요국)

구분	항목	인원(명)
등록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	2,040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7]	560만
신규 난민 신청	미국	30만 1000
	페루	25만 9,800
	독일	14만 2500
	프랑스	12만 3,900
	스페인	8,300
	한국	1,500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2020

난민의 발생 요인은 지도자의 강압 통치에 의한 난민, 종교·문화의 모자이크로 인한 난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난민,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난민, 쿠데타에 의한 난민, 테러리즘에 의한 난민, 국력과 지역적 우세, 자원에 의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지역의 민족들 간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에 의

7)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UNRWA):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각주1) 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복지, 구호 사업을 펼치는 국제기구다. 1949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 직속 국제기구로 본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 암만에 나뉘어 있다.

한 난민,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민, 인권 유린으로 인한 난민, 분쟁과 내전으로 인한 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훈태, 2016).

난민이 발생되는 국가는 최근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으나 특히 난민 발생 국가로 낙인되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내전과 종교문제, 경제적, 정치적 문제, 폭력 등으로 인하여 난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난민 발생 상위국은 다음 <표 Ⅱ-4>와 과 같다.

<표 Ⅱ-4>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난민발생 상위국

구분	주요	인원(명)
시리아	내전, 종교	660 만
베네수엘라	경제, 정치적	360 만
아프카니스탄	전쟁	270 만
남수단	내전	220만 1000
미얀마[8]	폭력	110 만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2020

난민 발생 상위국인 시리아는 다른 아랍국가들과 다르게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내전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수년 간 불안한 정치 상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우는 구소련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원인이었다. 남수단은 유전에 대한 수익 배분의 문제로 내전이 발생하여 인구 감소와 심각한 기아 문제가 난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탄압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출처: https://dongdaemunin.tistory.com,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난민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난민 비호 상위 상위국은 지리적 특성에 있어 난민의 유입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 세계난민의 68%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난민 인접 국가의 난민 수용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표 Ⅱ-5>는 난민 비호 상위 상위국을 나타낸 것이다.

8)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Rohingya persecution in Myanmar)는 미얀마 내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탄압으로 2016년 10월 6일부터 진행 중이다.

〈표 Ⅱ-5〉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19년, 난민 비호 상위국(전세계 68%)

구분	인원(명)
터키	360 만
콜롬비아	180 만
파키스탄	140 만
우간다	140 만
독일	110 만

출처: 유엔난민기구(UNHCR), 2020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국가 간 전쟁, 자국 내 내전, 민족 간 분쟁 등으로 인명 위협, 인권탄압, 박해, 폭력, 핍박 등으로 인한 난민이 안정적인 정착지를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난민의 유입은 이웃 나라의 일이 아니며, 지금 한국에서도 난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요원한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유입을 분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국민 간 분열, 안보 불안, 정치적· 외교적 고립, 인권의 후퇴, 세계 시민성 인식의 배치 등 국가의 중요한 구심점이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했던 난민의 처지를 회상하여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이의 인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인간 발달의 흔적이며, 우리가 지녀야 할 다문화적 감수성이다(김영순, 2016).

난민은 자기 발전과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이주가 아니라 국적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생겨난 욕구로 즉 국가가 인간 삶의 기초적인 문제해결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자국의 현실을 피해 세계를 떠돌며 난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난민들은 또다시 정주국에서 현실과의 괴리에 마주하게 되는 이차적 고통을 안게 된다.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 주는 국가는 극히 드물며 받아들이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 또한 만만

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2018년도 12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에 의하면 한국 내 전체 난민신청자 수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48,90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심사 완료 결정자는 23,208명이고, 난민 인정자는 936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988명으로 총 2,924명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난민신청자 수는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 2019년 15,451명으로 집계되었고, 난민 인정자 수는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 2019년 7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2017년 318명, 2018년 514명, 2019년 169명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난민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애를 구현해야 하는 원천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1.2.2. 한국의 난민정책

한국은 1992년 12월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이하 "난민협약") 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이하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적 난민 보호국의 역할에 동참하였다. 난민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복지시스템 위에서 자국민과 난민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난민보호국가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주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규정을 신설하여 난민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이주자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은 본질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이를 강제 송환하는 법집행이 주요 목적이다. 1992년 이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조인하였어도 난민 보호는 사실상 배제되었거나 난민 인정 또는 보호 사례가 드물었다. 이후 2006년부터 난민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 회의 법률 청원을 근거로 2009년 3월에 입법발의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계기로 2012년 2월 입법 발효를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에 따라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9] 안에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흩어져 있던 난민 관련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법제를 갖춘 것이며, 이는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박봉수·김영순, 2017).

한국의 난민 정책의 난민에 대한 적용 기조는 출입국관리법[10]에 두고 있으며, 난민법[11]은 아시아 최초로 입법 개정하여 난민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에 난민 정책을 반영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정·지원시스템 마련과 선진적인 난민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외국인 정책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와 기타 외국인 정책이 우선인 관계로 인하여 난민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2018년 예멘 난민신청자가 집단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난민에 대한 허용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난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문제점들 표면 위로 나타났으면 이는 난민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적 한계와 전문성에 대한 미비점 그리고 난민신청자 처우 등 전반적인 난민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난민 정책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을 근간이었으며, 근래 상황에 맞게 전략적 대응방식으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며 제도적 측면 역시 전문성과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와 국외의 비판이 일어나자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부터 2017년의 난민에 대한 인정률이 32.723건에서 706건으로 2.1%에 불과하였다.

---

9)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 자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10)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 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 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따라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상 난민이라고 해도 실제로 신청국에서 난민 인정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아야만 난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난민정책의 현실화와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한국의 난민지원정책은 첫째, 국내에 입국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신청 초기 생계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용하여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난민지원시설에서 주거를 지원하고 건강검진 비용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난민신청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국민과 동등하게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난민 인정자는 국내에서 체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초생활 보장・사회보장・건강보험 적용・한국어 교육・사회적응 교육을 보장하고 난민 여행 증명서의 발급으로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취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그리고 응급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한국의 난민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난민신청자의 대기실은 출국대기실과 달리 법무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대기실을 이용한다. 이에 반하여 출국대기실은 '항공사 운영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는데, 만약 출국대기실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공항만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 후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민 회부심사과정을 거치는데, 회부에 결정된 사람은 난민신청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입국이 허가되고, 불회부결정된 사람, 즉 회부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입국 심사를 과정을 거친다. 만약 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불허되면 출발국가로 송환지시를 받고 출국대기실[12]에 머무르게 된다. 출국대기실에서는 여권 위・변조와 국익에 대하여 위험이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 체류에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출발국가로 송환 전까지 일시적인 대기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항만 사

12) 출국대기실은 입국불허자가 머무르는 곳으로, 난민 신청자가 머무르는 난민 신청자대 기실과는 다른 곳 이다.

전심사를 받게 되는데 공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기만 하면 입국하여서는 안 될 사람이 난민을 신청한 후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13]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만에서 사전심사 성격의 회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만의 회부심사 제도는 복지와 인권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는 회부심사 기간(7일) 동안 기다리는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머물면서 세 번의 식사 제공 및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며 남성 및 여성 대기자실 그리고 가족실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인권 측면에서는 출국대기실의 경우, 개방형 시설로 운영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 자유롭게 공항 환승 구역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자비 식사도 가능하다.

한국의 난민 심사는 난민법이 규정하는 선도적인 절차와 체계에 따라 난민에 대한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고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점차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난민 심사 절차는 먼저 지방 출입국사무소의 1차 심사 이후,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국의 난민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출입국사무소의 1차 심사이다. 1차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지방 출입국관서에 출석하여 난민 신청서에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후 전문 난민심사관이 당사자를 면담한 후 받은 면담 시 진술과 제출받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심사한다. 사실조사와 면담 등 모든 과정에서 난민의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통역인을 통한 통역, 녹음과 녹화, 변호사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관은 각국의 국가 정황에 대한 정보, UNHCR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난민 관련 보고서 및 판례에 대하여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의뢰를 하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자 진술에 대한 진실성과 신빙성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이다. 2차 심사는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난민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신청 기각에 대한

13)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질문에 응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거짓서류 제출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 신청한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자가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 한 경우 등(난민법 제6조, 제5조 참조).

이의신청이 가능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난민 인정 여부를 다시 재차 심의한 후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위원 6명과 판사 1명, 국제법, 중동, 아프리카 지역 정보와 사정에 해박한 교수 3명, 변호사 2명, 적십자사, 인권재단, 시민단체 간부 3명 등 민간위원 8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 전문성에 따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분과 위원회을 구성, 분기별로 이의신청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체 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회의의 결정 방식은 전체 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을 토론하고 이를 무기명 비밀투표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안건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부결된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즉시 같은 방식으로 의결하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난민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기각 시 난민신청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심사 절차는 2차례의 심사와 이의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의 인정보다 국가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임시적인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 시 취업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처우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의 복지에 관해 살펴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본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14]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과의 형평성도 고려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및 형성과정과 관계 부처와 정책적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14)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회당 500만원 지원(500만원 초과시 의료기관 심의를 거쳐 1,000만원 범위 내 지원).

이어서 한국의 재정착 난민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재정착 난민이란 다른 나라의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 중 우리나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UN 난민기구의 추천이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아시아지역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과 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착 난민제도[15]를 도입하였으며 첫 사례로 미얀마 난민 수용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재정착 난민 수용을 위하여 아시아 최대 난민캠프인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2015년~2017년,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매년 30명 이내에서 가족단위로 수용하고 있다.

UNHCR로부터 추천받은 미얀마 난민[16]에 대하여 서류심사 그리고 신원조회 과정를 거쳐 2015년 10월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서 면접 심사 진행 후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대상자 선정하여 2015년 12월부터 국내로 입국시켜 현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내외적으로 난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국격에 맞은 난민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첫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UN 난민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정례 워크숍 개최, 인권교육을 포함한 난민심사관의 교육을 통한 교육 내실화로 난민 심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둘째, 난민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셋째, 난민 심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문제의 재인식과 현재의 난민 심사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정부의 난민 정착지원도 미국의 난민 정착지원과 같이 중앙 및 지자체와 난민지원단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와 전문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1.2.3. 난민 인정 절차

15)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 가운데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16)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태국 소재 난민캠프 거주자 중 약 83%를 차지하는 카렌족을 추천하였다.

한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을 통해 난민 협약상에서 규정된 난민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 인정제도에 관한 기반을 만들었다. 난민신청자는 다음 <표 Ⅱ-6>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고 난민 인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표 Ⅱ-6>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허가

체류허가 항목	체류허가 내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부여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준비기간 중이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준비기간 중이거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난민 신청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회 6개월 범위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체류지변경신고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 소장에게 전입신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난민 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난민 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위의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 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

습니다.(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내)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9

난민 신청 이후의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 인정자 권리와 처우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Ⅱ-7>과 같다.

<표 Ⅱ-7> 난민 인정자 권리와 처우

난민 인정자의 권리	처우 내용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난민 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	난민법에서 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	난민 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을 수 있음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 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시 면접시험면제 등 혜택이 주어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은 본인이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9

난민 인정신청은 출입국항에 난민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와 체류 중에 난민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시 실시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신청' 제도는 공항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강제송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경우 입국을 허가하여 난민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난민 인정절차는 체류중 난민 인정 신청은 다음 [그림 Ⅱ-2]와 같고, 출입국항 난민 인정 신청은 다음 [그림 Ⅱ-3]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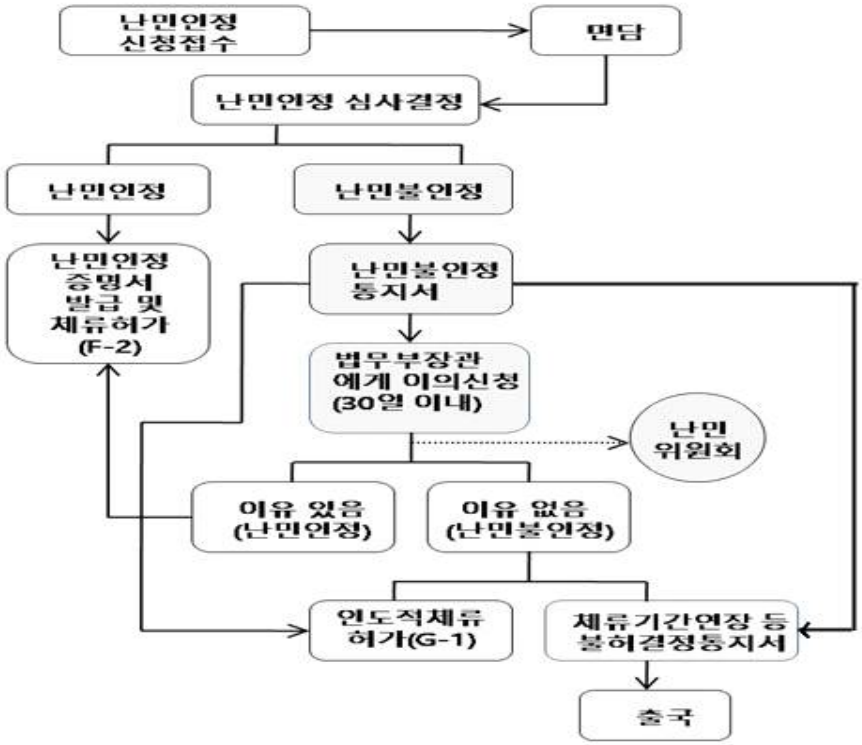

[그림 Ⅱ-2] 체류중 난민 인정 신청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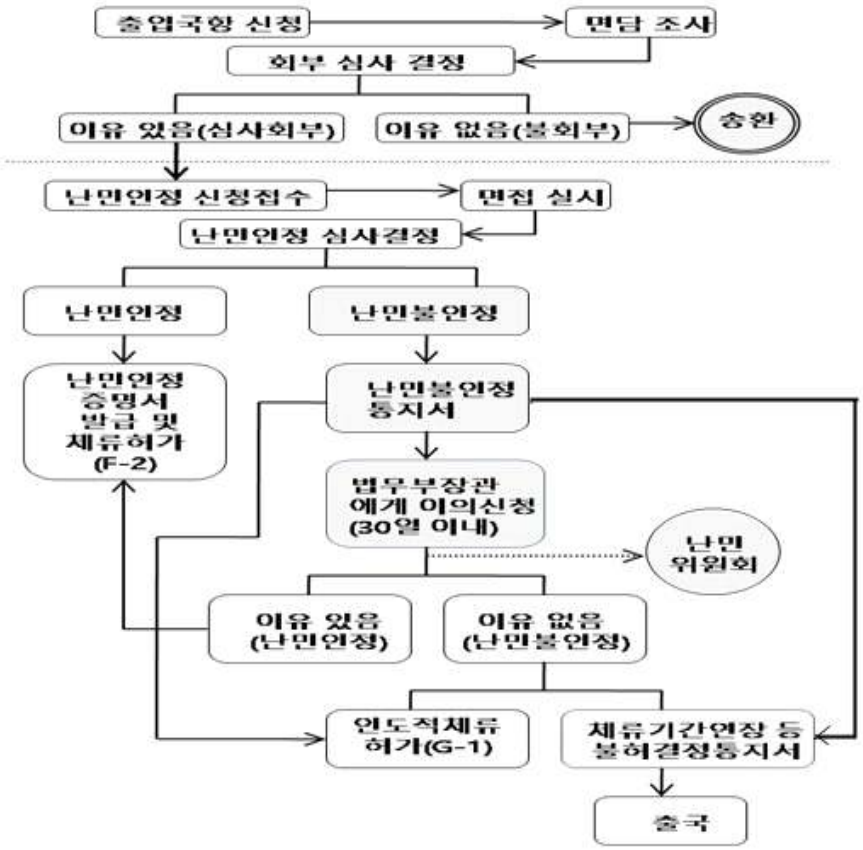

[그림 Ⅱ-3] 출입국항 난민 인정 신청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9

한편 난민 인정에는 여러 다양한 취약성을 보이며 난민 인정 심사절차를 담당하는 출입국당국과 법원에서 실체적으로 난민협약상의 난민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에 대한 법적용이 난민 인정 신청자에게 불리하며 난민 지위 인정이 매우 협소하다. 이는 난민협약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난민 범위에 대한 행정 및 사법 당국의 기준이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암묵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의 문제는 엄격한 통제와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력 측면에서 볼 때 난민신청의 건수는 매년 1만 5천 건 이상이지만 1차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5명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민법은

신청서를 접수 후 6개월 내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국내 난민신청자들은 신청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에 대한 안정감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책과 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난민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 정서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민에 대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난민 문제가 발생 시 빠른 대처와 파악을 통해 국민 정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난민 정책의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4. 국적취득 절차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 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이 있다. 난민 인정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중에서 일반귀화에 의해서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난민은 일반귀화에 해당되며, 국적취득 요건은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 주소가 있을 것(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등이다. 2018년 이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 또는 귀화를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2월 20일부터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꼭 필요한 사람만이 국적을 신청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난민 인정 즉 F2(거주자격)를 취득하였다 해도 일단 국내에서 일반계 요건을 채워야 국적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적취득 절차는 다음 <표 Ⅱ-8>과 같다.

〈표 Ⅱ-8〉 국적취득 절차

구분	내용
신청 및 접수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구비서류[17]를 준비하여 간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면접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통합프로그램[18] 종합평가 대상: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자)[19] ・면접심사대상: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국적법 시행규칙」제4조 등에 규정(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귀화 요건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공통: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입양: 입양의 진정성 확인 *혼인귀화: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 심사
심사 결정(법무부)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취득
고시 및 통보(법무부)	・관보 고시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생성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취득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국적포기: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는「국적법」제10조 규정[20]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17) 구비서류: ①귀화허가신청서 ②여권사본 1부 ③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응답 설명자료 참고) ④2명 이상의 추천서(국민 2명 이상: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⑤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⑥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⑦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⑧가족관계통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1)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난민협약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 요건, 거주기간 요건 등의 엄격한 심사와 접수 및 처리 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난민협약에서 명시한 난민의 동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한국 국적법상 귀화요건으로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5년 이상의 거주 요건과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난민 인정자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시 박해의 가능성을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으므로 한국에서 계속하여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난민 인정자가 귀화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한국 정부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박해상황이 확인된 것임에 본인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결단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고

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⑨수수료(30만원).

18)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가 필요한 한국어, 사회, 경제, 법 등의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며, 법무부가 정한 기관에서 운영한다.

19) 1.미성년자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4.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귀화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자 등).

20)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립적 상황에 있는 난민들이 체약국에서 안정된 상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의 사회통합 및 동화에 관한 체약국의 의무가 기재된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귀화요건의 완화 적용 혹은 면제, 그리고 신속한 귀화절차로의 변화가 필요하다(전수연, 2018).

난민 인정을 받고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는 난민에게 또 다른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 난민 인정까지는 국민의 정서와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 국적취득은 절대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는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게 된다. 즉 국적취득 문제는 난민 인정자가 느끼는 또 다른 이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국적취득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바탕이 되어 있으나 난민 인정자는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난민 인정자가 느끼는 국적취득 심사는 또 다른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어 국적취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민 인정만으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자녀의 정체성, 자녀 교육, 성인 이후 미래 삶에 대한 걸림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난민 인정자는 다시 국적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을 시작한다. 국적취득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난민으로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국적취득의 의미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난민 인정자가 국적취득을 한다는 것은 난민이 아닌 완전한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국적취득은 한국 국민으로서 관련한 모든 법령에 귀속되어 한국 국민과 동일한 신분으로 권리와 의무를 병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적취득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되었으나 문화의 차이, 외모의 다름, 언어의 소통,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한다. 난민에게 국적취득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며, 한국 사회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처우에 대해 당연한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

2.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2.1. 줌머족의 특성과 현황

줌머족의 위치는 인도,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어 있는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방글라데시 남동쪽 지역에 위치하는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로 줌(Jhum)이라고 불리는 화전을 일구며 살아온 11개의 선주민 부족들이 있으며,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을 통틀어서 줌머족이라고 한다(난민들의 피난처, 2010). [그림 Ⅱ-4]는 방글라데시 줌머족이 거주하는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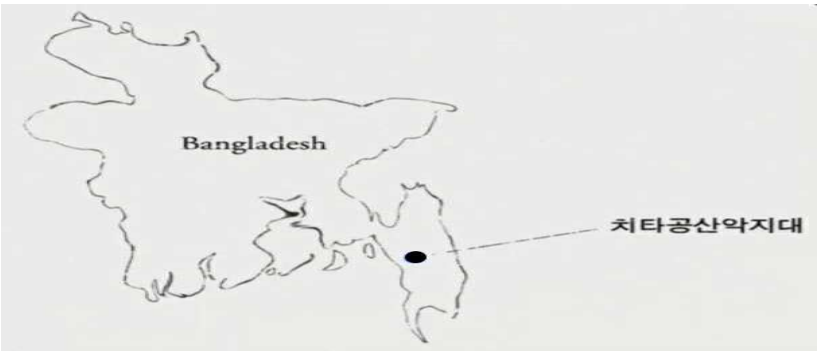

[그림 Ⅱ-4] 줌머족의 거주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지역에 넓게 자리 잡은 치타공 산악지대는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갖고 있다. 주로 평지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하게 구릉(丘陵)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치타공 산악지대는 방글라데시 치타공도(道, division)의 동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방글라데시 면적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인도의 트리푸라, 미조람 주(州)와 동남쪽으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치타공 산악지대는 랑가마티(Rangamati), 카그라차리(Khagrachhari), 반다르반(Bandarban)의 세 군(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체로 구릉 지역이며 수많은 강, 하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페니(Feni), 카르나풀리(Karnafuli), 쳉기(Chengi), 마이니(Myani), 카쌀롱(Kassalong),

상구(Sangu), 마타무후리(Matamuhuri) 강이 만들어 낸 일곱 개의 주요 계곡과 지류들 주변에 줌머족의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

2011년의 인구센서스[21]에 따르면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구는 1,598,000명으로 이 중에서 870,910명(54.5%)이 선주민이다. 다음 <표 Ⅱ-9>는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치타공 산악지대의 인구는 방글라데시 타지역에서 온 불법 이주민의 수가 많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9>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의 인구 분포 (2011년)

민족	분포(%)	
벵골인 Bengali	45.5	45.5
차크마 Chakma	27.5	
마르마 Marma	14.5	
트리푸라 Tripura	6.5	
므로 Mro	2.1	54.5
텅청갸 Tanchangya	1.9	
기타(범 Bawm, 루샤이 Lushai, 키양 Khyang, 쿠미 Khumi, 판코 Pankho, 차크 Chak)	2	

출처: https://wiki/Chittagong_Hill_Tracts, 2017

줌머족이라고 불리는 선주민은 13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차크마 Chakma, 마르마 Marma, 트리푸라 Tripura, 텅청갸 Tanchangya, 차크 Chak, 판코 Pankho, 므로 Mro, 범 Bawm, 루샤이 Lushai, 키양 Khyang, 쿠미 Khumi), 나머지 이주민들은 대부분 벵골인(Bengali)들이다.

방글라데시의 종교 구성은 이슬람교(89%, 국교), 힌두교(10%), 기타(0.9%)로 되어 있다(외교부, 2020). 이 중에 줌머족은 불교를 숭상하고 있다.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그리고 애니미즘이 공존하고 있으며, 선주민들은 예로부터 민족적・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해 왔다.

줌머족은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오랫동안 자치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특히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될 때 줌머족들은 방글라데시 주류민족인 벵골족을 도와 파키스탄에 저항하여 싸웠다. 하지만 9개월에 걸친 내전 끝에

21) https://en.m.wikipedia.org/wiki/Chittagong_Hill_Tracts의 인구센서스.

1971년 12월 방글라데시가 독립구가로 출범한 이후 벵골족은 오히려 줌머족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는 좁은 국토 면적에 인구밀도는 높고 대부분 벵골족이 살고 있었다. 반면 치타공 산악지대의 줌머족 인구는 70만 명에 불과하여, 197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땅에 벵골족 이주를 유도하였다. 벵골족 정착촌 건설 과정에 줌머족과의 폭력 행위가 벌어졌으며 치타공 산악지대 주민들은 집단 학살·강제 구금 고문에 시달리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방글라데시 군대에 의해 사망한 줌머족 주민은 최소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군사 지배에 저항하는 좀머족은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 싸웠다. 1997년 줌머족 무장단체 PCJSS[22]는 1997년 12월 평화협정을 맺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겉으로는 줌머족의 자치가 이루어진 듯 보였으나 방글라데시 군대가 독립파 게릴라 혹은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는 이유로 민간인 마을에 침입해 폭행, 방화를 일삼았다. 마치 팔레스타인 강경파 하마스와 온건파 해방기구(PLO)가 대립하듯이 줌머족 내부 안에서도 노선 투쟁이 일어나면서 현재까지도 갈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줌머족은 민족·문화·언어·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의 공격에 마주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많은 줌머족들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난민이 되어야 했다. 1997년도에 들어 비록 방글라데시 정부와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지역 내 평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줌머족의 문화·사회·종교적인 자유는 거의 무너졌다. 정부의 주도하에 수십 년간 상주해온 방글라데시 군대의 존재와 이주자인 벵골족은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 소수민족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한 줌머족 연대 회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방글라데시 군대가 물러날 것, 벵골족 정착민들이 재귀환할 것,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의 완전한 자치를 보장할 것 등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염원만큼이나 실현되기 쉽지 않은 요구로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행과 폭압을 피해 탈출한 줌머족들은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서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줌머족은 재한줌머족연대

22) PCJSS(Par Parbattya Chattagram Janasamhati Samity): 치타공 산악 지대 사람들의 연대 연합.

(zumma people's Net work-Korea)를 통해 타국에서나마 방글라데시 줌머족이라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인권을 지켜내고 찾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내 줌머족의 난민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방글라데시인의 난민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방글라데시인의 난민현황과 줌머족의 난민현황은 다음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방글라데시 난민 현황(1994~2018년)

항목	인원(명)	비율(%)
인정	10	1
불인정	102	10.3
인도적체류 지위	1	0.1
철회	74	7.5
이의 신청	144	14.5
심사 중	660	66.6
계	991	100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9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신청은 전체 신청자 26,115명 중에서 991명(3.8%)을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신청자는 인정자가 10명이며 인정되지 못한 불인정자는 102명, 인도적 체류 지위를 가진 자는 1명, 이의신청이나 심사 중인 사람들이 전체 80%로 난민 인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사유가 7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종교 박해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다. 다음 <표 Ⅱ-11>은 방글라데시인의 난민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Ⅱ-11> 방글라데시 난민 사유별 현황(1994~2018년)

항목	인원(명)	비율%)
인종	32	3.2
종교	128	13.0
특정구성원*	16	1.6
정치	727	73.3
가족결합	28	2.8
기타	60	6.1
계	991	100

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9

국내 줌머족은 2000년대부터 한두 명씩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줌머족 치타공 산악지대지역의 탄압과 폭력이 심해지면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 줌머족의 유형별 난민 인구는 다음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 국내 줌머족 유형별 난민 인구 현황(1994~2020년)

년도	입국	인구현황			
		국내출산[23]	중도입국[24]	난민 인정	국적취득
1994-2010	61	5	1	47	11
2010-2016	25	25	4	51	42
2017-2020		-	-	-	4
계	86	30	5	98	53

출처: 2021년 3월 조사, 김포 대곶면 재한줌머연대(2021. 3)

줌머족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태국,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를 주요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인도는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재귀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성상 한국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재한줌머족들도 모국의 가족들과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점이다. 인접한 국가 중 인도 다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줌머족 상당수는 태국이나 스리랑카를 경유한 후 입국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종교와 인종 말살 정책으로 인한 강제 박해를 피해 이주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국가로, 불교 학교인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류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며 그곳을 거점으로 다양한 국적의 불교인들과 연결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최영일, 2019).

1980년 방글라데시 국교는 이슬람 국교로 선정되었고 인구 대부분인 벵갈족은 이슬람교도였으며 불교를 믿는 줌머족은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차별을 받아왔다. 줌머족이 정주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인종차별과 불교라는 소수종교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은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특히 한국이 불교에 대한 신안심이 더 크

23) 줌머난민이 국적취득후 태어난 자녀이다.
24)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줌머족의 인권과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재한줌머연대(Jumma Peoples Network-Korea, JPNK)로 2002년 4월에 김포에서 출발하였다(오경석, 2011). 줌머연대의 목적은 줌머족의 억눌린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전달하기 위함이다. 줌머연대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기자회견, 문화행사, 세미나, 포럼, 출판, 미디어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방글라데시 내 줌머족에 대한 존재와 역사, 처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2. 줌머난민의 인정투쟁과 정체성 협상

이 절에서는 한국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줌머난민의 인정투쟁의 경험을 정체성 협상의 관점에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정의 철학적 사상과 인식체계와 같은 인정이론을 통해 자기의식의 형성, 그리고 인정의 유형을 살필 것이다. 이어서 인정투쟁의 계기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현상으로서의 '무시'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2.2.1. 인정이론과 인정투쟁

인정은 게오르크 헤겔(Georg W. Hegel)의 초기 저서에서 나타나는 '인정'의 개념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사회심리학과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도입하여 체계화한 개념이다. 인정을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규범적, 사회적 조건이 인정이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며, 그 반대로 무시는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정 관계 형성을 위한 투쟁의 계기를 만든다고 하였다. 인류는 문명화 과정에서 자연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라는 왜곡된 관계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전락하였으며, 인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배 모델'의 대안이자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저서

『인정투쟁』(1992)에서 삶의 실현 조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서에 나타나는 인정투쟁의 원천은 상호인정이라는 상호 주관적인 상태를 목표로 밝혔다. 그는 인정은 인간 자신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로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호네트에게 인정투쟁은 인간학적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의식 형성, 인정의 유형, 사회적 문제현상으로서의 '무시' 등 인정이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1) 자기의식 형성

호네트는 개인의 자기의식 형성과정을 '주격의 나' 와 '목적격의 나' 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미드의 심리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목적격의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시각에서 얻어낸 자아상으로 수많은 상호교류 상대자들로부터 공통된 자아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격의 나는 또 다른 차원의 나로서 목적격의 나에 반발하는 타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반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 된다. 주격의 나란 현실적 자아 형태를 갖추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목적격의 나란 이런 주격의 나에 대하여 현실적 형태를 부여하는 사회적 요구이다. 호네트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기의식 형성과정은 다음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개인의 자기의식 형성 과정

자기의식	형성단계	형성완료
목적격의 나와 주격인 나의 화해(진정한 자아형성 가능)	단계1. 목적격인 나에 주격인 내가 긍정적 반응	안정된 자기 정체성
	단계2. 목적격인 나에 대하여 주격 내가 반발	정체성 위기
	단계3. 주격인 나의 반발을 대안적 자아상으로 구체화시킴	이중화된 자아상
주격인 나와 목적격인 나의 갈등 해소	사회에 저항하여 인정을 취하거나 미래 사회에서 인정을 선취함으로 가능	-
	사회적 인정이 없다면 자기분열이나 자기억압에 빠짐	-
자기의식의 고도화	무한한 자아정체성 원천인 주격인 나는 목	-

	적격인 나와 화해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자아 욕구가 나타나면 목적격 나와 새로운 갈등을 시작하며 자신에 대한 넓은 이해 도달

출처: 호네트, 인정투쟁(2011)

호네트는 미드의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즉, 주격인 나는 타인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나 기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목적격 나'에 대한 심상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자기 관계는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이 나에게 내면화되어 가능하나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인 나'와는 대상화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자발성으로부터 나타난 주격인 나의 긴장 관계를 전제한다. 미드에게 이런 긴장은 특히 '사회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개성화 과정' 의 추진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규범적 이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는 개인적 정체성으로 두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 속에서 형성된다. 호네트는 바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주격인 나에게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인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주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요구가 완전히 인정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 '목적격 나'는 타인이 가진 나에 대한 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로서 항상 지난 것으로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격 나' 는 나의 모든 현재적 행위의 규정되지 않은 원천이다. '주격 나' 는 비록 인지될 수는 없지만, 행위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을 책임지는 개성이 타자에 의해 기대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를 반응하는 차원을 뜻한다." (Honneth, 2011)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기의식은 자기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격 나가 바라보는 목적격 나에 대해서 반응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목적격 나의 모습을 지각할 수 없다.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고 대상화함으로써 가능해진

다.(Honneth, 2011).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호응과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상대를 통해 본 나의 모습을 스스로 인지 하여 알 수 없다. 이는 자신이 나에 대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으며, 자신 스스로가 자아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이며, 공동체는 자기의식를 만들어가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이다. 목적격인 나는 나에게 보이는 타인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사회화 과정 속에서 규칙을 내실화한 결과이고 자신이 노력해야하기 때문이다.

호네트의 인정은 자신이 사회화와 공동체를 통해서 목적격인 나는 타자를 통해서 여러 관점을 가져오고 만들어가면서 목적격 나의 정체성은 타자들의 규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자들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자기 자신도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Honneth, 2011). 자신의 자아정체성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며 타자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인정할 때 만들어지게 되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자가 나에게 나타내는 반응과 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적격인 나를 획득할 수 없게 되며 자기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난민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선대부터 살아오고 지켜온 정착지를 떠나 인접국으로 피난을 하게 되고 피난국에서 최종 정착지를 선택하게 된다. 모국에서 사회화와 공동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롭게 적응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난민은 정체성 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인 구성원들과 살아가기 위한 목적격 나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게 된다. 난민에 대한 한국인은 선주민으로서 이들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함께 이들이 난민 이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네트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표출되는 타자의 반응과 기대를 인정하면서부터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출되는 타자의 관점에서 체득하는 과정에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이현재, 2019).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은 서로의 관점에서 권리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바로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 태도와 자기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인정의 유형

호네트는 인정의 개념에서 세 가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행복한 삶은 사회적 인정이며, 둘째, 사회적 마찰을 피하여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며, 셋째, 적극적인 자아실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호네트는 세 가지 방식의 상호인정 형식을 제안한다. 첫째는 배려나 사랑을 통해 원초적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유일무이한 욕구와 정서 본능을 지닌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권리 존중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서로를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지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다(이현재, 2019). 셋째는 사랑과 권리라는 인정 형태와 연대이며,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각각의 개인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호네트가 주장하는 상호인정 관계는 사랑이라는 형태 속에 있으며 사랑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정서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정되며, 사랑을 통하여 욕구도 충족된다. 상호인정 관계는 동등한 권리의 인정을 통하여 형성되며 각 개인은 자주적,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된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각 개인은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인정을 통하여 개인은 하나의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음 <표 Ⅱ-14>는 인정의 유형과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14> 인정의 유형과 가치

인정 유형	표출	가치
상호작용 유형으로서의 사랑	자신감	배려
동등한 권리부여	자존심	권리관계와 인격체
사회적 연대	자부심 혹은 자긍심	사회적 가치

출처: 호네트, 2011

인정의 유형과 가치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첫째, 상호 작용유형으로서의 사랑의 인정 유형은 타인 속에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내 속에 타인 역시 있는 그대로 존재와 배려하는 경우이다. 사랑의 인정 경험은 개인적, 사적인 관계가 아닌 제도적, 문화적 장치가 마련된 사회에서 자신감을 경험하게

하며, 반대현상으로 나타나는 무시는 폭력, 학대의 경험은 자신감을 파괴하여 대인기피증, 불안 심리, 인격 장애와 같은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관계의 상대가 정서적 배려를 해준다는 인식이 정서적 애정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가 긍정적 생각을 통해 상대와 진정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긍정적인 자기 관계인 자신감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욕구가 충족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상호인정 관계에서의 사랑은 일방적 자기주장이나 절대적 의존이 아니다(이현재, 2019).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정서적 배려로서 사랑은 자신이 타자와 관계형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이 타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둘째, 동등한 권리부여 인정 유형은 동등한 권리부여로 인해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성적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권리관계 안에서 우리는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을 통해 서로를 권리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얻게 된다. 자기 존중감은 인간이 실제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목적 자체이며, 이성적 존재로 도덕적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존재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때 가능한 긍정적 자기 관계다. 상호인정 영역으로 제시하는 권리관계는 구체적 욕구를 가진 존재에 대한 정서적 배려와 달리 이 관계 안에서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지적 존중이 이루어진다. 권리관계에서 구성원들은 서로를 자율적 도덕 판단능력을 가지는 동등한 주체로 인지적으로 존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자기 존중의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우수성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규범의 초점에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동등한 존재의 가치로 가정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서 주체들의 권리 인정은 도덕의 보편적 가치의 원칙에 따른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권리 인격체의 지위는 그것에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권한이 갖추어진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권리 인격체의 지위는 그것이 항상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츰 확장될 수 있었다(Honneth, 2011). 이러한 관계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스스로를 인격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관계를 얻게 한다. 권리도 내가 아닌 타인도 해당하며, 내가 인격으로 존재함으로써 나는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것을 나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인정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 존중의 올바른다고 믿는 긍정적 자기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의 내용과 수혜자를 확장하기 위한 인정투쟁을 해야만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연대의 인정 유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가치가 가치 있음을 존재로 인정받았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한다. 연대는 구체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보다는 공동의 가치를 갖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안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능력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된 개인은 긍정적 자기 관계를 얻게 된다. 현대사회는 점차 개성화된 주체들이 서로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가치를 부여해 나아간다. 연대는 문화적 자기 이해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전체 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능력과 속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과 속성의 가치는 전체 공동체의 실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는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양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다치고 이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모국을 떠나 마침내 난민의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난민은 자발적인 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난민은 정주국에서 더 이상 외면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난민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배려와 사랑을 통해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공동체와 연대하여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류 사회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난민이 축적하고 살아온 본성에 대한 되찾음을 찾아주고 스스로 힘든 역경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목적이 된다. 따라서 난민이 정주국에서 독립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직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무시 현상

호네트의 인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시를 이해해야 한다. 무시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무시의 반대는 인정이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현존성에서 기인한다. 현존성과 함께 인정은 다른 사람 즉 타인과 같은 상대방과 나의 등동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온다. 무시는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차별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인정은 타인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아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무시 경험은 부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하며 무시 경험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자기인식은 점점 개인을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인도한다.

무시는 사회에서 폭행, 권리유보, 배제로 나타나며 폭행은 사람의 의지와 욕구를 무시하면서 가하게 된다. 개인의 내면에는 폭행한 이들에 대한 분노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가 동반된다. 폭행의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감이 파괴된다. 권리유보, 배제도 무시의 한 형태로 집단에서 연대 관계와 연대를 맺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인정은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사회적 도덕의 형식이자 원리로 자리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시는 타인에 대하여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반대로 인정은 타인 속에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랑, 연대, 권리 인정이다. 인정 관계에서는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고 나 자신과 타인 모두가 주체가 된다. 인정은 도덕적인 행위이며 도덕은 개인 삶의 보호 장치로 개인 행복을 위하여 유지하는 기반이다. 개인 삶에서 인정 경험은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인정 경험은 경험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인식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을 만든다. 궁극적인 인정 경험은 개인의 자존감을 형성,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동질성임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호네트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인정의 거부로서 무시를 말한다. 무시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긍정적 자기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이에 대한 현상으로 권리 부정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권리주체로서 지위 박탈하고 사회적 가치 부정은 공동체에 가치를 갖는 존재로서의 경험을 박탈한다. 호네트는

무시의 경험으로 훼손된 자신의 회복을 인정투쟁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아내고 회복할 때 비로소 무시에 대해 관점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현재, 2019).

호네트는 인정을 거부하는 무시의 경험은 단순한 불행이나 폭력 등과 상이하며, 무시가 절대적 손상을 입히는 것은 개인의 긍정적 자기 관계라고 주장한다. 즉, 이를 통해 자신의 무시가 잘못 된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호네트는 손상되는 자기 관계의 종류에 따라 무시 형태를 다음 <표 Ⅱ-15>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표 Ⅱ-15> 무시형태

무시형태	내용	표출
학대・폭행	생존 문제, 긍정적 자기 관계를 파괴, 도덕적 사건	
자기 존중 훼손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부정, 배제	분노, 투쟁
명예・존엄성 훼손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	

출처: 호네트, 2011

호네트는 가장 기본적인 무시는 학대나 폭행으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대한 확신을 빼앗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나 감정적 욕구에 대해서 존중받을 기회를 막게 된다. 그리고 자기 존중 훼손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를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지는 동등한 상호 작용 상대자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무시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을 통해 명예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그 가치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는 자신감, 자존감을 잃게 되며, 자신의 능력이 소속된 짐단이나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무시는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의 관계에서 인정을 하지않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난민은 정주국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시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질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시 좌절하게 되고 자기 보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이라는 최선의 방침을 세우고 쟁취하려고 한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보호의 수순이다. 사랑이라는 상호인정 관계에서는 좌절이 사회적 투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유보된 집단은 사회적 연대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연대에서 배제된 집단은 일정 권리의 유보나 박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나

사회적 연대 영역에서 개인이 경험한 무시는 저항을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무시가 당사자의 안녕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도덕적 불의와 다를 바 없으며 인정 관계에 있어 인정 관계를 둘러싼 무시나 모욕 행위는 도덕적 훼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이 인간 삶의 실현을 훼손하는 행위에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훼손 행위를 극복하는 사회적 투쟁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로 유입되는 난민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온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삶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이 정주국에서 난민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국제관계 현실에 협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어가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안정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안정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형성된다.

난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경험함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정주국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난민 스스로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묻어둔 채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난민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 속에 합류하여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활동을 통해 언어, 소속감, 자신감, 노력, 긍정적 생각 등을 만들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으로 적응하게 될 것이다.

4)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인정은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개인과 타인의 성공적인 삶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며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의 기제가 된다. 인간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 자아실현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인정은 개인과 타인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되며 인정을 위한 인정윤리가 요구된다. 인정윤리는 개인과 다른 인간과의 윤리적 의무를 필요로 한다(문성훈, 2014). 인정윤리에서 벗어난 불인정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한다.

인권의 훼손은 개인의 자아실현 저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 동등성 훼손도 초래한다. 권리 동등성 훼손은 무시의 형태로 노출된다. 무시는 개인의 자기 존중을 훼손하는 굴욕에서 찾을 수 있다(Honneth, 1992; 문성훈・이현재 역, 2011). 굴욕은 인격적 모욕이나 훼손된 인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권존중은 인정과 상보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난민은 난민으로서의 제한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존재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과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은 정주국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보다는 차별적 존재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인정투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인정투쟁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장하고 재협상하며 자신만의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수용적 역할 수행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참여를 완성하게 된다.

인정투쟁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파괴, 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장된 인정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의 도덕적 진보, 대안적 사회로 확장하며 난민은 난민 인정과정과 국적취득 과정 동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인정투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사회에서 인정질서가 성립되는 것은 주류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배집단의 합의에 근거하여 그 집단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기득권으로서 인정받은 질서가 자리 잡은 형태이다. 기득권층이 인정이라는 사회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여 사회 불평등을 교묘하게 정당화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이 새로운 인정질서 안에 소속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난민에 대한 인정은 기존 사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정의 질서 밖에 머물게 되는 주변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인정질서에 대하여 갈등하는 소수나 개인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의 갈등 경험은 일반화되고 집단화되어 결국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사회적 인정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정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인정질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건전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특히 난민에 대한 인정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황해영・김영순, 2019).

세계적으로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난민의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이타심을 가지고 난민의 문제에 함께 대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로 유입된 난민들은 주류집단의 구성원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난민들은 다문화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되고자 한다.

난민들은 새로운 정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주류사회의 다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의 인정투쟁 과정이나 정체성 협상 과정이 경험을 살피는 것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난민들은 현실에서 비록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자기의식의 고도화로 인하여 새로운 자아정체성 요구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정질서와 대립 현상이 표출되기도 하고 사회적 인정질서와 갈등하는 개인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난민들이 난민으로서 인정받는 과정,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국적취득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 속에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사회적 인정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정투쟁과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줌머난민과 선이주민 방글라데시인과의 관계

줌머난민은 모국의 주류 벵골족에 의해 핍박과 공포를 느끼며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피난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노동을 위해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이다. 줌머난민의 생활 또한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한국에 정착하여 가능하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 줌머난민은 초기에 정착한 주거지를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일자리와 공장이 밀집해 있는 김포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줌머족 내 자원 동원, 인적네트워크, 전통축제 등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서 모국의 치타공 산악지대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

가려는 마음으로 줌머족의 전통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 “네. 같이 있으면 가족 같이 가고 없으면 그냥 사람들 따라가고 그런거죠. 모국의 이슬람과 벵골족 사람들을 보면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한국에도 이슬람과 벵골족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보면 갑자기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줌머사람들 자주 만나면 말해요. 왜 한국정부 이렇게 왜 이슬람 사람들 많이 한국에 있어 진짜 너무 문제 있어요. 나중에 30년이나 50년 후에 너무 문제 있어요. 우리는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그들에게 겪었으니까요.” (연구참여자3)

현실적으로 제3국에서 같은 국가이면서 민족 간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한 반감은 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모국의 다수족인 이슬람 벵골족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정주국인 한국에 이슬람인들이 많이 이주해 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하다고 하고 있다. 즉 줌머난민은 한국 사회의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와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민족적 절망감과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줌머난민의 정체성 협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에릭슨(Erikson, 1968)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이론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에릭슨은 개인의 정체성을 객관적 측면인 심리사회적 정체성(psychosocial identity)과 주관적 측면인 개별정체성(individual identity)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일체감, 귀속감, 소속감을 의미한다. 개별적 정체성은 집단적인 정체성 속에서도 집단 속의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자신만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 정체성은 다시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인적 정체성이란 자기 연속성(self-continuity)에 대한 자각과 시간이 경과나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는 자기 동질성(self-samenes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내적 충동과 욕구들, 외적 자극들,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형태로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자아정체성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전체감(wholeness)과 통합감(integrity)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구조(self-structure) 혹은 자기 참조적 심상들(self-referent images)을 형성한다(Marcia, 1966; Dignan, 1965).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주는 연속성과 동질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타인과 구별하는 독특성도 내포하고 있다(Mussen et al., 1974). 자아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다른 개인적 특성을 소유하고, 개인적 특성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려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되며,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변화 과정에서도 자기 지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난민들은 정주국에 정착하여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 개인적 정체성인 자기 동질성과 자기 연속성의 유지가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적 가치관과 외부적 환경 사이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 정체성 협상을 통해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줌머족의 자아정체성

에릭슨(Erikson)은 자아정체성의 개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단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하고, 개인적 정체성의 의식적 감각, 개인적 성격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무의식적 지향성, 자아통합 활동의 규준,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과 이상에 대한 내적 일치 등으로 보았다(Erikson, 1968).

자아정체성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발달하는 자기를 묘사해 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이며, 생래적으로 미리 짜인 어떤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인관계 속에서 추출되고 통합되는 자기상이다(Dignan, 1965).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자아가 인격체제와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 통합화의 방식이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은 자신과 관계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 상에서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가족과 사회, 세계와의 관계에서 갖는 역할과 지위 속에서 획득한 동질감, 연대감, 안정감, 책임감, 가치관에 대한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자

아의 통합 과정이다(박애리, 2002). 따라서 자아정체성은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성· 동일성 · 통합성을 확립하는 자기 확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배상식, 2012).

줌머난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과거 및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를 경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줌머난민은 자아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거치면서 동일한 삶의 지속, 개인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줌머난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문화적 역량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 탐색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거나 강제로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인정투쟁과 직면하게 된다.

줌머족은 정부와 주류 벵골족의 폭력에 인하여 일방적으로 타국가로 피난을 하면서 유랑하게 되었고, 국내로 입국하여 여전히 불확실한 정착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난민의 이주 역사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된다.

2) 줌머난민의 사회적 정체성

이주자는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문화변용으로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체성 변화와 함께 집단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은 변화된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본국 문화와 새로운 정주국의 문화 사이에서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Lazarus, 1976).

정체성의 변화는 기존문화와 신문화 간의 상호인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문화변용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 욕구를 충족한 이주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정체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리(Berry)의 문화변용이론에 따르면 이주자의 문화변용은 이주국, 본국 문화 간의 관계, 그리고 본국 문화 정체성의 유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multiculturalism), 동화(assimilation), 배제(exclus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요소로 분류된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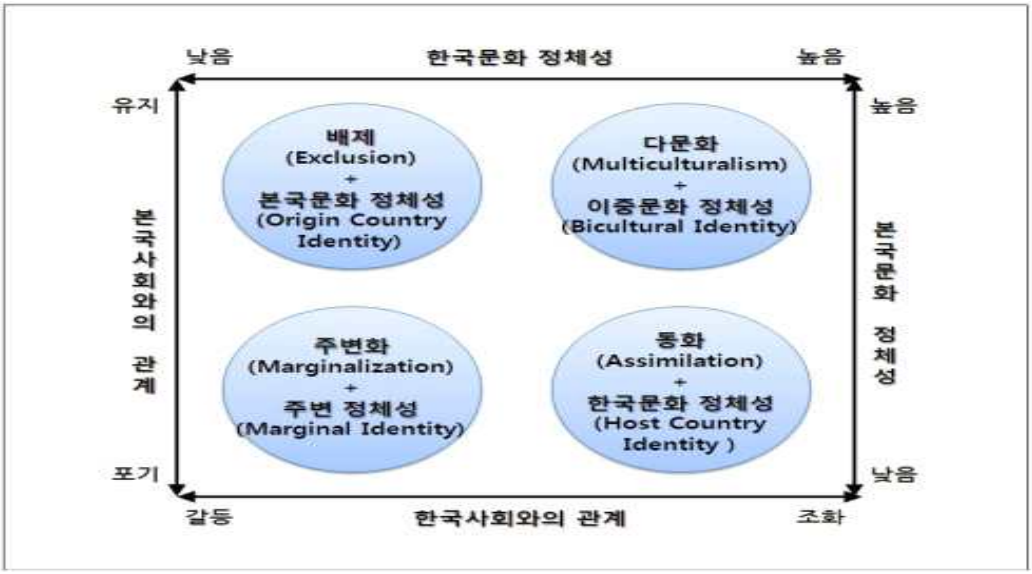

[그림 Ⅱ-5] 이주자의 문화변용으로서의 정체성 변화 유형

출처: 정유리, 2014

다문화(multiculturalism)는 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와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본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수용하고 서로의 문화를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 동화(assimilation)는 본국의 사회관계를 포기하고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배제(exclusion)는 본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갈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변화(marginalization)는 본국과의 관계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의 관계도 관심이 없고 갈등을 겪는 경우이다.

정체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형된다. 먼저 모국 문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을 가지게 된다. 둘째, 한국문화 정체성이 낮고 모국문화 정체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국 문화 정체성(origin country identity)이 강하게 나타난다. 역으로 모국 문화 정체성이 낮고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은 경우에 한국문화 정체성(host country identity)을 가지게 된다. 셋째, 모국 및 한국문화 정체성이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주변 문화 정체성(marginal identity)을 가지게 된다(정유리, 2014).

난민은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경우가 아니므로 타의에 의한 선택 혹은 강요받은 이주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들은 문화간 접촉에 의한 문화변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 문화와의 단절을 통해 정주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주변적 존재이다. 국적취득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차별이라는 배재적 존재로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동화를 통한 접근을 추구하거나 다문화적 존재로 차별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 정주국으로의 적응을 강요받게 된다.

줌머난민 인정자는 한국이라는 주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문화변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수용 과정에 차별과 갈등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투쟁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난민은 정착지에서 일반적인 이주자들과는 다른 차원이며 모국으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비시민권자이다. 즉 난민은 결혼이민자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비시민권자라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이들과 달리 입국하기 전부터 이미 난민화되어 배제된 사람들이다. 비시민권자로서 제한되고 배제된 자신의 시민권을 확보해가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고 다양한 인정투쟁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최영일, 2019).

줌머난민은 정착지인 김포지역의 양곡, 대곶 등지에서 선주민은 물론 출신국 이주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모두에게 인정과 이해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반면, 모두와 공존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특히 정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비호 신청국의 기본적인 인권만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무국적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줌머인은 선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긴 과정 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인정과정을 경험한 줌머인들은 다른 난민에 비하여 같은 상황에 처한 동일한 소수민족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는 정체성을 확장시키면서 특정지역에서 게토화 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은 정주국에서 한국인이나 타 민족의 혐오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특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최영일, 2019).

3) 줌머한국인의 다문화 정체성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출현이라는 큰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혼합되는 단순한 사회의 한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사회는 타문화와 다양한 민족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경험을 통한 역동적인 변화와 통합,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조경자・안진숙, 2012).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종적 ·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적 소양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장인실, 유영식, 2010; Sleeter & Grant, 2003; Suárez-Orozco, 2005).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집단적 단결과 일체감을 부여해 왔다. 앞으로는 글로벌 · 다문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의미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통합 방안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글로벌 ·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적 · 지역적 정체성, 국가 · 사회적 정체성, 글로벌 정체성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 [그림 Ⅱ-6]은 글로벌・다문화사회의 정체성 형성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Nussbaum,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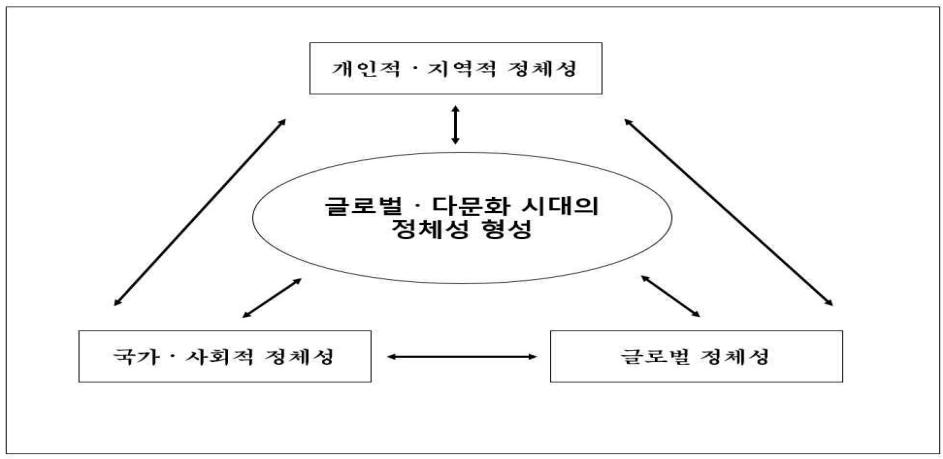

[그림 Ⅱ-6] 글로벌・다문화사회의 정체성 형성

출처: 홍원표, 2011

글로벌 시대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기애·민족애·세계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보다 유연하면서 탄력적인 정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구성원들 개개인이 건강하고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함양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국제적 시각과 참여의식을 갖추어 글로벌한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의 줌머한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문화변용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정체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공동체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인정투쟁이 가지는 최종의 목표는 개인의 권리 획득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적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줌머한국인이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공존과 통합의 단계로 자아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는 난민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 글로벌 정체성으로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줌머난민의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과 구직 체계를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외로움, 어려움, 절박함, 언어적 고충, 차별 등의 현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줌머족이라는 연대와 주거지역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행사나 안정된 마음을 순화시키는 종교 활동을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있다.

줌머난민은 모국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배제당한 경험을 하였기에 여타 이주자들과는 달리 모국으로 재차 귀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난민으로서 제한된 삶의 권리를 확보 혹은 확장해가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고 다양한 인정투쟁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국적취득은 바로 삶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국적취득 국가에서 새로이 정체성을 정립하여 자녀들에게도 완전한 주체로서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이기도 하다.

4) 난민의 정체성협상 모델

난민은 모국에서 줌머족으로서 경험한 현실을 바탕으로 생존 욕구에 기반한 변혁적 선택을 추구하게 되었고 정주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갈등과 저항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다시 난민 인정 신청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라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차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인정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시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적취득 난민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이 다문화 정체성으로 확대되어 한국 사회에 공존하고 통합하게 된다. 이들은 줌머족에서 줌머난민으로, 그리고 다시 줌머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협상을 통해 정주국의 공통된 목표와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적응하게 된다(김영순 · 배을규 외 역, 2013).

다음 [그림 Ⅱ-7]은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난민의 정체성협상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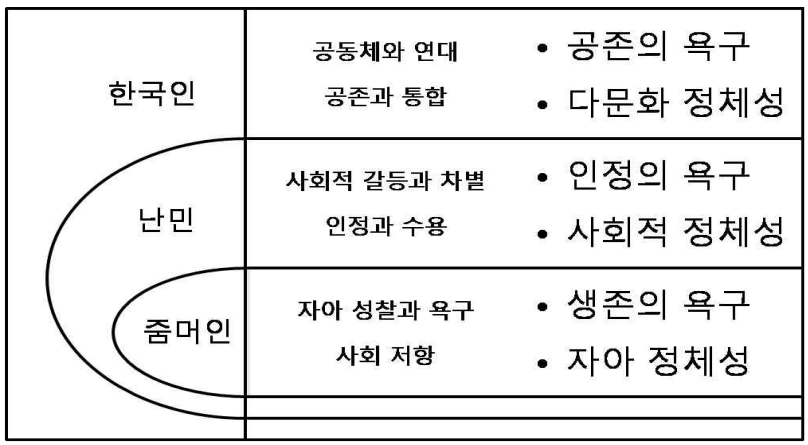

[그림 Ⅱ-7] 난민의 정체성협상 모델

줌머난민은 한국 사회에 정주하고자 난민 인정 신청자로서, 난민 인정자로서, 국적취득 난민으로서 다양한 인정투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줌머족으로서의 개인이 줌머난민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줌머한국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줌머족으로서의 생존과 저항의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욕구가 자아정체성으로 완성되어 가지만

이를 충족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난민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인정과 욕구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난민 인정 이후에는 정착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이 다시 주류공동체 속에서 공존과 통합을 추구하며 다문화 정체성으로 확장되어 인정투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안진숙, 2019).

본 연구는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줌머족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이 줌머난민과 줌머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확장을 경험할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 이들이 경험하는 인정투쟁은 단순한 개인적 권리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공존이라는 통합적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인정투쟁의 의미를 올바르게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난민정책과 난민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대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소결

이 절에서는 줌머족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인정투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체성 관점에서 줌머족으로서의 자아정체성, 줌머난민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 줌머한국인으로서의 다문화 정체성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난민의 정체성협상 모델을 논의하였다.

줌머족의 인정투쟁은 개인의 권리 획득 차원이 아니다. 이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적응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줌머한국인이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공존과 통합의 단계이며, 자아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이며 다문화적 인식의 변화에 기반한 글로벌 정체성으로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0년 현재 방글라데시 주한 줌머족은 2000년 초기부터 김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근처 일대에 약 40여 가구 2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난민 인정은 약 20여 명과 국적취득 약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 결혼으로 가족 구성이 이루어져 자녀가 태어나면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 한국에서 주민으로서 토대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대부분 현재까지 살고 있으면서 자치조직인 주한줌머연대를 주축으로 한국 생활에 대한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줌머족은 일반적인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주가 아니다. 따라서 정주국에서는 이들이 난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들은 난민 인정 신청자에서 난민 인정자로, 그리고 국적취득자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만이 한국의 안정적인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난민 1세에서 2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국민으로의 자부심, 미래 계획, 나라를 향한 애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당연히 한국인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역사회,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및 절차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후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국적취득 이전과 이후의 삶의 여정을 일종의 인정투쟁의 과정으로 전제하고 이들의 삶에 대한 경험들을 탐색하고 한다. 이를 통하여 난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 등을 밝힘으로써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어떤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1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난민들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해과정으로 보고자 양적 연구접근보다는 질적 연구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특정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발생한 내적 역동과 삶의 과정에서 경험, 생애 변화 차원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시간의 고리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삶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난민들의 국적취득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의 경계와 한국 사회라는 공간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애사연구는 이러한 경계를 사회적 행위 주체인 인간의 삶의 과정과 체험을 탐구하였다(이동성, 2015)

생애사연구는 미시적이며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체험을 자신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구조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서 적용되고 이다. 본 연구는 국적취득 난민의 한국 생활에서 인정투쟁에 대한 경험연구로 이들의 삶의 투쟁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시기마다 이들의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경청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느끼는 생활세계의 생생하고 깊이 있는 삶의 의미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을 알맞게 살릴 수 있는 연

구 방법으로 생애사연구를 들을 수 있다. 생애사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그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12).

생애사 연구는 첫째,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연구자가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삶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읽어 내면서 그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셋째, 한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한 장르로서 인문학, 사회과학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김영순·정경희·정지현, 2018). 이는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적취득까지 특정 시기에 대한 경험의 사실을 자신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삶의 이야기이자 자신이 처해 있던 공간의 개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배경까지 확대되어 전해질 수 있다(김영천, 2013).

생애사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성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이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영천(2013)은 생애사연구에서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라는 의식적, 주관적인 시각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이 기억하는 경험은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연구참여자의 심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생애사 연구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삶의 전반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은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생애사 연구 방법이 한 개인의 삶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그들의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의 맥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과 이야기식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개인의 자아 발견은 물론 삶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애사연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의 인정투쟁에 대한 경험을 시공간의 연속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 속에서의 인정투쟁의 경험 과정은 한 공동체 속의 활동을 통하여 체득되는 사건의 연대기적 과정을 의미한다. 질적인 연구에서 생애사연구는 생애의 역사, 사건의 연대기, 생애의 활동에 대한 일상의 묘사와 같은 측면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난민들의 일상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험이 인정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생

애사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난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법적인 부분이나, 타 국가와의 비교 연구 등 문헌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난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정투쟁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변화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난민들 입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인정투쟁 경험 과정과 경험 과정을 통한 변화, 그리고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생애사 연구가 다른 질적 연구 방법보다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기에 선택하였다. 셋째, 난민들의 문화적응이나 인정투쟁을 통한 자존감 회복, 자부심 등에 대한 연구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난민들 입장에서 문화적응이나 인정투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정책적인 변화 내지는 난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사연구를 선택하였다.

난민은 자발적인 이주와 달리 다양한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난민들은 피난지에서 완전하지 않은 신분에서 시작하여 난민 인정과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면서 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안게 된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족이 구성되고 타문화에 속하여 새로운 삶의 전형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삶을 만들어 가게 된다. 생애사 연구가 가지는 연구 주제는 연구참여자의 전체 인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의미 안에는 그 사람의 전반적 삶의 역사와 인생이 담기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생애사 탐구를 활용하여 난민 신분에서 국적취득까지 난민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인정획득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모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난민과정, 난민인정 신청과정, 국적취득과정,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생애 전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할 것이다. 난민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정획득을 위한 노력이 어떠한 영향으로 어떤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에 있어서 연구차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방글라데시 줌머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국적을 취득한 7명이다. 먼저 방글라데시 줌머난민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줌머족 연대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적응을 보였으며, 축제, 반민주적 방글라데시 투쟁, 매체 홍보 등 소수민족의 인권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모습을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조건을 몇 가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일 국가 출신의 사람들끼리 집성촌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 간에 정보공유와 자조 모임 등을 이유로 자주 만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김포에 거주하는 난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둘째, 난민들은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주민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난민들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한국어로 인터뷰할 때 어려움이 없는 난민들을 소개받아 선별하였다.

셋째, 난민 선정 시 성별, 연령, 직업, 가정 등 다양한 부류의 난민들을 참여자로 선별하여, 다양한 현재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경험담을 듣고자 하였다. 다양한 현재의 위치에 따라 한국 생활에서 문화적응 경험도 각기 다르다고 보고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이전부터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김포지역에서 이들의 행사와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관찰하여 이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세부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2.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여)은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녀는 2007년에 난민 인정 받고 2017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으로 정착한 이유는 줌머족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어 가족과 함께 무작정 방글라데시를 떠나 태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난민 신청 기간에 난민센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0년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촛불집회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2.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여)는 한국에 2008년에 입국하였다. 그녀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자매들을 고국에 남기고 혼자 고국을 떠났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다. 남편은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을 받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정부군에 의해 동네 주민들이 살해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한동안 마을이 불 태워져 인도로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 남편은 반체제 정치 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하였다. 현재 그녀는 난민들의 모임에서 모국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2.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남)은 2007년에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2009년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2017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부모님과 동생을 고국에 남겨둔 채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 정책에 저항하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혼자서 탈출을 감행하여 한국에 정착하였다. 한국에 살면서 결혼을 위해 인도에 가서 부인을 만나 스리랑카에서 결혼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국적취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취득 후 안정적인 삶이 좋다고 한다. 현재 자동차,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크면 한국의 비싼 학비 때문

에 인도의 대학으로 유학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한국의 대학에 보낼 생각도 하고 있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남)는 2005년에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2006년에 난민 인정받고 11년 만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모국에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 누나, 동생과 같이 살다가 다른 민족과의 종교 문제로 싸움을 벌였다. 이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다가 가족들을 떠나 한국으로 도망쳐왔다고 한다. 한국에 살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들이 자주 모이는 센터에 나갔다가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쌍둥이 아들 2명과 쌍둥이 딸 2명을 낳았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기술을 배운 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2.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남)는 2003년에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2005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지금의 줌머연대의 틀을 잡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2011년에 국적을 신청하여 2014년에 취득하였다. 모국에 모친과 동생들이 있지만 부인과 딸만 데리고 모국을 탈출하였다. 그가 탈출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나이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에 낯선 한국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현재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주한 방글라데시인의 줌머연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서 난민공동체에 참여하여 임원을 맡기도 하였다.

2.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여)은 2009년에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2010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 후 2015년에 국적을 신청하여 2017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모국

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부모님과 오빠 등 대가족이 살고 있었으나 홀로 모국을 탈출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가족 또한 이슬람 이주자의 폭력에 의해 집을 잃게 되면서 피난을 다니다가 스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관심이 많아 동네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며 한국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

2.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남)은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그해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2009년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2012년에 국적을 신청하여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모국에 어머님과 몸이 불편한 남동생이 있으며, 홀로 모국을 빠져나왔다. 그는 반정부 시위와 소수민족의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다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스리랑카, 인도 등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현재 컨테이너 제작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인과 딸 둘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방글라데시 부모님에게 보내드렸으며 부모님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 가장 절실한 꿈은 동생이 어릴 적에 말라리아에 걸려 심한 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술을 시키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생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	입국	난민 신청	난민 인정	국적 신청	국적 취득	성별	출생 년도	가족 관계		현재 직업
								모국	한국	
1	2007	2007	2007	2007	2017	여	1971	모, 오빠2	남편, 딸(11)	근로
2	2008	2008	2009	2014	2017	여	1982	부모, 언니, 남동생2	남편,아들(9), 딸(1)	가사
3	2007	2007	2009	2015	2017	남	1981	부모, 남동생, 여동생	부인, 아들(2), 딸(9)	사업
4	2005	2006	2009	2015	2017	남	1983	형, 누나, 여동생	부인, 아들(7), 딸(7),딸2(5)	근로
5	2003	2003	2005	2011	2014	남	1963	모, 동생3	부인, 딸	근로
6	2009	2009	2010	2015	2017	여	1984	부모, 오빠	남편, 딸(7)	근로
7	2005	2005	2009	2012	2017	남	1983	모, 누나, 남동생	부인, 딸(7), 딸((6)	근로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와 일대일, 혹은 그룹으로 만나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이전에 인터뷰 목록을 준비하였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마다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상이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국가, 민족, 축제, 활동, 모임이나 연대의 각종 자료, 도서, 미디어 등과 학술지 논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에 의한 자료수집은 1차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하였으며, 면담 중에 부족한 부분은 2차로 2021년 7월에 추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면담은 개별 자택에서 실시하거나 영아가 있는 연구참여자와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1~2시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담과 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심층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주제범주	인터뷰 심화질문
난민 동기 및 과정	어릴적 성장 이야기 난민 이전의 삶의 계획 난민이 된 이유 난민 유형(종교, 정치, 인종, 국적 등) 가족 형태, 어려움 난민으로서 탈출 경로 정착지 별 난민 생활 난민 인정을 위한 노력 난민 인정과정의 어려움
한국을 선택한 이유	한국을 선택한 계기 한국에 대한 사전이해(정보)
한국 국적취득 과정의 어려움	국적취득을 위한 노력 인정(학교, 복지, 지원, 동료지지 등) 사회적 어려움(편견, 무시, 차별 등)
한국 국적취득 이후의 삶	크게 달라진 점 사회적 도움의 변화 한국 국적의 의미 한국국민으로서의 또 다른 어려움(제도적 이해와 실행), 주변인의 차별
개인적인 미래의 계획 및 꿈	한국국민으로서 미래의 삶의 목표 향후 포부나 계획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사회통합 된 나 진정한 한국민으로서 다문화정체성 한국인 구성원으로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동일 보장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매년 행사하는 축제에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고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신뢰와 존중을 통한 라

포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와의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자료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살아온 경험 전체를 이야기 형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내러티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별 인터뷰 개요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참여자 인터뷰 개요

연구참여자	회차	날짜	시간	장소
1	1차	2019. 4.23(화)	13:00-15: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자택
	2차	2020. 7.12(일)	17:00-19:3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자택
2	1차	2019. 4.25(목)	14:00-16:00	김포시 대곶, 연구참여자 자택
	2차	2020. 7.14(화)	11:50-12:50	전화 인터뷰
3	1차	2019. 5. 5(일)	14:00-17: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2차	2020. 7.12(일)	17:00-19:3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4	1차	2019. 5. 5(일)	14:00-17: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2차	2020. 7.12(일)	17:00-19:3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5	1차	2019. 5. 5(일)	14:00-17: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2차	2020. 7.12(일)	17:00-19:3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1 자택
6	1차	2019.10. 5(토)	18;00-20: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2차	2020. 9.12(토)	18:00-19:00	전화 인터뷰
7	1차	2019.10.15(화)	19:00-21:00	김포시 양곡, 연구참여자 거주지 근처카페
	2차	-	-	-

생애사연구는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살아온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이동성, 2015).

자료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별 삶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난민 이전과 이후, 국적취득 이전과 이후의 삶의 경험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분석과정에 연구참여자와 함께 인터뷰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이를 다시 해석하며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재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참여자와 독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이동성, 2015).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와 독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인터뷰 자료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저술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cole&Knowles, 2001).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연구자는 개방적인 태도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들으면서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한 내용이나 맥락을 메모하였다. 인터뷰 도중에 메모한 자료도 함께 전사하여 녹취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 참여자 생애사별 요약 기술을 작성하였다.

셋째, 전사 자료를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생애 자체에 집중하여 분석하였고 앞서 분석된 자료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후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나열한 후, 유사한 이슈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의거하여 얻어낸 인터뷰 전사록은 A4기준 177페이지이며, 글자수(공백제외)는 139,222자이다. 문단은 6,252개에 달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6개의 하위범주(정체성 회복의 욕구, 생존 유지 욕구, 이주민 차별, 난민 무시, 난민 공동체와 연대, 사회적 기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3개의 상위범주(자아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다문화 정체성)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연구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수집과 분석단계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Creswell, 2012).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면담은 인간을 탐구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동료지지집단을 활용하였으며 난민 관련 연구와 생애사연구 경험이 있는 3명의 박사와 1명의 박사 과정생에게 내용을 검수 및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과정 중 난민센터에서 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둘째, 다원화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난민들의 삶을 직접 관찰한 후, 난민들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난민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의 자문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때는 연구참여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하였다.

연구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질적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과 심층 면담 실시 전 연구목적, 연구 내용, 연구윤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면담 내용 녹음 및 학문적 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승인은 인하대학교 기관인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90225-3A이다. 참여동의서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윤리, 심층 인터뷰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Guba & Lincoln(1981)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하여 연구에 접근하였다. 첫째는 사실적 가치로 원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시에 면담할 질문지를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주지 않고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후에 인터뷰 전사자료는 언어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터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연구참여자에게 재차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는 적합성으로 자료 분석에 있어 박사나 동료 중 질적 연구자들에게 주기적 검토와 적합한 인터뷰 상황이었는지 적합한 분석을 하였는지 피드백을 받았다. 셋째는 일관성이다. Guba & Lincoln(1981)은 일관성 대신 감사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자취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타연구자들이 연구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와 동료들에게 연구 진행시 연구 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인 토론을 진행하여 연구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였다. 넷째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터뷰 내용과 분석과정에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난민 관련 기관에서 난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해석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Ⅳ. 줌머난민 이주과정의 생애사적 경험

1. 생애사적 경험 개요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생애사연구를 통하여 모국의 생활을 등지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적취득 난민의 생애를 있게 한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들의 이주 전 모국에서의 삶, 정주국인 한국에서의 난민 경험, 그리고 국적취득 이후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습 등 개인의 생애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피고자 하였다. 난민에게 있어서 정주국에서의 삶은 타 이민자와 달리 인정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의 과정이 전개되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인생의 변화, 성장, 발달에 따른 변화를 인정이론을 렌즈로 삼아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애 시기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참여자의 생애 시기별 주요 내용

생애 시기 구분		생애 시기별 주요 내용
이주 직전 시기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이주 실행 과정
이주 이후 시기	난민의 삶	한국 이주 과정
		난민 신청 과정
		난민의 삶
	한국인의 삶	국적취득 과정
		국적취득 이후의 삶
		줌머한국인의 꿈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살피기 위해 생애 시기를 이주 직전 시기로 줌머족의 삶, 이주 이후 시기로 난민으로서의 삶,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으로 구분하였다. 줌머족의 삶에서는 이주 결정 동기, 이주 실행 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고, 난민으로서의 삶에서는 한국 이주 과정, 난민 신청 과정, 난민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살피며,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에서는 국적취득 과정, 국적취득 이후의 삶, 줌머한국인의 꿈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난민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고향에서 출발하여 난민이 되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경험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즉 난민 이전의 삶에서부터 난민을 신청한 정착지 그리고 한국 국적취득을 한 후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경험한 일들, 미래 계획, 정체성 협상 등 전반적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였다. 난민의 순탄하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립되고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의미는 생애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적취득 난민의 생애사적 시기와 생애 시기별 관심 키워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 7명의 생애사 경험은 각각 개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별 생애 경험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반면,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경험을 이동경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연구참여자 1, 2, 6의 경우이다. 이들은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남편을 만났거나 한국에 먼저 도착한 결혼 예정자의 도움으로 피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참여자 3, 4, 5, 7의 경우이다. 이들은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인접국으로 피난하였다가 그곳에서 한국을 선택하여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연구참여자의 이동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Ⅳ-1]과 [그림 Ⅳ-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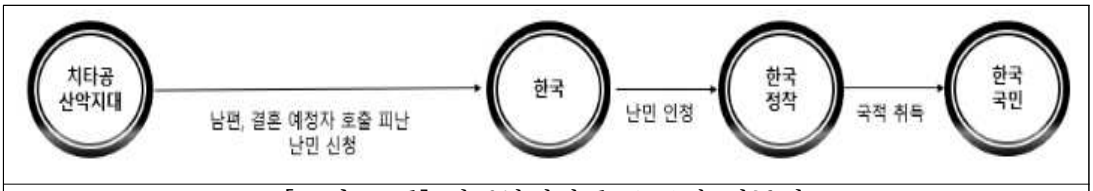

[그림 Ⅳ-1] 연구참여자 1, 2, 6의 이동경로

[그림 Ⅳ-2] 연구참여자 3, 4, 5, 7의 이동경로

2. 줌머연대 활동으로 꿈을 펼치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연구참여자 1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이슬람 이주민에게 빼앗긴 줌머족 마을
	이주 실행 과정	결혼 이후 체포를 피해 인도로 간 남편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남편과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기다림의 시간
	난민 신청 과정	한국어 소통이 어려웠던 난민 심사 과정
	난민의 삶	동네 아주머니들의 적극적인 도움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병행한 공부
	국적취득 이후의 삶	한국 국적과 외모의 불일치로 겪은 차별
	줌머한국인의 꿈	자식 교육을 위한 노력과 줌머연대 활동

2.1. 줌머족의 삶

2.1.1. 이주 결정 동기 : 이슬람 이주민에게 빼앗긴 줌머족 마을

정부의 이주민 정책으로 불교를 믿는 줌머족이 사는 마을 안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벵골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줌머족의 삶의 터전을 조금씩 앗아갔다. 줌머족 마을은 점점 이슬람 이주자의 마을로 변해갔다. 줌머족들은 이슬람 이주민과 군부의 탄압에 반항하다 결국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살아온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칠까 봐 무서운 생각이 생생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 산악지대에 원래 살던 줌머족보다는 이슬람 벵골족을 우선시했으며, 군인들도 함께 들어와 마을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점차 마을을 침범하게 되면서 폭력 사태도 발생하게 되었다. 군부와 이슬람 벵골족 사람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총을 쏘기도 하였으며, 보이사비 축제 기간에는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치

타공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마을에서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1도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 “갑자기 이슬람의 벵골족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동네에는 예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슬람 군인들도 왔어요. 군인들이 항상 우리 마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마을 안에 이슬람 마을 생겼어요. 예전엔 없었어요. 우리가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아이도 낳고 학교도 만들었어요. 참으로 억울해요.”

2.1.2. 이주 실행 과정 : 결혼 이후 체포를 피해 인도로 간 남편

연구참여자 1은 피난을 간 인도에서 같은 차크마 민족인 남편을 만나 1994년에 결혼하였다. 전통적으로 줌머족은 같은 민족끼리 혼인을 맺는 풍습이 있다. 줌머족은 소수 민족임에도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다. 남편은 은행원으로서 지식인층에 분류되어 올바른 소리와 군중을 모으는 힘이 있었으므로 정부 군인과 이슬람 이주민으로부터 많은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었다. 군인들은 똑똑한 지식인들을 잡아서 경찰로 넘겼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가 남편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남편이 먼저 옆 나라인 인도로 가게 되었다. 만약에 인도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치타공 산악지대 산 속에서 숨어서 살았을 것이다. 이후 남편은 인도에서 모국으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보다 나은 미래와 고향을 위해 안전하고 먼 곳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 “결혼은 1994년에 했어요. 오래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이 인도에 갔어요. 남편은 인도에서 한국으로 온 거에요. 한국에 와서 남편이 난민 인정을 받고 제가 온 거에요. 고향에서 남편이 위험했어요. 군인들이 잡아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우리 민족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생각이 너무 옳은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잡아서 경찰로 넘겼어요. 그래서 마을을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남편은 대학원을 끝내고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때 군인들을 피해 인도에 도망갔다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나왔어요. 인도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

는 한국으로 우리 줌머족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전에 A씨가 한국에 먼저 와 있었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게 된 거예요.”

2.2. 난민의로서의 삶

2.2.1. 한국 이주 과정 : 남편과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기다림의 시간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2003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자신은 남편이 한국에 먼저 가있는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군인과 이슬람 이주민을 피해 치타공 산악지대가 아닌 다른 마을에서 살았다. 그리고 2007년에 남편이 먼저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오게 되면서 모국 고향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편을 따라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난민으로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먼저 인도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받고 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한국에 관광 비자로 왔다가 바로 난민 신청했어요. 저의 가족과 시어머니를 두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남편과 함께 줌머족 마을에서 함께 살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텐데 한국에까지 와서 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고향에 계신 가족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고향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어요.”

2.2.2. 난민 신청 과정 : 한국어 소통이 어려웠던 난민 심사 과정

연구참여자 1는 고향에서 결혼 후 남편이 인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먼저 가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일, 남편의 도움으로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일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두려움과 희망이 엇갈리는 마음 상태였음을 이야기하였다. 다행히 남편이 먼저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 이후 바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마지막 정착지로 선택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을 때까지 진짜 난민

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고, 한국말도 잘 못하데 상황에서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을 때 심사과정에서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구분하는데 잘 말해야 해서 남편들이랑 힘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가짜로 사는 건 없어요. 한국 NGO 분들이 한국 난민 피난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진짜인지 확인했어요 제가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야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고향에 온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 직장을 다니게 되어 설레고 했어요.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고향에 힘들게 사는 가족을 돕고 남편과 함께 줌머족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자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2.2.3. 난민의 삶 : 동네 아주머니들의 적극적인 도움

연구참여자 1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소작농이 있는 부유한 가정의 막내딸로 사랑받으며 지냈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 이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졸업 이후 시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2년간 다닌 적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언어소통과도 어렵고 업무를 잘 몰라서 여러 번 혼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 가끔 동료들이 힘을 주기도 했다. (중략) 2009년에는 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알려 주었다. 멀리 살고 있어 쉽게 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2의 부모님 역할을 해 주시고,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역할을 해주었다. 동네 아주머니들뿐만 아니라 줌머연대 사무실 근처에 있던 여러 한국 사람들이 연구참여자1의 사정을 듣고 딸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자처해서 딸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공부를 도와주었다. 연구참여자 1은 이웃 주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예의를 다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했다고

하였다.

> “일하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할 때 장갑 하나씩 주잖아요. 제가 금요일부터 출근해서 장갑 받았는데 바로 빵꾸나서 버렸어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장갑 달라고 해서 빵꾸나서 버렸다고 하니까 보여주고 버려야 한대요. 그러면서 다음에 줄게 네가 버렸으니까 네가 사 오라고 장난도 쳤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중략) 딸이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웠어요.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는 도시와는 다르게 노인 분들이 많고 시골 분들이라 정이 많아요. 우리가 외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버릴 때면 주민분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저도 한국 주민들과 잘 지내려고 먼저 인사도 하고 마음에 들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요.”

2.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2.3.1. 국적취득 과정 :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병행한 공부

연구참여자 1은 난민 인정 이후에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시기인데다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공부까지 병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적취득과정에는 줌머족 연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중략)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웃한 한국인들과의 소통문제였다. 말이 잘 안 통하니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실제 겉모습만 보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딸 하나만 잘 키우고 싶어 했다.

> “난민 인정에서 국적취득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 한국 국적취득할 때 시험도 봐야 하잖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남편이 먼저 신청했었어요. 책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랬어요. 공부만 하는 건 괜찮을 텐

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중략) 겉모습만 보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다 똑같아요.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2.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한국 국적과 외모의 불일치로 겪은 차별

연구참여자 1은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민이 된 이후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받고 나서 앞으로는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다. 비자를 연장한다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자 연장이 반려될 수도 있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현재 국적을 받고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외국에도 편하게 나갈 수 있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불안한 삶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도망 갈 일이 없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국적취득 이후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을 이제 방글라데시인이 아니라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나서 센터에서 소개받은 곳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이 자신을 보자마자 외국인은 쓰지 않는다는 말을 했으며, 그 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한국 국적을 받은 기분은 좋죠. 그런데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외국인이고 말은 완전하지 않은 한국어를 사용하다보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솔직히 아직도 있어요. 어떤 일 생겼을 때 그곳에 가면 외모만 보고서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한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앞으로는 나와 같은 한국 국민도 한국사회에서 언젠가는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요."

2.3.3. 줌머한국인의 꿈 : 자식 교육을 위한 노력과 줌머연대 활동

연구참여자 1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자신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한국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딸이 한국에서 잘 성장하여 대학 교육까지 무사히 마치고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딸이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 것이라는 걱정으로 한국의 선생님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도를 설명해 주었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딸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딸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에게 줌머연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삶의 원동력이었다. 줌머연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일자리를 구할 때 등 줌머난민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 곳이었다. 한국 국민으로 살면서 줌머연대와 이웃들과 함께 진실 되고 정의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모국이 그립고 모국의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줌머연대와 함께 모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저는 제 아이가 건강히 잘 크는 게 첫 번째에요.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대학까지 잘 보내서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일자리 잡고 안정된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아이는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요. 고향에서 살지 못해서 아쉽지만 한국 국민으로 고향도 잊지 않고 잘 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어요. (중략)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지만 저의 모국을 돕기 위해서도 일하고 싶어요.”

3.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연구참여자 2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군부와 벵골족에 의해 자행된 방화와 강탈
	이주 실행 과정	기숙사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의 조언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서울에 있는 스님의 도움으로 결혼 증명
	난민 신청 과정	남편 덕분에 언어적 어려움 극복
	난민의 삶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줌머연대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병행한 공부
	국적취득 이후의 삶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줌머한국인의 꿈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닌 당당 한국인

3.1. 줌머족의 삶

3.1.1. 이주 결정 동기 : 벵골족과 군부에 의해 자행된 방화와 강탈

연구참여자 2는 어렸을 때 군부와 이슬람 벵골족에 의해 자신의 눈앞에서 자행되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이들은 줌머족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줌머족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하여 근처 이웃 마을로 도망을 다니면서 숨 죽여 살았다. 마을에 남아 있는 줌머족 사람들은 이슬람 이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지속적으로 폭력과 위협을 가하여 결국 마을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 벵골족의 목적은 줌머족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가지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2는 어린 시절 내내 벵골족을 보면 그 자리를 피해 다녔다고 했고, 줌머족 사람들의 탄압을 목격하면서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쳐올 일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면서 피난을 다니다가 결국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슬람 벵골족

은 사전에 선주민인 줌머족과 평화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존의 방향을 논의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순차적인 해결보다는 무조건적이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몰아가기만 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의 같은 국민으로서 소수민족 간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줌머족으로 하여금 이주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 “학교에 다닐 때의 큰 어려움은 제가 어렸을 때 반대쪽 마을로 도망갔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인데 땅 때문에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 걸 두 번이나 보고 한번은 도망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동네는 다 불타고 사람들이 인도에 도망갔잖아요. 심각했어요. 할아버지 집도 다 타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방글라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서 빨리빨리 걸어서 피해 다녔어요. 저에게도 무서운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3.1.2. 이주 실행 과정 : 반정부활동을 한 예비 남편을 따름

연구참여자 2는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는 예비 남편의 감옥생활 이후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 스리랑카로 피신해 있었다. 이후에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예비 남편을 따라 오게 되었다. 예비 남편은 가까운 나라에 있으면 가족들이 군부세력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계속해서 받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좀더 먼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2는 군인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는 행태를 보고지낸 것이 떠오르고 자신에게도 미칠 불안한 상황을 피함과 동시에 예비남편의 안정적인 삶의 정착을 위해서 부모님과 논의 후 뒤따르게 되었고 이것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1981년생으로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다녔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줌머족 사람들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다. 지금의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예전에 친구가 신랑을 소개시켜줬어요. 2003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반정부활동으로 정부의 탄압과 감시를

피해 미리 한국에 있었어요. 우리 신랑은 스리랑카 갔다가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떨어져 있는 동안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이후, 계속 연락하다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말하고 허락해줘서 약혼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한국에 저를 초대했어요. 결혼식은 한국에 와서 했어요. 결혼하고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3.2. 난민으로서의 삶

3.2.1. 한국 이주 과정 : 서울에 있는 스님의 도움으로 결혼 증명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2005년에 한국에 먼저 와서 힘들게 난민 면접을 보고 난민 인정을 받았다. 자신은 2008년에 여행 비자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에 온지 한 달 만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과 먼저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공식적인 혼인신고는 못했으나, 부부가 모두 불교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스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스님을 통해서 결혼 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적을 신청할 때 결혼 증명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난민 인정 받기가 어려워서 남편과 먼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먼저 받아서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불교를 믿으니까 서울에 스님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스님이 우리에게 결혼 증명 줬어요."

3.2.2. 난민 신청 과정 : 남편 덕분에 언어적 어려움 극복

연구참여자 2는 난민 신청하는 과정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지 못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다. 한국에 온지 2달 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당시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조사관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안 된다고 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남편이 모국에서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도 외국인이라 결혼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무엇보다 남편이 인터뷰를 대비하여 한국어를 알려주고 여러

상황에 대해 함께 공부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인터뷰를 마치고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 “난민 신청 할 때는 서류보다 말이 잘 안 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혼자만 불러 인터뷰 할때면 영어로 제대로 나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어보다 영어 더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읽기는 잘하는데 대화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조금은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저에게 공부시켜 줬어요.”

3.2.3. 난민의 삶 :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줌머연대

연구참여자 2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그냥 외국에 가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막상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모국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코 만만한 생활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난민 인정과정,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는 일 등 모든 상황들이 힘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을 두렵게 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남편이 처음으로 일한 직장에서 몇 개월간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외국인이니까 말을 못하고 서러움에 많이 힘들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도움을 주었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없었다. 그런데 줌머연대는 달랐다. 줌머연대에서는 지원받은 것이 있으면 모두 줌머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줌머연대에서도 난민일 때만 지원을 해주고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2는 난민 신청 과정에 줌머연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도움 받은 것을 베풀기도 하였다. 줌머연대에서 주관하는 명절 행사를 통해 줌머난민들과 교류하고 모국의 줌머족 마을에 일이 생기면 나라를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가서 시위도 하고 돈도 모아 모국으로 보냈다.

"아이들이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말을 안 하면 몰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외국에 가면 방글라데시보다 더 공부하고 좋은 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나가면 다들 좋겠다고 생각해요. (중략) 처음에 아이를 키울 돈이 없어서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한국 오고 나서는 차별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 회사 그만 두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했어요. 그 사장님이 계속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하고 있어서 돈을 받아야 했어요. 사장님이 아기가 태어나면 조금 더 준다고 조금만 줬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전화했더니 돈을 보냈는데, 너무 조금만 보냈어요. 합쳐서 1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을 더 받아야 해요. 나중에 법원까지 갔어요. 줌머연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겨서 돈 받았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받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3.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3.3.1. 국적취득 과정 :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조건 미리 준비

연구참여자 2는 난민 인정은 남편보다 늦게 받았으나 국적취득은 남편보다 더 빨리 신청하게 되었다. 첫째 아이 임신 중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남편은 회사일이 바빠서 제때 시험을 보지 못해서 국적 신청이 조금 더 늦어졌다. 이후 남편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인정만으로도 살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 세대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서류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였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3천만 원을 모으고 집 계약서도 준비하는 등 미리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모든 조건을 잘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국적신청 과정에서 출산 증명서 같은 거 있으면 제출하고 한국인 추천자 한 명 필요해요. 제가 아는 우리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포시 시의

원님을 소개해주었어요. 그분이 우리 추천해 주었어요.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 서류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요. 한번은 불러서 통장에 돈 얼마나 있는지, 자녀 증명서, 집 계약서 이런 거 다 확인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좀 한국말을 잘하니까. 말을 다 알아들으시네요 하고 놀라셨어요. 인터뷰하고 7~8개월 지나서 다시 전화 왔어요. 그때는 공무원 두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면접했어요."

3.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 2는 한국 국적을 받고 나서 누구보다도 기뻤으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음껏 자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 통역요원으로 일하면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해서 회사에서 맞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2와 남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도 한국인처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두 사람은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세우고 지금도 일요일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방글라데시에 있는 부모님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 나중에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국적을 취득했지만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는 뼈까지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맨날 말해요. 당신은 왜 한국어 공부 안 하냐고. 제가 한국어 발음이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있대요. 한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다 알아야 한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는데 우리가 말을 못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저도 남편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3.3.3. 줌머한국인의 꿈 :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닌 당당 한국인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아이들을 한국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

로 삼고 있었다. 부모의 모국은 방글라데시이지만 아이들의 모국은 한국이므로, 두 아이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니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진짜 한국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차여자 2와 남편은 지금은 일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다. 또한 동네에 놀이터 하나가 설치되기를 소망하였고 정부에서 '방과후수업'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한국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없어서 놀이터도 없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요. 아이들한테 많이 못 가르쳐요. 지금은 태권도만 보내고 있는데 피아노 같은 음악도 하고 싶은데 못가니까 속상하네요.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벽돌 공장에서 꿈을 키우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4>과 같다.

<표 Ⅳ-4> 연구참여자 3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체포 위기
	이주 실행 과정	두 번의 여행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이미지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전환
	난민 신청 과정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의지
	난민의 삶	공장에서 벽돌을 만들면서 새로운 도전 시작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 믿고 기다린 시간
	국적취득 이후의 삶	탄압 받고 있는 줌머족을 돕기 위한 노력
	줌머한국인의 꿈	한국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복지 소망

4.1. 줌머족의 삶

4.1.1. 이주 결정 동기 : 반정부 활동으로 인한 체포 위기

연구참여자 3은 1989년 당시 8살의 어린나이에 줌머족 마을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줌머족 사람들을 학살하는 매서커[25] 전쟁을 목격하였다. 정부군과 경찰이 모두 이슬람 세력이었으며, 방글라데시에는 소수민족인 줌머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소수민족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을 당하면서 줌머족들은 산으로 도망을 다녔다.

연구참여자 3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힐 스튜던트 카운서[26]라는 단체에

25) massacre: 학살을 의미한다. 로버트 멜슨은 학살을 “정치적 주체에 의한 유의미하게 많은 상대적으로 무력한 자들에 대한 의도적 살해”로 정의하며, “정치적 학살은 … 범죄 또는 병적 상태로 인한 대량 살해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 정치주체라 함은 물론 국가 및 국가의 하수 조직들을 포함하나 비정부 조직일 수도다…”고 말한다.

26) hill student council: 힐 학생 협의회는 치타공 산악지대(CHT) 안팎의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줌머족 학생들의 학생 조직화이다. 1989년 5월 20일, 36명 이상의 무고한 줌머족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끔찍한 랑구두(Langudu) 대학살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참여하여 게릴라전에 투입되어 이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후 스리랑카로 건너가 스리랑카 주재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모국의 실상을 알리는 데모를 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체포 위기에 놓이게 되자 더 이상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그때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도 있고 총도 있었어요. 우리 소수민족을 다 죽였어요. 산에 숨어 살다가 군인들이 나오면 또 도망갔어요. 산에서 밖에 살 수 없었어요. 산에 그냥 숨어있는 거예요. 숨어도 곳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서 또 도망가야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이사하면서 줌머 마을에 불 질렀어요. 그럼 줌머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또 와서 이슬람 사람들이 마을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땅이 없어졌어요. (중략) 저는 제 고향의 실상을 알리려고 데모에 참여했어요. 정부군이 저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4.1.2. 이주 실행 과정 : 두 번의 여행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이미지

연구참여자 3은 학교생활 중 한국 친구를 만난 인연으로 두 번이나 한국에 관광하러 온 경험이 있었다. 당시 모국에 비해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후 모국의 실정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위치도 불안한 상황이 되자 여행 비자를 발급 받아 친구 한 명과 같이 세 번째 한국에 와서 친구 집에서 살았다. 그때부터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한국에 계속 살게 되었다.

> “여행을 와서 한국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글라데시에 가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또 데모를 했으니까요. 세 번째 한국에 왔을 때 더 이상 방글라데시로 돌아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스리랑카에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이라고 방글라데시 경찰이 보면 잡아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정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됐어요.”

4.2. 난민으로서의 삶

4.2.1. 한국 이주 과정 :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전환

연구참여자 3은 모아노가르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칼리지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방글라데시의 다카라는 대학교에 다녔으나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스리랑카의 친구를 만났다. 당시 전쟁으로 위험한 방글라데시보다 스리랑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를 스리랑카의 켈리니아 유니버시티(University of Kelaniya)[27] 로 옮겼다. 스리랑카에서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닌 후 졸업하였다. 경제를 공부 하고 싶었으나 점수가 되지 못해 철학을 전공했다. 자신의 출신지역이 열악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이 도와주었고 경제적인 문제는 좋은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친구도 자신을 도와주었다. 또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돕는 NGO 단체의 도움도 받았다. 스리랑카의 학교에서 스리랑카 사람인 아내를 만났다.

연구참여자 3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줌머족의 실상을 알리는 데모를 했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업을 마치고 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 당시 태국의 상황은 스리랑카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태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비자를 연장하지 못했다. 결국 태국에서 한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 “다카대학교에서는 6개월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한 명이 도와줬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돈도 없고 대학교에 들어가도 졸업할 수

27) 1875 년 Ratmalane Sri Dharmaloka Thera가 불교 승려를 위한 학습 센터로 설립 한 역사적인 Vidyalankara Pirivena에서 시작되었다. 1940 년대와 1950 년대 스리랑카에 현대 대학이 설립되면서 Vidyalankara Pirivena는 1959 년 Vidyalankara 대학이 되었고 나중에 1972 년에는 University of Ceylon의 Vidyalankara 캠퍼스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1978 년에는 University of Kelaniya가되었다. Kelaniya 대학은 고등 교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을 개척했으며, Sinhala에서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최초의 대학 중 하나였으며 전통 예술 학부를 인문학, 사회과학, 상업 및 경영학의 세 학부로 재구성한 최초의 대학 중 하나이다.

없었어요.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 제가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살겠다 싶어서 스리랑카에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스리랑카에 갔더니 불교 스님들이 도와줬어요. 산악지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산악지대 사람이 어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4.2.2. 난민 신청 과정 :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의지

연구참여자 3은 2007년에 세 번째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고 친구 집에 머물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진행했다. 고향에서 줌머족을 탄압하는 군부와 벵골족에 대항하여 데모를 한 적이 있고, 스리랑카에서도 모국의 실상을 알리는 데모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빨리 진행해야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는 2년여 시간이 소요되었고, 긴 시간 동안 돈도 없고 일도 없었으며 제약도 많았다. 결국 2009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까지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이 과정을 버티어 온 것은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여 모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스리랑카에서 데모한 것도 있어서 위험해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난민 신청에 면접을 세 시간 정도 있었어요. 매우 긴장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과정에서 2년 후에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난민 인정을 받을 때까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에서 미래가 없는 삶보다는 고향의 가족과 줌머족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제가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난민 인정을 꼭 받고 싶었어요."

4.2.3. 난민의 삶 : 공장에서 벽돌을 만들면서 새로운 도전 시작

연구참여자 3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안전하게 살기 위해 한국으로 왔음에도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신분 인증이 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더 한국인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난민 인정을 받은 후에는 한국 정부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지만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국적취득이라는 다음 단계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 “처음에 난민 신청하고 나서는 한국말도 못 하고 아파서 일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나중에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국인들하고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별은 어디 가나 있어요. 외국인들 차별 말고도 한국 사람들끼리도 차별하는 것 있어요.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한 달에 하루만 쉬고 일했어요. 그리고 월급은 220~230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랑 별 차이 없이 받았어요. (중략) 일하면서 경찰을 만난 적 없었어요. 맞은 적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왜냐면 저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아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요.”

4.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4.3.1. 국적취득 과정 :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 믿고 기다린 시간

연구참여자 3은 난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모국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2015년에 국적을 신청하고,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국적취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난민에게 국적취득은 완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한국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 2017년에 국적취득의 결과물을 받게 되었다.

"국적을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언제 받는지는 몰라요. 서류 가져가고 다 확인해 봐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나오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조용하게 한국을 믿고 기다려요. 제가 국적신청 하고 나서 언제 나오냐고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자주 생각이 나고 통화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다렸어요."

4.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탄압 받고 있는 줌머족을 돕기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 3은 재한 줌머연대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줌머연대는 재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도와 방글라데시의 줌머족을 돕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줌머연대에서 실제로 데모를 하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방글라데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의 목표는 한국 대사관이나 NGO에 도움을 요청하여 모국에서 탄압 받고 있는 어려운 줌머족을 몇 명이라도 더 한국에 오게 하여 한국에서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줌머연대에서 더 많은 노력하고 있었다.

"줌머연대에서 회장을 하면서 방글라 대사관 도와서 힘들게 사는 줌머족을 도와줬어요. 또 줌머 사람 중에 누가 죽으면 돈을 보내요. 한 명이 한국에 오면 그 가족들이 다 잘 살아요. 친척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줌머족을 돕기 위해 줌머연대에서 계속 노력해야 해요."

4.3.3. 줌머한국인의 꿈 : 한국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복지 소망

연구참여자 3은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민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나와 두 살 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원해주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다만 모국에서 이슬람 벵골족에게 직접 겪은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요즘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이 생각하는 이슬람 사람은 한 명이 이사 오면 여러 번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인구를 늘린 다음에 온 동네를 무슬림으로 만들 것이며,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몇 십 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의 이슬람 문제를 향후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자녀를 잘 성장시키고 모국의 줌머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스리랑카에 자동차를 보내는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스마트폰을 스리랑카에 파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돈을 모으고 신용도 쌓아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에 비즈니스를 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과 자녀를 키우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방글라데시의 위험한 생활을 생각하면서 안전한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려고 하였다.

가끔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이 생각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여 그럴 때면 휴대폰으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다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의 소망은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고, 또한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잘 성장하여, 대학교에 갈 때 국가 장학제도나 대학의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 “이슬람 사람들 얼굴을 보거나 모자 쓰고 있는 그림만 봐도 무서워요. 줌머 사람들 모이면 자주 얘기해요. 왜 한국 정부는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냐고.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너무 문제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30년 정도 후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중략) 시간이 갈수록 한국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점점 어려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요즘 물가가 점점 올라가서 혼자 살 때도 200만 원은 받았는데 아이들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예요.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복지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들어갈 때 학비도 여유롭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5. 쌍쌍둥이의 꿈을 지원하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5>과 같다.

<표 Ⅳ-5> 연구참여자 4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불안정한 삶에 비자 문제까지 발생
	이주 실행 과정	고향의 선배로부터 권유 받은 한국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재한 줌머연대의 연락처만 들고 입국
	난민 신청 과정	난민 신청 이유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난민의 삶	쌍둥이 출산과 대학병원에 대한 오해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쌍쌍둥이 탄생으로 국적취득 열망
	국적취득 이후의 삶	가족을 부양으로 소홀해진 줌머연대
	줌머한국인의 꿈	부모의 뿌리를 상기 시키는 자녀 교육

5.1. 줌머족의 삶

5.1.1. 이주 결정 동기 : 불안정한 삶에 비자 문제까지 발생

연구참여자 4는 줌머족 마을에 이슬람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고 줌머족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방글라데시를 떠나 스리랑카로 피난을 갔으나 그곳에서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삶이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자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스리랑카에도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 “방글라데시에서 줌머족 관련 정당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못 살게 해서 스리랑카로 갔어요. 경찰이 잡아갔어요. 한국이 좋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에 못 가니까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던 줌머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버텼어요.”

5.1.2. 이주 실행 과정 : 고향의 선배로부터 권유 받은 한국

연구참여자 4는 인접국인 스리랑카에서도 모국의 실상을 알리며 데모를 하였다. 줌머족 정당에서 시위를 하던 고향의 선배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갈 것을 권유 받았다. 줌머족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행을 권유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모국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먼저 가있는 정당 회원들과 규합하여 줌머족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안전한 한국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우리 파찌라는 정당이 있는데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하면 괜찮다고 알려줬어요. 2005년에 친구랑 같이 왔어요. 3개월 지나기 전에 바로 난민 신청 하고 3년 후에 인정받았어요. 그때 생활은 매일 어려웠어요. 여기에 줌머 사람들이 있고 마을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데모하던 형님들이 한국 가면 UPDF(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인민연합민주전선)[28] 회원들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5.2. 난민으로서의 삶

5.2.1. 한국 이주 과정 : 재한 줌머연대의 연락처만 들고 입국

연구참여자 4는 방글라데시 줌머족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한 줌머연대의 연락처를 받고, 그 연락처를 손에 넣은 후 한 줄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전에

28) 1997년 12월, 25년 이상 이어진 싸움을 끝내고자 줌머족 정당 PCJSS(Par Parbattya Chattagram Janasamhati Samity - ‘치타공 산악지대 산악 지대 사람들의 연대 연합’이라는 뜻)은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PCJSS의 무장 조직인 샨티 하비니는 총을 내려 놓았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약속한 평화협정의 조항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정부는 줌머족에 제한된 지역 자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학생들을 포함한 PCJSS에서 분리된 정당은 UPDF(연합민중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고 ’완전자치’를 요구하며 줌머족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부가 된 PCJSS와 완전자치를 요구하며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UPDF의 갈등이 줌머족의 새로운 문제가 되었고 정부와 군대의 탄압, 벵가리족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리랑카에서 생긴 비자 문제로 쫓겨 나오듯이 한국을 선택하여 2005년에 친구와 같이 김포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이후에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 4가 소지한 비자는 일을 할 수 없는 G1비자였으나 사정을 딱히 여겨 준 회사에서 얼마간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줘서 겨우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다.

>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스리랑카에서 도망치듯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왔을때 비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나 비자가 G1 인데 일을 몰래 하면서 몇 년간의 한국 생활은 아주 좋았어요. 주변의 줌머족 동료들이 도움을 주었고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서 고마웠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을 할 때 한국 언어가 되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어요.”

5.2.2. 난민 신청과정 : 난민 신청 이유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 2005년에 와서 난민 신청은 2006년에 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난민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데 그 일이 무척 어려웠다. 공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아야 했고, 인터뷰하러 가면 원래 살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왔는지 여러 번 설명해야만 했다. 난민 인정을 하고도 3년이 지난 2009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난민 인정을 받고 2010년에 인도에 가서 인도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 줌머족 사람들이 인도나 스리랑카 국적의 배우자를 많이 만나는데 이유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혼 이후 아내는 가족 방문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난민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증명서를 받아서 인도를 다녀온 것이며, 여행증명서로는 인도, 태국, 스리랑카에 갈 수 있었다. 현재 아내는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4명의 자녀는 7살 쌍둥이와 5살 쌍둥이다.

> “원래 회사 일 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넘어가주었어요. 한

국 생활은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비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 병원가면 병원비도 많이 나와요. 결혼은 인도에 가서 했어요. 여행증명서 받아서 갔는데 여행증명서 받기는 쉬워요. 아무 나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도, 태국, 스리랑카 등 이런 나라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는 못가요."

5.2.3. 난민의 삶 : 쌍둥이 출산과 대학병원에 대한 오해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아팠는데,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종합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고, 종합병원이라 치료비도 많이 나왔다. 한 달 동안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난민 인정 상태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병원비도 한국 사람들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감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많이 힘들었으나 나중에 병원 측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29)]

"결혼해서 처음 아기 태어날 때 아주 어려웠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 국적이면 좋은데 그때는 외국 국적이었어요. 둘째가 한 달 전에 퇴원했는데 일산 대학교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술도 안 해주려고 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어요. 한 5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병원에서 11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5.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5.3.1. 국적취득 과정 : 쌍쌍둥이 탄생으로 국적취득 열망

연구참여자 4는 2015년에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 국적을 신청한 이유는 아이들

29) 난민 인정자에 따른 거주자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 난민 인정 후 받은 F2 비자는 부부가 살기에는 괜찮았지만, 쌍둥이들이 태어나면서 F2 비자로는 가족들과 같이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F2 비자는 일반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에 문제가 없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적취득 조건을 맞추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국적을 받은 이후에는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는 현장에 가면 한국인임에도 자신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속상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4는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아이들이 크면 지금 하는 공장의 힘든 일을 그만두고 전자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 “한국에서 결혼이후에 공교롭게도 두 번의 쌍둥이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 되었어요. 쌍둥이 출산으로 산모가 걱정되어 작은 병원에 갈 수 없어 무조건 큰 병원로 갔는데 난민 인정자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교육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게 했다. 다행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취득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고 있어서 지금의 형편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국적취득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한국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넘어야 할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과 다른 외모와 아직은 서투룬 한국어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면 인정하고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편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해요, 가끔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지만 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요.”

5.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가족 부양으로 소홀해진 줌머연대

연구참여자 4는 혼자서 6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하였다. 아내는 쌍쌍둥이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고 2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빨리 아이들이 자라서 부인과 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려운 생활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다행히 아이들의 얼굴도 한국 사람과 비슷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한국 국적을 받은 후, 갑자기 가족이 늘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른 이후에 아이들이 크고 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전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재한 줌머연대에 요즘은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데모를 하러 다니면 회사에서 싫어하기도 하지만 일과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대사관 앞이나 광화문에서 모국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 “경제적인 거 말고는 한국 국민과 사는 건 괜찮아요. 방글라데시는 더 많이 어려워요.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좋아요. 한국에서는 어려워도 법적으로 싸울 수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글라 아이들 조금만 아파도 많이 위험해요.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도 안 되어요. 공부도 한국에서 학교 가는 거 문제없어요. (중략) 애기들은 거의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얼굴도 비슷하고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고 우리 음식은 못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들어요. 아이들 한국말도 엄청나게 잘해요. 아직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난민일 때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크고 나면 줌머연대에 나갈 거예요.”

5.3.3. 줌머한국인의 꿈 : 부모의 뿌리를 상기 시키는 자녀 교육

연구참여자 4의 마음속에는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대학교에도 보내는 것이 가장의 꿈이었다. 연구참여자 4는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알아낸 결과일 것이다.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기를 바라지만 방글라데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부모의 뿌리가 줌머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이들에게 모국에 관한 공부도 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 “한국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돼요. 아기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시킬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지만 아빠의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알고자하는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커서 스스로 알게 되면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알려 주면 될 것 같아요.”

6. 한국 최초 줌머족 난민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연구참여자 5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줌머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식층으로 분류
	이주 실행 과정	안전이 확보되는 새로운 나라 코리아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삶
	난민 신청 과정	번역도 없이 한국 최초 줌머족 난민 신청
	난민의 삶	딸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도전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일과 공부 병행으로 국적취득 조건 구비
	국적취득 이후의 삶	한국 여권을 본 모국 공항직원의 경례
	줌머한국인의 꿈	아이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

6.1. 줌머족의 삶

6.1.1. 이주 결정 동기 : 줌머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식층으로 분류

연구참여자 5는 치타공 산악지대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했다. 당시 정부군이 들어와서 줌머족을 폭행하고 탄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5는 줌머족 출신자들 중에서 지식인층에 속하는 인물로 낙인되어 정부군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탄압도 날로 거세졌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줌머족 출신은 경찰이 될 수 없도록 소외시켜 모든 경찰은 이민족 출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압박은 점차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줌머족 출신의 지식층으로 분류됨에 따라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은 이로 인해 반정부 활동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 정부군과 경찰에 대응하였다.

정부군과 경찰은 치타공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줌머마을을 불태우고 자신의 집도 불태우는 바람에 강제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1년 만에 다니던 은행을 그만 두고 모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더 이상 꿈꾸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태국과 인도를 떠돌며 살다가 인도의 콜카타[30] 시티에서 피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리프지 콤플렉스[31]에서 살았다.

> "그냥 배운 사람이라고 더 탄압을 받은 거예요. (중략) 방글라데시에서 로강[32], 카우칼리[33] 라는 곳에서 나는 섬에 숨어 있다가 93년에 인도로 도망 나왔어요. 인도에서 콜카타 시티에서 우리 망가네 리프지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8년 살았어요. 콜카타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리프지 콤플렉스에서 살았어요. 800명 같이요. 나도 나중에 리프지 콤플렉스에서 살았어요. 이후에 기숙사에서 살다가 또 태국으로 나왔어요. 태국에서 6개월 살다가 다시 인도에 갔어요."

6.1.2. 이주 실행 과정 : 안전이 확보되는 새로운 나라 코리아

연구참여자 5는 인도의 리프지 콤플렉스에서 8년 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이에 반정부 게릴라군과 정부군과의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은 돌아갈 수 없었다. 방글라데시에 돌아가면 줌머족 마을의 지식층으로 분류된 자신을 군인들이 잡아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해외에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줌머족들에게 치타공 산악지대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이슬람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줌머족의 안전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

30) 영국 식민지의 첫 번째 수도였던 콜카타는 웨스트 벵갈 주의 주도로 인도의 손꼽히는 대도시 중 하나이다.

31) Refugee Complex: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임시 정착지이다. 난민 수용소는 일반적으로 고국을 떠난 난민들을 수용하지만, 수용소도 국내 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모국에서 전쟁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지만 일부 수용소에는 환경 및 경제 이주민이 거주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UN, 국제기구(예: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비정부기구가 구축하고 운영한다.

32) 방글라데시 로강 원주민촌이 1990년 4월 정부軍의 방화 공격으로 주민 다수가 총에 맞거나 불에 타 숨졌다. 군인들은 심지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애를 빼앗아 불에 던지는 만행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4월 10일 정착민들과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DR)에 의해 로강(Logang) 학살이 일어났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300명의 줌머족 사람들이 사망했다.

33) 1980년 3월 25일 벵골족 정착민들과 방글라데시 군대에 의해 카우칼리(Kaukahli) 학살이 벌어졌는데, 한 불교사원 구내에서 300명의 줌족들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어 있었다.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줌머족이 약 30%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간 가족들도 원래 살던 줌머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자국민인 줌머족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인도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새로운 나라를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한국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실행하게 되었다.

> “태국에서 6개월만 살다가 다시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서 기숙사에서 사는데 아주머니 한 명에 있었는데 한국 아줌마였다. 거기 리프지 콤플렉스에서 아줌마는 불교 때문에 인도에 있었어요. 우리 줌머족 사람들도 불교이고 거기도 다 불교에요. 한국 아주머니한테 한국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코리아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달리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고요.”

6.2. 난민으로서의 삶

6.2.1. 한국 이주 과정 :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시작한 삶

연구참여자 5는 인도에서 나와서 태국에서 6개월을 보내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인도에서 일을 하던 곳에서 한국 아주머니를 만났고, 그 아주머니가 불교 때문에 인도에 와 있는 유엔 관련자였다. 아주머니는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부모님과 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참여자 5는 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한국와 인도 사이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2005년에 한국과 인도 간의 프리비자가 없어졌다. 한국 아주머니와의 인연으로 친구와 함께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연구참여자 5는 한국의 첫인상이 너

무 안정적이고 마음에 들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에 머물면서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방글라데시 사람 10명을 만나서 줌머연대를 처음으로 결성하였다. 그는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 여러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2003년에 방글라데시 사람 10명이 한꺼번에 난민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한국에서 줌머족을 모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줌머족 한 명도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 “옷 입는 것만 봐도 한국은 좋은 나라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2002년에 월드컵 한국에서 할 때 인도에서 나왔어요. 난민을 신청하겠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왔는데 그때는 한국, 인도에서 비자 안 받아도 되는 것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2005년인가 2006년에 프리 비자 없어졌어요. 한국에 올 때는 친구 2명하고 왔어요. 방글라데시에 아직 못 가고 있어. 불교인데 이슬람교도가 계속 살아요. 국가가 그만 싸우자고 사인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많이 죽고 있어요.”

6.2.2. 난민 신청 과정 : 번역도 없이 한국 최초 줌머족 난민 신청

연구참여자 5는 난민 신청 당시, 한국에서는 줌머족의 난민 신청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짜 난민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준비도 안 된 방글라데시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UN에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의 여러 다른 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의 난민 피난소, 한겨레 신문 등에서도 진짜 난민임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진짜 난민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 달에 두 세 번, 3개월에 한 번씩, 총 10번에서 15번 정도 인터뷰를 받기도 했다.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번역해 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줌머족 10명이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난민 인정을 받게 되었다.

> “거기 인도네시아에 UN 사무실 있잖아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와서 도와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10명이 왔는데 그땐 줌머 사람들이 한 명도 난민 신청한 사람 없었어요. 도움받아서 10명이 한 번에 신청했어요. 신청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UN에서도 도와주고 다른 단체에서도 도와주고 한

겨레 신문에서도 도와줬어요. 신청하고 나서 맨날 통화 와서 인터뷰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난민으로 왔는지 물어봐요. 피난처랑 한겨레에서 우리나라 가서 보고 와서 인정 해줬어요."

6.2.3. 난민의 삶 : 딸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도전

연구참여자 5는 2007년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삶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난민 인정을 받고 나서 방글라데시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아내를 인도에서 만나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난민 인정 상태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서 도망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내도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줌머족 난민 인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2009년에는 딸이 태어났고, 자신의 딸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다르게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확실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도전이 생겼다. 그래서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난민 인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한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4~5년 후 한국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자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좋아졌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말이 들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일을 하며 대학까지 나왔으나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다.

"말도 안 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 먹으면서 일했어요. 일은 불법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법 노동자가 많았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의사소통할 때까지 한 4~5년 걸렸어요. 말이 통하니까 좋아졌어요. (중략) 난민 인정을 받아서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기 했지만 딸도 태어났는데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딸과 가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국적취득이죠."

6.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6.3.1. 국적취득 과정 : 일과 공부 병행으로 국적취득 조건 구비

연구참여자 5는 국적을 받기 위해 더욱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은 한국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통장에 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 하고 받는 월급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면서 하나씩 조건을 구비해 나갔다.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문자를 보내서 날짜를 잡아 출입국 사무소에 가기도 했다. 일하는 중에 조사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장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주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 “난민 심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몇 번 정도 집에 와서 봐요. 온다고 전화로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국 생활에서 적응하여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보고 가는 것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청소도 깨끗이 했어요. 통장에 돈도 있어야 해요. 공장에서 일 하고 받는 월급은 적지 않았지만 낭비하지 않고 저축해 두었지요.”

6.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한국 여권을 본 모국 공항직원의 경례

연구참여자 5는 2014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어렵게 받은 국적이라 뿌듯함을 말로 다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한국 여권을 받고 나서 방글라데시와 태국에 갔는데 한국 여권을 보여주니까 공항직원이 자신에게 경례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난민으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고,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든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한국은 자신의 고향인 치타공 산악지대와 비슷하게 산이 많고 강도 많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과 동질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했다. 자신이 생각하

기에도 아직은 한국말이 한국인처럼 유창하지 않아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였다.

> “한국 국적을 받고 나서 어머니 보러 모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더니 공항 세관원이 경례를 해줬어요. 평소 같지 않게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줌머족 사람으로서 정부군과 이슬람 이주민으로부터 탄압과 폭력 앞에 섰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동에 대해서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한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줌머족 사람들을 위해서 힘껏 돕고 전과 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다짐하게 되요. 아직도 고향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요.”

6.3.3. 줌머한국인의 꿈 : 아이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

연구참여자 5는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대학교에도 무사히 진학하여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형제자매가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과 달리 자식만큼은 최선을 다해 기르기 위해 아이도 한 명만 낳았다.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치타공 산악지대에 대한 역사도 알아가기를 원했다. 그는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적응해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타공 산악지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이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성장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처럼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한국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도와주고 같이 살면서 한국이 더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중략) 아이들이 한국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처럼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좋은 나라 만들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7. 한국 국적이 자랑스러운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연구참여자 6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뿐인 어린 시절
	이주 실행 과정	한국에서도 고향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남편 소개한 스님과 여행비자로 한국행
	난민 신청 과정	한국말을 잘 몰라서 어려웠던 인터뷰
	난민의 삶	여전히 갈 길이 먼 난민생활의 어려움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준비
	국적취득 이후의 삶	외국에서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 국적
	줌머한국인의 꿈	자신과 같이 남편의 국적취득 소망

7.1. 줌머족의 삶

7.1.1. 이주 결정 동기 :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뿐인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 6은 줌머마을에 이슬람 이주민과 군인들이 들어와서 치타공 산악지대의 줌머마을 한 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을 방송을 통해 듣게 되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뿐이었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숨어서 살다가 몇 달 후에 집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정부군의 지지를 받고 폭력을 통해 선주민 줌머족을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거나 강제적 몰아내었다.

방글라데시 군인과 이슬람 이주민 남자들은 줌머족 여자들을 괴롭혔고 줌머족 여자들의 몸을 더럽혔다. 줌머족 남자들은 여기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대항한 사람은 모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가까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때가 8살 때였어요. 어느 한 마을에는 군인이랑 줌머 사람들이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줌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마을이 우리 마을이랑 가까워요. 우리 친척도 죽었어요. 할아버지 정도인데 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마을은 조금 괜찮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도망쳤어요. 우리 삼촌들이랑 손잡고 도망갔어요. 소리 나서. 8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슬람 사람들 들어오고 나서 많이 무서웠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을 해서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7.1.2. 이주 실행 과정 : 한국에서도 고향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연구참여자 6은 스물아홉 살 때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스님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다. 당시 남편은 한국에 있었고, 한국이 방글라데시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줌머족 마을에 계속되는 군인들과 이슬람 이주민의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남편을 소개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딸이라도 안정적인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 오빠도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고 하여 한국에 있는 남편과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애했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칼리지 졸업하고 수도 다카에서 몇 년 있었어요. 직장도 다니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배터리 관련해서 일도 하고 영어도 좀 배우면서 살았어요. 그때 우리 친구 중에 스님 한 명 있었어요. 여자 스님이었는데 우리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결혼은 한 스물아홉에나 했어요. (중략) 우리 마을이 계속 불안하고 가족들은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 한국으로 가기를 바랬고 안정적인 삶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가족의 뜻에 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7.2. 난민으로서의 삶

7.2.1. 한국 이주 과정 : 남편 소개한 스님과 여행비자로 한국행

연구참여자 6은 2009년에 5월에 남편을 소개해준 스님과 같이 여행비자로 한국에 가기로 했다. 고향 마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서 혼자 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여,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해서 8월에 난민 신청을 했고 난민 비자가 나오기 전에 강화의 전등사에서 결혼식을 했다. 방글라데시를 떠날 때 마음으로 이미 결혼까지 다 생각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유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 고향의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다.

> “처음에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기 싫었어요. 고향에 좋지 않은 일만 생기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때는 여자로서 먼 나라에서 산다는 것도 겁이 나기도 했지요. 사는 풍습, 날씨 등이 한번도 외국에서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말로만 전해 듣고 그다음에는 전화랑 인터넷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면서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은 좋았는데 한국에 가서 살면 또 다 배워야 하는데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강화에 있는 전등사에서 했어요. 우리 남편이 난민 인정도 받지 못했을 때요.”

7.2.2. 난민 신청 과정 : 한국말을 잘 몰라서 어려웠던 인터뷰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던 남편이 난민 신청을 한 이후에 남편을 따라서 바로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인정 시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와 서류를 대조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 1년이 지난 후에 남편과 동시에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한국에 먼저 도착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 “난민 신청 하고 인정받기까지 1년 걸렸어요. 그때는 가구, 플라스틱 공장

에 일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한국어도 배웠어요. 사장님이 좋아서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남편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남편이랑 같은 날에 인정받았는데 이제 부모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7.2.3. 난민의 삶 : 여전히 갈 길이 먼 난민생활의 어려움

연구참여자 6은 난민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은행에 가서도 어려운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관공서에 가서 서류나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도 어려움이 컸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는 것도 힘든 점이 많아요. 그쪽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나 말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G1 비자가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내야 했어요. 난민 인정 이후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지만, 부모님을 초청하지도 못하고 (중략)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있고 힘들어요."

7.3. 줌머한국인로서의 삶

7.3.1. 국적취득 과정 :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준비

연구참여자 6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평일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한국어를 공부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한지 5년이 지나야 하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야 했다. 그래서 2015년 1월 8일에 국적을 신청하고 2017년 9월 2일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반면, 남편은 아직 국적을 받지 못했다. 남편이 국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일이 바빠서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사관 앞에서 줌머족 사태와 관련한 데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들이 와서 데모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데모

를 해서 그 일 때문에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 “남편도 국적신청을 했는데 아직이에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데모 했어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말 잘 몰라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국적 아직 안 나왔어요. 한국에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방글라데시에 하는 것이었는데 불법이었나 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7.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외국에서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 국적

연구참여자 6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랄 때 한국 국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적을 신청하였다. 한국에 살면서 줌머연대 다음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가족처럼 대해 준 곳이 한국 교회였다. 주말에 교회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예방 접종도 교회에서 맞았으며, 교회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연구참여자 6의 가족도 데리고 갔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을 부모님 만나는 일이었다. 한 번은 인도에서 만났고 다음에는 호주에서도 만났다. 남편은 국적을 받지 못해서 같이 가지 못하고 자신과 아이만 갔다 왔다. 한국 국적을 받고 나서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여권을 보여주고 바로 통과되어서 외국에서 한국 국적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다.

> “교회도 있고. 교회는 원래 안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도와줬어요. 교회에서 주말에 한국어 가르쳐주고 어디 여행 갈 때 같이 오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의사선생님 주사도 맞아요. 아이랑 같이 가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주민센터 국장님 있어요. 우리 처음에 올 때 선생님 만났는데 아직도 우리랑 같이 얘기도 하고 공부하고 우리 아이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한 달에 용돈도 5만 원이나 주시고 잘 해주세요.”

7.3.3. 줌머한국인의 꿈 : 자신과 같이 남편의 국적취득 소망

연구참여자 6은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도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은행에서 통장도 만들 수 있었다. 국적취득 이전에는 매번 출입국에 가서 번거롭게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지금은 주민등록증 하나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한국 국민이 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생활도 이전보다 안정적이지만 한 가지 소망은 자신만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빨리 국적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남편도 국적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남편이 국적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보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지못하는 것도 있고 바쁘기도 해서 못 받았어요. 국적취득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국적취득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난민이라해서 심사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귀화와 같이 조곤에 맞는 서류, 체류기간, 거주지 , 은행잔고, 한국어 등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어도 열심히 해야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한국어 공부에 신경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8. 남동생의 수술을 꿈꾸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의 생애사 경험은 다음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연구참여자 7의 생애사 경험

생애 시기		생애사 경험
줌머족의 삶	이주 결정 동기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이주 실행 과정	줌머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
난민으로서의 삶	한국 이주 과정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돈 빌려 한국행
	난민 신청 과정	난민 인정 받은 줌머족 때문에 안정감
	난민의 삶	송금과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 만족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국적취득 과정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국적취득 이후의 삶	한국 국민임에도 여권 요청
	줌머한국인의 꿈	한국에서 아픈 남동생 수술 기원

8.1. 줌머족의 삶

8.1.1. 이주 결정 동기 :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연구참여자 7은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슬람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종교와 신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동물같이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런 생각을 가지 있었기 때문에 치타공 산악지대에 산다는 것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치타공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이 백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군인이 4~50만 명이 들어와서 어디를 가도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반정부 활동을 한 이유는 그때 줌머 여자들이 군인과 경찰한테 성폭행도 많이 당하고 사원도 불태우고 스님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찾아와서 붙잡혔어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보름 후에 밖에 나왔어요. 바로 스리랑카로 돌아갔는데 이제 일이 심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스리랑카에서 살기도 어렵고 고향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되느니 외국 어디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8.1.2. 이주 실행 과정 : 줌머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

연구참여자 7은 치타공 산악지대에 정부군이 들어와서 줌머족을 감시하고 폭행하고 사살하는 현장을 피해 1989년에 인도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인도로 가는 길에는 곳곳에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을 타고 이동했다. 이마저도 낮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밤에 몰래 이동해야 했다. 인도로 갔을 때 이미 그 곳에 또 군인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지키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치타공 산악지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신의 나이 12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불타서 없어져서 치타공 산악지대에 있는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역경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7은 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고 방글라데시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스리랑카 사람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가게 되면서 스리랑카의 사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에 사는 동안 반정부 활동을 계속 하면서 스리랑카 말을 배우고 공부해서 대학교에 1학년까지 다니면서 불교역사를 전공했다. 한번 고향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활동한 것을 알고 집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에게 잡혀가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 방글라데시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정부군이 줌머족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집과 사원을 불태우고 스님들도 죽였기 때문에 줌머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이었다. 그러나 고향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자 다른 외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국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방글라데시 말을 못 해요. 저희가 인도에 간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치타공 산악지대에 부모 없는 아이들 그냥 키우는 보육원 같은 곳에 가서 12살에 스님이 됐어요. (중략) 스리랑카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스리랑카에 갔어요. 스리랑카로 가서 사원에 살면서 공부도 했어요. 한국에 온 게 2005년이니까 22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거기 가서 스리랑카 말 배우고 스리랑카 말로 공부했어요. 한번 제가 방글라데시 집으로 놀러 갔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8.2. 난민으로서의 삶

8.2.1. 한국 이주 과정 :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돈 빌려 한국행

연구참여자 7은 고향 줌머족 마을을 벗어나서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생각 끝에 제3의 나라에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스리랑카에서 한국 아주머니 한 명을 만났다. 아주머니는 한국으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한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조금 주라고 했다.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아주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한국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도 한국에 줌머족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한국에 온 느낌은 생각보다 더 좋았다.

"한국 아주머니를 만나 소개로 한국에 올 때 스리랑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한국 가는 것을 도와는 댓가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여 이를 지켰다. 약 2,000달러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한국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도 한국에 줌머족 많이 살고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나도 한국에 가서 고향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 고향의 가족들에게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한국에 온 것이 너무 좋았고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해줬어요."

8.2.2. 난민 신청과정 : 난민 인정 받은 줌머족 때문에 안정감

연구참여자 7은 2005년에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와서 바로 난민 신청을 했다. 줌머족 사람들은 치타공 산악지대가 이미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마음도 갖지 않았다. 자신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후인 2009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줌머족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난민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난민 신청하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 “한국 들어오기 전에 줌머족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도 줌머족을 받아들였다고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해줬어요. 인간이라는 게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발전되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줌머족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아예 고향으로 갈 수 없고 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난민 신청 했어요. 거기는 너무 위험하고 저는 아예 미련이 없어요. 고향에는 뭐든지 미련이 없어요. 생각을 아예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국 정부가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2.3. 난민의 삶 : 송금과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 만족

연구참여자 7은 고향의 가족들에서 돈을 보내고 있었다. 치타공 산악지대에 있던 가족들은 논밭과 집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만들고 장사할 수 있는 가게도 살 수 있었다. 난민 인정을 받고 나서 난민 여행증명서를 받아 인도에 갔다. 거기에서 부모님의 소개로 같은 종족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 한국으로 왔다. 아내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딸 둘도 낳았다.

은행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었으나 난민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다행히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신청할 수 있었다. 한번은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산재 처리해주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은행과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는 것과 일상이 자유롭고 고향에 돈도 보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치타공 산악지대에 있던 우리 논은 다 잃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땅 사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장사할 수 있게 가게도 사줬어요. (중략) 난민 인정 받아도 문제 조금 있어요. 은행에 가면 우리는 난민 비자잖아요?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면 안 해줘요. 은행은 제가 여기 잠깐 사는 거로 알아요. 난민 인정받겠다는 건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인데 은행에서는 그냥 일반 노동 근로자로 취급해요. 제 생각으로는 은행이 그냥 안 만들어줘도 되지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때는 회사 사장님 통해서 만들었어요. 의료보험도 2~3개월 동안 안 낸데 있었나 봐요. 그거에 이자가 붙어서 십 몇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건 출입국에 전화해서 난민단체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외국에 돈 보낼 때 못 보내요. 출입국에 전화하면 된다고 그러고 은행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해결됐지만 힘들었어요."

8.3. 줌머한국인으로서의 삶

8.3.1. 국적취득 과정 :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연구참여자 7은 일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17년에 국적을 취득하였다. 처음에는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2013년, 2014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들 때문이라도 국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대로 난민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만 크면서 한국 국적이 없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아이들이 한국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서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첫째가 2013년생이고 둘째는 2014년생이에요. 난민 인정 다음에 낳았고, 국적 받았어요. 부인만 아직 국적 없어요. 아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부인은 아직 많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저도 국적 필요 없는 거예요. 난민 인정받고 살아도 되니까. 자녀들이 학교생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지만 좀 크면 아마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을까 봐! 그래서 국적을 취득했어요. 국적취득하고 나서는 엄청 좋았어요.”

8.3.2. 국적취득 이후의 삶 : 한국 국민임에도 여권 요청

연구참여자 7은 한국 국적을 받은 이후, 난민일 때의 생활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은행이나 병원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은행에서 송금할 때 이름이 외국인인 것을 보고 여권을 보여 달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신분증을 보여줬는데도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별받는 기분이 들기는 했으나 경찰에 잡혀갈 위험이 없어져서 안전해서 좋다고 했다. 그는 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으나 난민 인정을 받는 동안, 국적을 받는 동안 이미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난민으로 인정되고 국적취득하고 차이는 돈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은행 갔을 때 편해요. 그런데 국적취득하고 나서도 한번은 문제 있었어요. 신분증 줬는데 이름이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그거 딱 보고 여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있는데 왜 여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송금할 때 여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증명서도 떼와야 해요. 은행이랑 병원 말고는 어차피 일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도 없어요. 부모님이랑 동생을 한국에 데려와서 진찰받고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국적을 땄으니까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방글라데시 있는 가족들은 안된대요. 수술만 할 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생각 하고 있어요.”

8.3.3. 줌머한국인의 꿈 : 한국에서 아픈 남동생 수술 기원

연구참여자 7은 국적취득 이후 조금씩 여유가 생기자 첫 번째 소망으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아픈 동생이 수술이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초대해서 수술시켜 주고 싶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국적을 취득해도 자기 자신은 자동으로 보험이 되지만 형제는 안 된다고 하여 동생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

람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족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었다.

"가장 큰 희망은 한국으로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어요. 여행은 아니고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하려면 많은 돈과 치료비 등이 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 도지 않아서 마음이 매우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동생은 팔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느낌은 아직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정확한 진찰 받아보고 수술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9. 소결

연구참여자 1은 잘사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이슬람 이주민들의 침략으로 인해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끝이 났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다고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대학까지 나온 이후 잠깐의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하였다. 남편이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인정을 받는 동안 기다렸고, 이후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의 처음 시작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어려웠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 한국에서 직장도 다니며 잘 적응했다. 줌머연대와 동네 주민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신경 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고국에서 학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 연락을 하다가 약혼을 하였다. 한국에 먼저 와 있었던 남편은 자신을 한국으로 아내를 초청했고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난민 인정과 국적취득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바라는 점은 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파트에 놀이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방과후 학교에서 공부를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3은 방글라데시에서 프랑스 엔지오에서 지원을 받고 학교에 다녔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학업을 이어갔고 이후 한국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정당에 참여하여 반정부 활동을 하다 신변에 위험이 생겼다.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에서 줌머연대 회장을 맡으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벽돌공장에서 일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모국에 있을 때 반정부 데모 활동을 하는 열렬한 학생 운동가였다. 스리랑카에 있다가 비자 문제로 쫓겨나듯이 오게 된 한국에서 줌머연대의 도움을 받아 난민을 신청했다. 그리고 인도인 아내와 만나 결혼하여 쌍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증가에 생활비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앞으로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줌머족을 위한 활동도 꿈꾸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장남으로 태어나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학업을 이어갔으나 치타공 산악지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생활을 접고 인도로 피난을 갔다. 인도에서 일을 하며 만난 한국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듣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당시 한국에는 줌머족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줌머족으로 처음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였지만 이후 한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 경례를 받은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어린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삼촌들과 학교에 같이 다니며 화목한 대가족 생활을 했으나 이슬람 이주민의 침탈로 인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게 되었다. 도망 다니는 중에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고, 그러던 중 스님을 만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을 통해 들은 한국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져서 결혼 준비를 하여 한국으로 왔다. 이후 난민 인정을 받고 국적취득도 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 남편은 아직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여 연구참여자는 남편의 국적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어린 나이에 고국에서부터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경험하며 밤에 산을 통해 국경을 넘기도 하였다. 그래서 누구보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열망이 컸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고 스리랑카에 가서 공부를 하였으며, 잠시 고향에 방문했다가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참여자는 인접국이 아닌 제3국인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향에 두고 온 아픈 동생의 치료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지역에서 살면서 이슬람 이주민들의 침입으로 마을을 잃게 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주 경로는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고, 인도, 태국, 스리랑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줌머족에서 줌머난민으로, 이제는 줌머한국인으로 자녀를 잘 성장시키고 줌머족의 안전을 기원하며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고 있었다.

Ⅴ. 줌머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Ⅳ장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난민의 생애사적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Ⅴ장에서는 인정투쟁이론을 렌즈로 삼아 줌머족에서 줌머난민, 그리고 줌머한국인이 되기까지 생애 전과정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이들이 경험한 인정투쟁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국적취득 줌머난민들은 일반적인 이주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주 배경으로 인하여 이주 결정 동기에서부터 이주과정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환기마다 겪게 된 일련의 일들 하나하나는 모두 이들의 생애에서 매우 의미를 지닌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줌머난민들은 자발적인 이주자에 비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인정욕구가 강한 만큼 인정훼손에 대한 경험도 클 것이며, 인정훼손의 경험을 통하여 정체성의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지고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이라는 세 가지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서는 자아형성을 위한 노력, 사회저항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자아의식에 따른 욕구 채우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정훼손차원의 경험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지각된 차별과 무시 경험, 비판적 한국 사회, 병리적 한국 사회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적 훼손에 얼마만큼의 상처를 입고 극복하였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상호인정차원의 경험 영역에서는 사랑과 권리획득, 공동체와 연대, 상호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인정획득의 모습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는 ‘정체성 회복 욕구’와 ‘생존 유지 욕구’가 드러났고,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에는 ‘이주민 차별’과 ‘난민 무시’가 도출되었으며,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에는 ‘난민 공동체와 연대’와 ‘사회적 기여’라는 의미가 추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정투쟁 경험의 범주와 요소는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인정투쟁 경험의 범주와 요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인정투쟁 요소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	자아 정체성	정체성 회복 욕구	1. 뿌리째 뽑힌 줌머족의 대항 2. 해체 위기에 맞서는 좀머 가족들 3. 짓밟힌 삶과 재건을 꿈꾸는 민족
		생존 유지 욕구	1. 공공기관에 최소 생계비 도움 요청 2. 인간의 기본권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 3. 자문화 유지보다는 살기 위해 선택한 동화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사회적 정체성	이주민 차별	1. 장시간 노동해도 한국인과 수입 차이 2. 경제활동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 3. 국적취득 조건 충족해도 또 다른 어려움
		난민 무시	1.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난민으로 인식 2. 사업 잘되면 주겠다는 월급, 난민의 호소 3. 무시도 참고 아픈 마음도 인내한 시간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	다문화 정체성	난민 공동체와 연대	1. 줌머연대, 난민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2. 줌머연대와 함께 문화적응과 교육 활동 3. 줌머연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사회적 기여	1.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에 보낸 성금 2. 고국과 전세계 줌머족을 위한 모금운동 3.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 희망

1. 인정투쟁 경험의 개요

줌머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족이다. 이들은 자신의 터전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으나, 결국 국가로부터 폭행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정체성마저 뿌리 뽑힌 채 깊은 산 속으로, 타국으로, 제3국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정주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정주의 꿈도 잠시, 언어도 문화도 낯선 한국에서 또 다른 삶의 역경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통과해야 할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난민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였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해야 했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민에 대한 불신, 선주민과의 다른 처우, 무시를 통한 인간적 비애 등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모국에서 처절한 삶을 살았고, 인간으로서 경험해서는 안 될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정훼손도 인내해야만 했다. 한국 사회구성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 자존감, 삶의 긴장 속에서 이주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줌머난민들의 인정투쟁 요소를 18가지 의미로 기술하였다.

2.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

2.1.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오래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생존해온 터전인 땅과 가족, 친족 모두를 잃는 아픔과 폭력, 살해, 차별 등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까지 모국에서의 성장과정에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한 정체성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일정한 거주지에 안착하지 못한 채 난민생활을 거듭하면서 최종 정착지로 삼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일부 유지되거나 지워지고 재생산되는 가치관 및 사고와 행동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 그리고 자신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새로운 사회에서 회복하고 재정립하여 소수민족인 '줌머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출하였다.

2.1.1. 뿌리째 뽑힌 줌머족의 대항

방글라데시 정부가 선주민인 줌머족에게 양해 없이 이주정책을 펼치면서 줌머족의 땅으로 새로운 이민족들이 점거하다시피 이주하게 되었고, 정부의 힘을 등에 업은 이민족들은 선주민인 줌머족을 몰아내려는 시도로 폭력과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처럼 줌머족은 타의에 의해 외지로 밀려나게 되었고, 인접국으로 피난을 가거나 일부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난민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족과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와 안전에 대한 경계심은 현재까지 마음 한구석에 지각되는 등 난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들은 모두 이웃나라로 동반 피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 한국으로 안 왔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중략) 먼저 남편이 인도로 가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부의 추적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얼마 후에 저도 한국으로 와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땅 때문에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두 번 보고, 제가 기억나는 건 한번 도망갔어요. 할아버지 집도 다 불타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어요. (중략) 줌머족 젊은 남자들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반대해서 데모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2)

"제가 4살 때 인도로 난민 갔을 때 낮에 가면 군인들이 다 산에 있어서 보이니까 밤에 가야 되잖아요. 산을 넘어가서 인도를요. 인도에서 반정부 활동하고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중략)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방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치타공 산악지대 거기 부모 없는 고아원 같은 곳에 와 가지고 제가 거기서 스님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고향을 떠나 타국을 떠돌면서도 뿌리째 뽑힌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목숨을 무릅쓰고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은 가족과 함께 제3국으로 이주하였고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목숨에 위협을 끊임없이 느꼈다. 남편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인도로 갔으나 타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였으며 정부의 추적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모국에서 벵골족의 핍박으로 인해 할아버지 집이 불태워지고 이웃 주민들이 죽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당시 줌머족 젊은 남자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이주정책에 반대하여 데모를 하다가 정부군에 의해 마을이 불타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어린시기부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타국에서 떠돌면서 반정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소수민족 핍박을 비판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를 피해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어서야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머족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비판 의식과 대항 행동을 표출하였다. 이로 인해 더 큰 폭력이 동반되는 연쇄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2. 해체 위기에 맞서는 줌머 가족들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의지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채워 나가도록 한다. 소수민족인 줌머족 또한 가족 구성원이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와 이슬람 벵골족들의 차별과 핍박이 자행되어 오면서 줌머족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급기야 가족의 해체 위기까지 경험하게 된 줌머족은 가족 구성원들을 재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정착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 “고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이 불타서 모두 없어졌어요. 우리 친척이 모두 도망가고, 우리 가족도 모두 흩어졌어요. (중략) 우선 나부터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흩어진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한국 정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3)

>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회운동을 해서 정부에서 군인, 경찰들이 우리 가족, 나를 위협하고 하니까 그래요. 제 눈 앞에서 죽어가는 친척들, 가족들 제가 다 봤어요. (중략) 제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5)

> “다시 고향으로 갔는데 경찰들이 찾아와서 저를 붙잡아 갔어요. 아버지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한 보름 후에 나오도록 했고, 바로 스리랑카로 갔어요. (중략) 스리랑카에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가서 다시 가족과 다 같이 살 수 있나... 스리랑카도 어렵고, 고향에 가도 또 문제 생길수도 있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외국에 어디로 갈까, 어디에 가야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7)

삶에서 함께 살던 가족을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다. 줌머족은 타의에 의해 흩어지게 된 가족을 되찾기 위해 힘든 일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연구참여자 3은 피난 생활 중 고향에 잠시 들렀다가 폐허가

된 마을을 직접 목격하였고, 친척과 가족들이 흩어지고 없는 허망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고 와해된 친족들이 한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접국이 아닌 안전한 나라로 생각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5와 7은 본국과 인접국가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군인과 경찰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으며, 더 이상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예전의 가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처럼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주정책은 줌머족 가족에게 해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였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면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로와 안정 등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동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고향에서 쫓겨난 줌머족에게 가족은 어려운 일을 돕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른 가족보다 더욱 끈끈하고 결속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가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욕구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다.

2.1.3. 짓밟힌 삶과 재건을 꿈꾸는 민족

줌머족은 폭력과 핍박으로 인하여 피난을 하다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난민의 삶을 선택하였으나, 이들은 난민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꿈꾸면서도 와해되어 가고 있는 민족의 재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모국에서의 삶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들의 꿈에는 헤어진 민족 공동체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모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미래의 시간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 오기 전에 그때는 한국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가면 좀 더 공부해

서 더 좋은 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나부터 여기보다는 도망 다니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또 우리 줌머족이 함께 모여 사는 우리 마을을 꿈꾸고 있고요. (중략) 저는 모국에서 컴퓨터, 아키텍쳐(빌딩 디자인) 배웠어요. 건축 디자인을 한국에서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도 일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가게 되면 배운 것을 줌머족과 마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한국에 와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부모님도 도망 다니다가 현재 치타공 산악지대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에요. (중략)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줌머족 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 자녀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 주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줌머족은 다시 함께 살아야 해요. 저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와 3은 우선 자신의 삶이 모국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을 선택하였다. 즉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주를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이주 결정의 이면에는 모국에서 짓밟힌 자신의 삶에 대한 극복을 통해 와해되어 가는 민족의 재건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난민 신분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더라도 모국에서 전공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전문직을 갖기를 원하였고, 비록 지금 바로 모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후에, 부모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2.2.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을 떠나 주변국에 떠돌면서 생활하는 과정에 생존 유지를 위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최종 정착지로 선택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도 생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여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하여 줌머족으로서 지켜온 자문화를 유지하고자 한 강한 의욕을 축소시키고 점점 정주국 문화로의 동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2.2.1. 공공기관에 최소 생계비 도움 요청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 줌머족 동료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난민들의 형편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용기를 가지고 지역의 복지센터나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 “회사에서 두 달 세 달 전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그때 무엇보다 제가 임신이었어요. (중략) 월급을 받지 못해서 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그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지원금을 좀 줬어요. 그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이 낳고 병원비가 모자랐는데, 우리 줌머족 친구가 조금 빌려줬어요. 그 친구도 어려웠는데, 고마웠어요.” (연구참여자 2)

“돈이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있는데 월급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4명이 되어 아내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혼자서 6명을 내가 벌어야 해요. 아침에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는데 210만 원 정도 받아요. 받아서 세금지 제하면 받는 건 한 170만원 정도죠. 아이들 교육비는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요. 가끔 주위분들이 도와주고 있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2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가운데 또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임금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두 번의 쌍둥이 출산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부가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제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혜택도 누릴 형편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이웃으로부터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이들이 기초적인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지역 사회에서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2.2.2. 인간의 기본권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

인간의 기본권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우리는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개인으로서의 존중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이 전제된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치·경제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의 경우는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며, 이를 피해 새로운 국가를 선택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또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

은 실제 정착 과정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참여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줌머족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 말하는 발음이 다르니까 또래 아이들이 차별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 문제를 적극 인식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강하게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은 그런 조그마한 일로도 상처 받고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고 게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속상해서... 미안하지만... (중략) 학교 어머니들 모임이나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2)

>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못 받았어요.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동료 줌머족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돈 못 받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글씨 써서 여러 번 데모했어요. (중략) 한국 생활에서 안 좋은 일 있을 때 주변에 줌머족 친구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줬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2는 한국의 줌머족 자녀들이 학교 교육 현장이나 또래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녀들의 발음과 이국적인 외모로 인하여 항상 걱정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실제 이들은 줌머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학교 어머니들 모임이나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5는 회사에서 일을 했으나 임금 지급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자신들이 난민출신의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무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자문화 유지보다는 살기 위해 선택한 동화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은 정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문화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정주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줌머난민들도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생활 중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줌머난민이라는 신분과 자신들이 약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빠른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언어, 정치, 문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동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줌머난민들은 다시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동화와 수용은 난민들의 빠른 사회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살던 고향하고 모든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고향에서 보지 못한 물건, 도시, 건물, 생활... 하지만 한국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한국어, 한국 문화, 제 종교인 불교... 비슷한 점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 “한국 사람은 제 생각에 외모도 비슷하게 생겼고 아주 오래 전에 알던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고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같은 것을 배우고 만들면 재미있고 더 많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많이 도와주니가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요즘은 저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

> “한국에 와서 직장 일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일을 못 했어요 한국에 처음 와서 동료들과 한국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난민이고 외국인이었던 우리한테도 한국 사람처럼 잘 해주어서 진짜 고마웠어요. 지금은 저도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목적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경제적 혹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모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비자발적인 이주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국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한국 사회에서 치유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때로는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류사회의 문화적 전통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드러내면서 한국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봉사하려는 국민애도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난민들이 동화와 수용을 넘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들이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협력과 상호소통 등을 수용하고 한국인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은 난민이기보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난민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것은 난민과 주류 한국인이 밀접한 관계 맺기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난민과 주류 한국인이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다문화적 민주주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김영순・배을규 역 외, 2013).

3.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3.1. 이주민으로서 차별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이주민의 차별은 지역, 직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난민들은 고향에서 받은 핍박과 고통을 피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로 일반적인 이주민과는 다른 이주 배경 위에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난민의 삶이지만 한국 사회의 여느 이주민들과 같이 새로운 정주국에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 차별은 난민의 삶의 목적의식을 좌절시키게 되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정훼손 차원의 사회문제이다. 선주민은 존중・배려・수용 등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순, 2017).

3.1.1. 장시간 노동해도 한국인과 수입 차이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이며, 이러한 경제적 성장이라는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막상 한국 사회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난민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인들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감이나 주변화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난민들이 느끼는 격차는 사회 적응에 당연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국적취득 난민들을 여전히 이주민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적취득 난민들은 구직문제, 임금 체계 등에서 한국인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제가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중략) 공장에서 더 오래 일을 해도 임금을 더 주지 않아요. 한국 국민이 되면 나라에서 도와줘서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벌줄 알았는데... (중략) 우리가 사는 거는 난민하고 똑 같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4)

“회사에 일 많아도 우리에게는 일을 안 주려고 하고 한국 사람만 일 할 수 있어요. 회사 사장님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르바이트만 시켜요. 아르바이트니까 4대 보험도 없어요. 이건 한국 사람하고 돈벌이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4와 5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이들에게 주요 일자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미숙련 단기적인 일자리만 제공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었다.

국적취득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구성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가하는 구직문제와 임금 체계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며 인정훼손 차원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동등하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즉 국적취득 난민에게 불안정적인 직업과 지나치게 낮은 임금 체계를 수정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1.2. 경제활동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

수용은 어떤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차별적 수용은 어떤 것을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은 한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일을 배분할 때 시간을 배정할 때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임금에서도 차별을 느끼는 등 인정훼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경제활동에 대한 도전 의지를 꺾어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하였고, 결국 더 힘든 경제현장으로 몰아가게 하였다.

> “국적취득으로 한국 국민이 되었지만, 한국은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싶지만... (중략) 아이 둘이나 태어나 키우고 있는데, 공장 일만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서, 공장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찾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 “회사 사장님이 일을 시켜놓고 우리만 돈을 안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돈을 안 줘도 된다고 무시해서 그런 것 같고, 월급도 너무 낮아서 한두 군데 옮기고 했어요. 한 2년 동안 월급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일 받아가지고 하는 도급으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중략) 회사를 더욱 키우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금융기관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제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해서 가져간 서류도 잘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3과 7은 한국 사회에서 업무와 임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으나 임금이 한국인보다 낮아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직장을 옮기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임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인식한 점에 대하여 답답함을 나타내었다.

3.2.3. 국적취득 조건 충족해도 또 다른 어려움

국적취득 과정은 한 나라의 진정한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난민들은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국적취득까지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을 통해 국적취득의 물리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완료하였음에도 국적취득을 위해 거듭 진행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와 기다림은 이들은 많이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일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공장에서 집단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접촉이 적어 언어 습득에 한계가 있어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민 인정자들은 국적취득 과정에 인정훼손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편 이러한 훼손의 경험은 국적취득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과 자세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 인생에서 국적을 바꾼다는 의미는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며, 자신이 지녀온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는 일이므로 정신적 어려움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난민 인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했어요. 우리는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인데, 그런데 이주민하고 똑같아요. 너무 오래 공무원들하고 인터뷰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그런데 기다리면서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돼서 살 수 있나? 마음과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 하면서 많이 노력해서 취득했어요.” (연구참여자 1)

> “회사에서 일하는데 부르고, 서류 전부 만들어서 갔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막 무시하고... 이주민처럼 우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중략)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기에서 제 아이가 외국인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교육 받고 한국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참아내자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과 6은 한국 국적취득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교육문제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취득은 본인보다 자녀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다. 한편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국적취득 과정에 임하고 있으나 이를 알아주지 못하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때로는 인정훼손을 경험하는 등 한국 사회에 아쉬움도 표출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난민 인정자가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정책적 원칙에 따라 다문화적 인식에 기반 하여 이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난민으로서 무시

난민에 대한 무시는 난민을 나와 다른 차별적이고 동화적인 존재로 제한하여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시로 시작되는 인정훼손은 먼저 타자가 기존의 상호 인정 관계에서 형성된 내 인격을 파괴했을 때 발생하다. 무시는 사회관계를 통해 주어진 권리 인격체로서의 지위가 훼손당했을 때 느끼는 것으로, 긍정적 자기 관계에 대한 훼손이다. 무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긍정적 자기 관계에 대한 훼손 상태를 인정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덕적 투쟁으로, 투쟁이 도덕적인 이유는 인격 전체가 무시되는 훼손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무시를 당한 주체는 투쟁에서 자신의 일부분이 아닌 자신의 인격 전체를 걸게 된다. 인격의 파괴는 곧 난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정투쟁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투쟁이 된다. 따라서 인정투쟁의 목표는 나의 현재의 상태가 무시가 아닌 인정을 받는 것이며 나의 인격에 대한 상대자의 인정이다. 결국 인정투쟁은 상대방을 서로 도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여 상대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를 상호 인정하게 만든다.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기존의 인정 관계가 훼손될 때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인정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2.1.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난민으로 인식

이주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라고 한다. 귀화에는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뉘는데 난민들은 한국에 혈연이나 지연의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일반귀화를 신청하게 된다. 일반귀화는 한국에 최소 5년 거주한 성인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과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 때문에 많은 난민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은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 “난민 인정을 받고 어렵게 국적을 취득해서 이제 진짜 한국 국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 전과 다른 게 없었어요. (중략) 제 외모가 다르고, 한국어 발음도 이상하니까 저를 난민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가면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해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줘도 제가 보는 앞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저도 이해는 되지만 아무도 저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구나 생각하면 좀 슬퍼요.” (연구참여자1)

>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민이 되었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중략)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부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외국인 이름 있었잖아요. 그거 딱 보고 외국인이니까. 한국 신분증 줬는데 외국인 이름이니까 여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여권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주민등록증을 줬는데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속상했어요.” (연구참여자 7)

난민 인정을 받은 후 국적취득 과정은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매우 힘겨운 과정이다. 이처럼 긴 시간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국적취득을 하게 된 난민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과 동일한 처우와 인격적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 1과 7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한국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을 받기도 하고, 송금하는 과정이나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 외모로 판단하여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무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다양한 곳에서 차별과 무시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변화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사업 잘되면 주겠다는 월급, 난민의 호소

삶의 기본은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럼에도 난민들은 자신이 일을 한 대가를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급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난민을 고용한 일부 회사들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연시키고 있고, 퇴직 이후에도 계속 기다리도록 하거나 심지어 회사가 없어지는 일도 생기고 있었다.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은 자신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으로 바라보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임금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을 생겨서는 안 되며, 또한 임금 지급에 있어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인과 차별하여 지급하는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직원 모두에게 이해시키고 임금지급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약속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 “회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서 그만 두었어요. 회사를 그만 두었지만 월급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중략) 사장님이 일이 잘되면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돈 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했지만...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했어요.” (연구참여자 2)

“회사에서 일은 우리가 훨씬 많이 하는데 돈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난민으로 보는 거지요. 난민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난민공동체 사람들하고 신고하려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2와 4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심지어 회사 사정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여 일을 중단하는 사례도 경험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기다림을 계속 될 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난민공동체의 힘을 빌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회사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난민으로서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인정훼손의 측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가정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과 같은 유형으로 다루어져서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과 같은 법적, 제도적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국적취득 난민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의 특성을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이한 취급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통해 인정훼손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난민에 대한 차별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별 짓는 행위나 그릇된 편견에서 시작된 무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국적취득 난민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훼손에 맞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3.2.3. 무시도 참고 아픈 마음도 인내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사회적 신분은 이주민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의 신분은 한국 국민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상적으로 한 무리의 집단 안에 형성되는 지위는 유전적·환경적 지위가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성취되는 지위가 있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기득권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우리 잘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략) 일하면서 말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이 일하는 한국 아주머니들이 일 못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몸을 끌어서 ‘이리 와라’ 하는데... 이게 무시잖아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이 아파도 꾹 참았어요.” (연구참여자 6)

> “저희가 줌머족 사람들이니까 외국에 나가면 아예 고향에 못 가니까, 그래서 국적을 안 받으면 계속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적 받으면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 있었어요. ‘잘 될 거야’ 한국 정부가 어차피 고향의 일을 다 사실대로 알고 있으니까, 모국에 군인, 경찰들이 나를 좀 위협하고 했던 일을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많이 설명하고, 많이 기다리고, 또 다시 설명하고... 난민 인정도 어렵고, 국적취득도 쉽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6과 7은 국적을 취득한 이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얻고자 하였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새로운 정주국인 한국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에게 무시를 견뎌내고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국민이 되기까지 겪게 된 수많은 어려움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의 그리움에 대한 아픔의 인내이고, 한국 가족의 미래의 꿈을 향해가는 희망에 대한 인내였다.

4.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

4.1. 난민 공동체와 연대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사회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사회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간다. 한국 사회의 난민들도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에서 난민이라는 공통적인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삶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난민들은 과거 모국에서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정주국의 현실 또한 녹녹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로부터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열망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난민들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동적 공동체의 '나'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 및 행복에 기반이 되는 구성적 공동체의 '우리'로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연대의식을 통해 책임감, 배려, 공감,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과 소속감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4.1.1. 줌머연대, 난민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단순히 모여 사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진다(정지현, 2015).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줌머족들도 경기도 김포시에 줌머연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고, 미얀마 카렌족[34]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공동체를 형

34) 2015년부터 법무부가 재정착 난민 수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온 난민 전원이 인천 부평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 온 미얀마 난민 전원이 인천 부평에 정착해 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5~2018년 법무부가 추진한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을 통해 태국 난민캠프 등에서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출신 난민 112명 전원은 인천 부평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부평지역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미얀마 출신 난민들을 2015년 22명(4가구), 2016년 34명(7가구), 2017년 30명(5가구),

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난민들의 사회적 공동체는 민족적 소속감을 통해 정주국 사회의 적응을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상호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체는 목표나 규범 및 수단을 소유하는 집단,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자족적인 집단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결속력을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다(이재열, 2006). 줌머연대는 줌머족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줌머족의 삶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공동체의 영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

> “한국에서 살면서 어려울 때 줌머연대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해결방법도 찾아줘요. 누구나 어려울 때 있으면 그렇게 일 생기면 우리 줌머족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누구나 얼마든지 다 돈을 모아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월마다 회비도 성인 1인 30,000원 내고, 못내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생길 때 내면 되요. 저도 도움 받았고, 저도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있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2)

> “가끔은 단체에서 뭐 나오면 나눠주는데, 모두에게 나눠주려면 조금만 되니까 쌀 같은 것을 조금 팔아서 돈을 모았대요. 줌머연대가 2002년도엔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 받기 전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국적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중략) 애들 키울 때도 우리는 한국의 교육,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줌머연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민족 사람들이 함께 있고 도와주니까 항상 고마워요.” (연구참여자 5)

>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프거나, 고향에서 누가 아프거나 하면, 페이스북에 올려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회비를 내고 줌머연대에서 돈을 보내요. 또 우리를 도와준 한국 사람도 어려울 때가 있으면,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회비 모아서 보냈어요.” (연구참여자 6)

2018년 26명(8가구), 2019년 17명(8가구)을 받아들였다(출처: EKW이코리아월드(https://www.ekw.co.kr)).

난민들에게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그 이상으로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줌머연대는 이들의 작은 사회라고 할 정도로 구성원들을 통하여 위로와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족과 같은 끈끈함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받은 도움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 혹은 자신들을 도와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위해 환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4.1.2. 줌머연대와 함께 문화적응과 교육 활동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이주민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모국과 다른 생소한 한국의 문화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화와 이방인으로 남게 할 수도 한다. 베리(1992)는 문화변용 단계를 통합과 동화, 고립, 주변화로 나누어 문화적응에 단계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한 난민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사회에 동화 또는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보다 줌머연대와 함께 한국 문화를 더 빨리 흡수하고자 노력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서도 그러한 점이 나타났다.

> “아이는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줌머족 사람들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줌머연대도 교육 도와줘요. 아이가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자란 후에 줌머족 잊지 않게 교육도 좀 시킬 거예요. 아직은 여기 적응, 여기 교육이 더 필요해요. (중략) 우리 종교는 불교예요. 그런데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는 좋아해요. 사실 안 가고 싶지만 몇 번 갔어요. 우리가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연구참여자 4)

> “우리 가족은 애들 모두 줌머사무실에 가서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줘요. 한국말이 가장 어려워요. (중략) 우리는 한국 문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능하면 한국어 잘 배우게 해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많은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6)

"국적을 받기 전에는 한국은 낯설고 제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생각했어요. 한국 국적 받은 거 줌머연대에 감사하죠. 이제 국적이 한국이니까 여유도 좀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 안 해 주니까... 빨리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 많이 시키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서 모국과 다른 생활습관이나 문화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국가가 불교국가지만 자신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주고 지원해준 기관이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교회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 6, 7은 자녀가 온전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의 적응과 교육을 위해 줌머연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줌머연대는 이들의 국적취득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한국 사회 적응 과정뿐만 아니라 줌머 자녀들의 교육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통해 선주민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촉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윤인진, 2006). 연구참여자들도 난민 공동체를 통해 같은 처지의 민족들과 협력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박미숙, 2020).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취득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민족 공동체를 통해 주변을 둘러보거나 민족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줌머족의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다.

4.1.3. 줌머연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자신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교류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난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줌머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소수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자신들의 고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줌머족의 전통축제인 보사비축제를 시행하여, 줌머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초청하여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고향의 소수민족 줌머족의 어려운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보이사비 축제가 매년 4월에 열려요. 이곳 김포에 우리 줌머족들이 모여 모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우리 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줌머족과 협조하고 한국 주민들도 도와주셔서 즐겁게 매년 행사하고 있어요. 줌머족 가족이 모두 참석해서 김포시민들한테도, 세계 사람들한테도, 줌머 사람들 문화 알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알리고, 고향 사람들 이야기, 우리 문화 알리고 있어요." (연구참여자1)

"김포에 살면서 주민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다 인사를 해요. 모르는 분 있으면 인사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친구 만들고 친하게 지내요." (연구참여자 2)

"어렸을 때 축제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 오셔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축제에 가면은 어릴 때 다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보이사비 축제에 가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슬퍼져요." (연구참여자6)

[그림 Ⅵ-1] 줌머족 보이사비축제(2019. 4. 19: 김포)

줌머족 난민들은 난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민족축제를 통해 줌머족의 문화를 알리고 있었다. 난민들의 민족축제는 정주국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화합과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인간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변용을 경험하게 된다. 베넷(1977)은 문화변용을 자민족 중심단계의 부정단계, 방어단계, 최소화단계로 구분하고 문화상대주의 단계는 수용단계, 적응단계, 통합단계로 발전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조정・발전한다고 하였다.

난민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서 다양한 문화변용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와 다른 타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재사회화를 통해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위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가치와 규범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Ferrante, 2003).

4.2. 사회적 기여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받은 다양한 도움에 대하여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여나 봉사의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여나 봉사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난민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 초기에는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정주국 사회의 구성원이었으나 국적을 취득하면서 현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정착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한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어온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타자를 돕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심을 형성하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만들고 있었다.

4.2.1.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에 보낸 성금

모국의 핍박을 피해 타국을 떠돌다가 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처음 한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무일푼으로 도착하여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후 한국 사회에 입국한 난민들은 먼저 정착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한국 사회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들은 난민신분으로,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정착지에서 겪은 어려운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정주국을 위해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 “한국에서 처음에 코로나19 생긴 곳이 대구잖아요. 우리가 회비를 모아서 한국적십자를 통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여기 줌머 사람이 이제는 많잖아요. 지금 조금씩 모으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큰 돈 아니고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한국에 같이 살게 해주고 한 것에 대한 보답과

한국 국민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2)

> “김포에서 살면서 고향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농사짓는 곳이 있고 같이 사는 분들이 제 고향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형제, 가족 같은 외모하고 친절하게 반겨주는 모습이 그래요. 갑자기 고향을 떠나오면서 인사도 못하고 여기에서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줌머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중략)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대구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같이 나눠야지요,” (연구참여자6)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적취득 난민의 삶은 여전히 좋은 형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국민과 지역사회에 자신들도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받은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난민들은 도시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사는 김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과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이념과 관습을 체득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였다.

4.2.2. 고국과 전세계 줌머족을 위한 모금운동

모국 방글라데시를 떠나 난민으로 한국에 정착하였으나 이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자신들은 비록 방글라데시 정부와 군부로부터 수탈과 억압을 피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여전히 모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현재가지 전 세계를 떠돌며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줌머 민족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어 갈수록 민족에 대한 애틋함을 오히려 더욱 강해졌고, 이들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 참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적극성은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두드러지는 순간마다 줌머족을 위한 나눔과 지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한국에 살면서 줌머연대나 김포에 사는 줌머 사람들 어려울 때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해결해요. (중략) 방글라데시에 우리 줌머 사람들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세계에 있는 줌머 사람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힘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연구참여자 2)

> “방글라데시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요. 우리 줌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사는 곳도 다 빼앗기고 교육도 못 받고 그래요. 제 고향 사람들은 제가 한국 국민이니까 부러워해요.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중략) 우리 줌머 사람들은 고향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페이스북에서 줌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 있는지 찾고, 그거 도와주는 일 계속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2와 6은 모국에서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동료애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은 줌머연대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모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줌머족을 돕기 위해 회비를 모으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려움의 유형을 찾아 해결하고자 행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4.2.3.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줌머연대와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은 바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갚아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설계를 하고 있었다.

> “줌머연대는 줌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체예요. 제가 예전에 줌머연대에서 일하면서 회장했어요, 2년 동안. 모임에서 줌머족 위해 여러 가지 일했어요. 한국에서 행사도 만들어서 줌머족 문화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줌머연대는 정말 고마운 단체예요. (중략) 과거에 우리는 이주민이고 난민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국민이에요.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줌머족들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어요. 치타공 산악지대가 불타고, 줌머 사람들 죽으면... 우리는 돈 모아서 보내요. 여기서 서명운동하고, 그러면 신문이나 미디어에 알려지게 되면 방글라데시에 실제로 도움이 돼요.” (연구참여자3)

> “앞으로 사는 날에 대해서는 옛날 제가 모국에서 살던 그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이보다는 더 바랄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 조금 그러니까 애들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략) 대한민국한테 감사해요. 한국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고향의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위해서 많은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연구참여자7)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족들은 난민의 신분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이주민이 아니며 난민 또한 아님을 강조하고, 제한적인 신분을 가진 차별적 존재가 아니므로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으며 공존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정착과정에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정체성의 확장과 재협상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적 역할 수행과 사회적 공존

을 위해 공동체의 참여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주류사회로부터 인정훼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정투쟁을 경험하는 과정에 사회적 정체성을 넘어 다문화적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 공존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인정은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개인과 타인의 성공적인 삶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며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의 기제가 된다. 인간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체성의 형성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인정은 개인과 타인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되며 인정을 위한 인정윤리가 요구된다. 인정윤리는 개인과 타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필요로 한다(문성훈, 2014). 인정윤리에서 벗어난 불인정은 개인의 인권을 훼손한다. 인권의 훼손은 개인의 자아실현 저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동등성 훼손도 초래한다. 권리동등성 훼손은 무시의 형태로 노출된다. 무시는 개인의 자기존중을 훼손하는 굴욕에서 찾을 수 있다(Honneth, 1992; 문성훈・이현재 역, 2015). 굴욕은 인격적 모욕이나 훼손된 인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권존중은 인정과 상보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국적취득 난민들은 난민 이전의 행복과 공포의 두 갈래에서 만들어진 자아를 난민 인정에서 국적취득은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삶의 과정은 자아실현을 위한 변화와 정체성 협상의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줌머족에서 줌머난민의 정체성, 그리고 줌머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켜나가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몸은 비록 타국에 있지만 모국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줌머민족임을 강조하며 행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국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해결하려는 이타심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줌머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면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4. 소결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기술한 난민의 생애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이주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난민들의 인정투쟁 경험에 대한 이해의 범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되었다. 자아정체성에 기반 한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서 정체성 회복 욕구와 생존 유지 욕구의 의미를 도출하였고,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 한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에서 이주민 차별과 난민 무시의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정체성에 기반 한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에서 난민 공동체와 연대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였다.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성에 기반 한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과 민족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의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욕구 충족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국 사회로부터 탈출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들은 모국 사회에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째 뽑힌 상황에서 타국을 떠돌면서 이를 지켜내기 위해 모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대항하였다. 그리고 모국으로부터 줌머민족이 탄압을 받아 흩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에 맞서 짓밟힌 민족과 개인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난민들이 경험한 위협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외부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 내부가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종교 갈등, 민족 분쟁, 정치적·경제적 위기, 사회적 차별 등 난민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이 모국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방글라데시 줌머족들은 생애 전체의 불평등과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인으로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와 생존 욕구 충족이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난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가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연적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

게 되면서도 자신이 가진 줌머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저항을 표현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난민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 한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정주국 사회의 인정과 수용의 욕구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난민들의 경우 난민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 자신이 가진 난민이라는 신분적인 한계는 난민 수용 과정에서 인권적인 문제에 대한 한계와 차별적 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사회적 정체성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난민들은 가진 문화적·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역량보다 사회적 차원의 수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이후 정착과 국적취득 과정에서 사회적 인정을 전제로 한 인정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한국 국적취득이라는 사회적 선택을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수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주민으로서, 난민으로서 인정훼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국적취득 난민들은 인정투쟁 과정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차별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적 수용의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점차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즉 이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국적취득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다문화 정체성에 기반 한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수용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다문화 정체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존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난민들은 자신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는 공동체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난민들은 이주 초기에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공통분모만을 가지고 같은 처지의 이주 난민들의 공동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점차 정주국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동체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주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문화적 교류를 실천하는 욕구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새롭게 정착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수자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변혁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점차 한국인으로서 다문화적 수용 태도와 주류사회의 동화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새로운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새롭게 속하게 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과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난민들은 인정투쟁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모국으로부터 짓밟힌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인정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정주국에서 적응과 공존의 단계에 요구되는 다문화 정체성을 통해 공동체와의 연대하여 사회적 통합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지향하였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자신의 정체성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더 이상 제한적 신분을 가진 차별적 존재가 아닌 정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과 공존을 추구하고 있었다. 즉 난민들의 인정투쟁 과정은 정체성의 확장과 재협상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수용적 역할 수행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참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국적취득 난민들의 인정투쟁의 경험을 통해 미래 한국 정부의 정책, 시민단체의 역할, 난민지원센터의 역할 등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난민 인정 이후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국적법에 의한 일반귀화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일가친척이 없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취업의 제한이 따르고, 경제

적 버팀목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반귀화요건에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 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력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지만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집 계약서, 통장잔고 삼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누려할 권리로서 “기회의 균등”을 말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이란 기본적인 출생, 가족, 인종, 지위, 계급, 종교 등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한국 국적취득이라는 기회는 주워졌을지라도 동일한 출발선의 차이는 멀기만 하다. 따라서 균등한 물적 지원이 없는 난민에게 기회평등과 함께 결과의 평등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으로 점차 다원화 되어가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공유되고 활성화 되어가면서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국적취득 난민이 엄연한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이들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이들의 부당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지켜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의 중요 가치가 투명성, 개방성, 민주화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각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다(장임숙, 2005). 또한 대중들은 시민단체의 전문화를 필요로 하며, 시민단체의 전문화는 일반인의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켜주고 있다(Jaques, 2006). 시민단체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영역과 다르며,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간가치를 옹호하고 시민사회 공공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의존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배타적 이익 추구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공익을 도모한다.

시민사회 영역은 경쟁보다 연대와 동원이 두드러지는 매개적 공간(mediating

space)이다. 이러한 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하나의 집단이나 조직이 공동 목표를 동질화하며 연대를 통한 정치적 기회를 창출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취득 난민들과 시민단체는 연대를 통하여 한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안정된 사회에서 공존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난민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난민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단체로 난민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난민인권네트워크, 피난처, 한국유니세프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각종 분쟁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과 홍수, 가뭄,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민 아이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외국인이나 구금시설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단체의 후원활동은 모국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타국에 도움을 요청한 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적 이념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난민의 국적취득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면서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바로 다양성이 공존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상생이 함께 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존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하는 사회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존의 역동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갖추어야 윤리이다(김영순, 2021).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는 한국 사회의 다수자와 다문화 배경을 지닌 소수자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이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소수자에게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동정이 아닌 포용과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게 될 한국의 다수자들은 거창하고 거대한 일을 찾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타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정투쟁에 대한 경험의 의미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난민들이 지닌 문화적 배경과 상이한 새로운 정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인정투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저항, 인정과 수용, 공존과 통합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로 이주한 줌머난민의 난민 인정과정과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전반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과 정체성 및 인정투쟁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난민의 삶에서 난민인정자의 삶,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투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와 이주와 정착 과정의 갈등과 저항, 인정과 수용, 공존과 통합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난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난민정책 및 제도 등의 요인들을 다루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에 대한 인정투쟁 과정이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국적취득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개인적 경험, 이주 경험, 정착 과정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경험을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상세하고 세밀한 정보를 얻고자 연구자의 풍부한 경험과 직관적인 통찰을 이용한 생애사연구를 활용하여 이들의 인정투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생애사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한 개인의 원하지 않았던 난민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깊이 있는 삶의 여정과 생생하게 체험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기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난민 신분에서 한국 국적취득자의 인정투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모색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생애사적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 국적취득 난민의 인정투쟁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 문제 1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의 이주 과정, 난민 인정과정 그리고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생애사연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문제 2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 경험의 의미를 인정투쟁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및 내용, 그리고 연구동향을 고찰하였고, Ⅱ장에서는 이주와 난민정책을 다루면서 초국적 이주 사회에서의 난민, 한국의 난민정책과 난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줌머난민의 인정투쟁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 렌즈를 마련하고자 줌머족의 특성과 줌머난민, 줌머난민의 정체성과 인정투쟁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Ⅳ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연구하기 위해 생애사연구를 통해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개인의 이주 과정, 난민 인정과정, 그리고 국적취득 과정에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난민의 생애 경험 속에는 삶의 전환기마다 치열하고 투쟁적인 삶의 경험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연구 문제 2를 해결하는 Ⅴ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인정투쟁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이어 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난민의 삶에서 한국 국적취득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적취득 과정에 인정의 무시, 인정의 수용, 인정의 획득을 위한 노력 등 절실한 삶의 여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미디어,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간행물, 신문기사, 저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Merriam(2009)의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적을 취득한 난민들의 삶의 인식과 시각을 난민 신분을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생 전환의 경험, 그리고 자신

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인적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과정에 방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1까지 진행되었고,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90225-3A 이다. 참여동의서에는 연구에 대한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윤리, 심층인터뷰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의해 연구에 접근하였다. 연구의 해석에 대한 타당성과 합당성과를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줌머난민의 인정투쟁의 경험은 상위범주를 토대로 인정욕구 차원 경험,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으로 분류하여 의미를 기술하였다.

첫째, 인정욕구 차원의 경험에는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와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라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 범주에서 도출된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욕구' 에는 '뿌리째 뽑힌 줌머족의 대항, 해체 위기에 맞서는 좀머 가족들, 짓밟힌 삶과 재건을 꿈꾸는 민족' 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생존 유지를 위한 욕구' 에는 '공공기관에 최소 생계비 도움 요청, 인간의 기본권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 자문화 유지보다는 살기 위해 선택한 동화' 라는 의미가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줌머난민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정훼손 차원의 경험에는 '이주민 차별' 과 '난민 무시' 라는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하위 범주에서 나타난 '이주민 차별' 측면에는 '장시간 노동해도 한국인과 수입 차이, 경제활동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 국적취득 조건 충족해도 또 다른 어려움' 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난민 무시' 측면에는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난민으로 인식, 사업 잘되면 주겠다는 월급, 난민의 호소, 무시도 참고 아픈 마음도 인내한 시간' 이라는 의미가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인정훼손에 대해 극복하고자 하는 줌머난민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호인정 차원의 경험에는 '난민 공동체와 연대' , '사회적 기여' 라는 하위 범주가 드러났다. 하위 범주로 도출된 '난민 공동체와 연대' 측면에는 '줌머연대, 난민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줌머연대와 함께 문화적응과 교육 활

동, 줌머연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고, ‘사회적 기여’ 측면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에 보낸 성금, 고국과 전세계 줌머족을 위한 모금운동,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 희망’ 이라는 의미가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정주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줌머난민의 다문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줌머난민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정주국에서 난민 인정 욕구를 실현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인정투쟁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삶의 지평을 확장시켜가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주체적 행위자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난민 문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연대를 통해 언어적・문화적 동질감을 갈망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줌머난민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높은 삶의 질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편견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즉 주류사회의 다수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시민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의 생애사적 경험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이주자 신분에서 난민 신분으로, 난민 신분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주류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난민을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난민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시민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2. 논의 및 제언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서, 이미 난민 협약 가입을 포함하여 여러 인권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여전히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제 한국은 국제적인 이슈인 난민 사태에 대하여 자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한국 사회가 난민 수용에 대해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한국으로의 유입을 노려왔던 동남아권 출신자들은 정주국의 충성심이나 기여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결국 예멘 난민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유럽 난민 사태의 선례를 고려해 볼 때,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한국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루면서 수호한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단지 인도주의적인 가치만을 위하여 많은 위험 부담과 경제적 부담까지 수반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난민은 여전히 낯선 존재이고 난민들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단편적이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각을 넓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에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 증가와 성장 잠재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줌머난민들은 인정투쟁에서 줌머족-난민-난민인정자-한국인이라는 신분의 변화 과정에 자아정체성-사회적 정체성-다문화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생존-인정-공존이라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이들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과 공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적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줌머족으로서의 생존의 욕구에 기반 한 자아정체성의 문제는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닌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수준이 아직 국제적 수준의 난민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줌머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난민 전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난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난민으로서 인정의 욕구에 기반 한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에 입국한 줌머족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 수용하는 정책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의 정착과 체류, 국적취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난민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착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이들이 차별적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으로서의 공존의 욕구에 기반 한 다문화 정체성의 문제는 국제취득 이후의 줌머족이 난민을 넘어 한국인으로서 다문화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연대하고 공존과 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다문화적 가치를 가진 개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삶을 찾아가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연대), 문화(적응), 교육(학습), 정치(참여), 경제(취업) 등의 적응과정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재형성되는 것이다.

전술한 논의점에 따른 난민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재정착 난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재정착난민을 위한 한국어 특수교육, 일대일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활용 가능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 법질서 교육, 사회문화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당당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영구적인 정착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류자격 및 영주자격 취득, 나아가 국적취득까지 모든 체류자격 취득에 용이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도 각 지역별로 난민을 지원하는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운용의 활성화와 난민 숙식 및 생계지원 그리고 의료지원, 한국어 및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 분산을 통해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난민 문제의 해결은 크게 자발적 본국 귀환과 현지 정착 또는 재정착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지 정착의 경우, 난민들은 새로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서 난민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여 난민인정과 국적취득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난민이 난민인정자에서 한국국민의 신분이 되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주류사회의 다수자와 이주 배경을 지닌 소수자 간의 상호 타자성을 인정하는 역동적인 변화와 통합, 수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 줌머족들은 지금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국을 떠나 타지역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 중 일부의 줌머족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김포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비록 타국에 살고 있지만 고향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항의하고 규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정부군과 이슬람 벵골족의 행태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 속에는 공통점을 가진 내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근본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줌머족으로서 겪은 뼈아픈 경험에 비추어 한국 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에 깊이 공감

하며, 앞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적취득자들의 삶의 이야기에 나타난 난민인정 과정의 경험에 근거하여, 선주민들의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해 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고기복(200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比較法硏究, 4, 183-217.

권한용(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10(1), 213-249.

김대근・강태경・이일(2017).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33.

김시정・김지은・신주영・이병호・전효빈・최보경(2016).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공익과 인권, 16, 3-43.

김영순・정경희・정지현 외(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216-241.

김영순(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2017).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오영훈・정지현・김창아・최영은・정소민・최승은・조영철(2016).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2013). 베트남문화의 오디세이, 경기: 북코리아.

김영순(2013).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경기: 북코리아.

김영천(2012). 질적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호), 5-43.

김정현(2007). 문화 간 상호성 확립을 위한 리쾨르(P. Ricoeur)의 인정 이론 고찰, 哲學硏究, 139, 23-45.

김종철(2014). 난민정의에 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1(2), 53-84.

김철민(2012).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과 현황, 동유럽발칸학, 14(1), 355-390.

김현미(2016). 난민정책 쟁점,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한국이민재단 외(2016). 이민정책, 서울: 박영사.

김현실(2006). 문화 정체성, 문화 변용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 캐나다의 소수 민족 이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 정신간호학회지, 15(4), 384-391.

김희진・유호열(2014).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유라시아연구, 11(3), 45-71.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2018). http://nancen.org/.

남부현・김민지(2016). 국제결혼가정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다문화 정체성 발달에 관한 경

험연구, 다문화교육연구, 9(2), 89-114.
문성훈(2016). 벤야민, 지젝, 아감벤의 폭력 개념과 세계화 시대의 인정투쟁, 현대유럽철학연구, 3, 21-46.
박미숙(2019).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217-251.
박봉수・김영순(2019).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이동과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3(1), 135-167.
박선욱(2013).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국내이행법률로서의 난민법에 관한 논의, 가천법학, 6, 21-46.
박애리(2002). 대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사례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현(2016).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법과인권교육연구, 9(2), 89-114.
박정서(2012).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2), 89-105.
박종일・이태정・유승무・박수호・신종화(2013).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13(1), 199-235.
배상식(2012). 다문화교육에서의 아동의 자아정체성 문제, 哲學硏究, 122, 161-189.
법무부(2015). 난민 인정절차 가이드북,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손주희(2018).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2018, 237-246.
송영훈(2016).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19(3), 55-82.
송종호(2005). 특집 : 현대의 난민문제와 한국 ; 현대의 난민문제 ; 난민 인정과 보호제도 분석, 민족연구, 0(23). 81-103.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2016).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122.
시은・이연우(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 정책연구(통일연구원), 20(2), 1-35.
신예진・신지원(2013). 일본의 재정착난민 수용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 東亞 硏究, 65, 191-231.
신지원(2018). 한국 내 방글라데시 이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2(1), 통권 23, 213-249.
신지원(2015).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5(3), 417-457.

이현재(2019). 악셀호네트, 서울: 커뮤니케션북스.
안성경・윤이숙(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127-150.
안진숙(2019). 그림동화책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리터러시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연합뉴스(2017). 난민 심사 공무원 부족…인정 비율 2%로 낮고 1년 이상 걸려, 연합뉴스(20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21400004?input=1179m.
오병훈(2015).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5(1), 69-95.
오승진(2018).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53(3), 389-414.
오승진(2012).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國際法學會論叢, 57(2), 91-112.
오승진(2009).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법의 과제. 國際法學會論叢. 54 2. 183-202.
오경석(2011).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4(2), 71-101.
오태곤(2016).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7(1), 통권14, 431-449.
옥영혜(2015). 한국의 난민정책,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5(11), 187-195.
윤인진(2016).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 37-81
이병철・송다영(2018).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한 재정착난민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1), 35-66.
이용호(2007).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國際法學會論叢, 52(2), 311-338.
이용승(2018).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민족연구, 0(72), 166-183.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장인실・유영식(2010). 다문화 교육 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효과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3(1), 141-161.
장훈태(2016). 세계 난민 문제와 선교, 성경과신학, 77, 163-199.
전수연(2018).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 인정자의 일반귀화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8, 329-362.
정금심(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法曹, 67(3), 645-698.
정상우・최희(2017).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公法學硏究, 18(4), 111-141.
정인섭(2009).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16(1), 197-222.

정유리(2014).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체성의 변화: 대구광역시 동구・경상북도 청도군을 사례로,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현(2015).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 고등학생의 학습 경험에 나타난 프락시스의 의미,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경자・안진숙(2021).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서울: 동문사.

채리나(201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일(2019). 줌머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희(2018). 북한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편집부(2016).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고시계사, 61(2), 109-115.

한동호(2016). 한국 난민정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1), 241-255.

한종현・황승종(2018). 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외법논집. 42 1. 565-592(28쪽).

한종현・황승종(2018).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 59(2), 287-320.

황필규(2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해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해영・김영순(2017).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459-479.

허영식・강현석(2018).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1), 3-32.

홍성민(2002). 정체성과 국제정치=<문명충돌론>의 정치사회학적 이해, 國際政治論叢, 42(1), 7-28.

홍원표(2011). 글로벌・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정체성 교육의 내용영역 구안 및 교과교육과의 연계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4(3), 1-23.

홍정화・김은혜(2019).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 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15(4), 47-62.

Bennett, J. & Bennett M. J. (2003).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ThousandOaks:SAGE

Bennett, M. J. (2009). Comprehensive Multicultural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ed). Boston: Pearson Education Alyn& Bacon.

Bennett, M, J. (2011). Developinginterculturalcompetence. AIEA conference.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N. R. Goldberger & J. B. Veroff (Eds.), The culture and psychology reader (pp. 457-488). New York, NY, US: New York University Press.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Padilla, 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9-25. Boulder, CO: Westview.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Bennett, J. & Bennett, M. (2001).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and domestic diversity. The Diversity Collegium Membership Practice.Buffalo, N.Y.: MultilingualMattersLtd.

Byram, M., Gribkova, B. & Starkey, H. (2002). Developing the Intercultural Dimensionin Language Teaching, Strasbourg:CouncilofEurope.

Byram, M. (200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Byram, M., Nichols, A. & Stevens, D. (2001).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Clark, T. (1990). International marketing and national character: a review and proposal for an integrativ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54(4),66-79.

Castles, S., Ammedola. (2003). The age of migration. New Ynork: The Guilford Press. 537-542.J.

Carl A. Grant, Christine E. & Sleeter. (1948). 김영순・배을규 외 역(2013).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서울: 북코리아.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Elizabeth A. Segal. (2018). Social Empathy: The Art of Understanding Others. 안종희 역, 서울: 생각이음.

Erikson, E. H. (1994). The problem of ego identity (New York: Orbis Books,), 57.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7. New York: Norton.

Ferrante, J. (2003). Sociology: A global perspective. California: Thomson Wadsworth.

Geertz, C. (1999).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Journal Review, 23(4): 659-677. 문옥표 역(2009).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Honneth, A. (1992). Das Andere der Gerechtigkeit Habermas und die ethische Herausforderung der Postmoderne.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2(2), 195-221.

House, J. (1996). Zum Erwerb interkultureller Kompetenz im Unterricht des Deutshen als Fremdsprasche. In: Zfif 1(3).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McGraw-Hil.l

Lazarus, R. (1976). Patterns of Adjustment. (Tokyo: Mc Craw-Hill Kogakusha, Ltd.,.

Liekind, K. Jasinskaja-Lahti, I., & Solheim, E. (2004). Cultural identity,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arental support as determinations of immigrants' school adjustments: Vietnamese youth in Finland. J Adolesc Res, 19(6), 635-656.

Massey, D. (1994). Space, Place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assey, D. (2007). World City, Cambridge: Polity Press.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Nancy Fraser & Axel Honneth. (2014).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he Kontroverse. 김원식・문성훈 역(2014). 분배냐, 인정이냐?, 서울: 시월의책.

Nussbaum, M.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hinney, J. S., & Cha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15(3), 271-281.

Sleeter, C. E., & Grant, C. A. (2003).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Suárez Orozco, M. M. (2005). Rethinking education in the global era. Phi Delta Kappan, 87(3), 209-212.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Ed.), Multiculturalism and Politics of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aylor, C. (1995).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Philosophical Arguments, Cambridge, Mass. and London, England.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HCR(2018). UNHCR Global Report 2017, UNHCR.
UNHCR(2019). UNHCR Global Report 2018, UNHCR.
United Nations New York(201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International Migration, 2019 Highlights.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Migratory Life and Struggles of Jumma Refugees

Eo, Kyeong Joon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2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identity problem that appears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struggles for recognition experienced by Jumma refugees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while adapting to a new settlement country that is different from their cultural background, the conflicts, and resistance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ssues of acceptanc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To this end, the recognition process of Jumma refugees who have migrated to Korean society, the general life experience gained in the process of acquiring citizenship,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adaptation process, as well as the struggles for identity and recognition of the Korean society were studied.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have experienced feelings of loneliness and longing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including ignorance of recognition, acceptance of recognition, and efforts to obtain recognition. In order to draw out the life

experiences of these research participants, seven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the life history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various litera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websites, media, Bangladeshi minority publications, newspaper articles, books, and analyzed using the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of Merriam (2009).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of refugee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a vital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through refugee status, as well as the experience that they have in the various human networks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while preserving their ident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recognition struggl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From the results, it is clear that the experiences of the Jumma refugees' struggles for recognition were classified into the experience of the need for recognition, the experience of the loss of recognition, and the experience of the mutual recognition level based on the upper category, and the meaning was described.

The results demonstrate three things. First, subcategories of 'the need for identity recovery' and 'the need for survival'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 in the dimension of need for recognition. The 'desire for identity recovery' derived from the subcategories had the meaning of 'personal safety, threat of livelihood, family problems, self-improvement', 'the need for survival' included 'social discrimination, political crisis, and human rights'. problem of 'cultural change' were revealed. Through this meaning,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elf-identity of the Jumma refugees.

Second, subcategories of 'discrimination as a migrant' and 'ignoring by others as a refugee'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 in terms of damage to recogniti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as migrants' in the subcategory, the meaning of 'cultural differences, economic differences, discriminatory

acceptance, and human rights limitations' were derived, and in terms of 'ignorance as refugees', 'citizenship acquisition, social status,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acceptance' were derived. ' was revealed. Through this meaning,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ocial identity of Jumma refugees who are trying to overcome the damage of recognition.

Third, subcategories of 'solidarity with refugee communitie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were revealed in the experience of mutual recognition. In terms of 'solidarity with refugee communities' derived as subcategories, the meaning of 'national community formation, social community participation, cultural adaptation, and cultural exchange' were derived. The meaning of 'acceptance and identity formation' appeared. Through this meaning,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multicultural identity of Jumma refugees who want to adapt to Korean society and participate in a sedentary society as a member of society.

From these results it is clear that Jumma refugees were expanding another horizon of life as they experienced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process of living their live it members of Korean society by realizing their desire to be recognized as refugees in their new home country and acquiring citizenship. Furthermore, showed that they participated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to actively demonstrate their identity and become members of Korean society as independent actors. In addition, he not only tried to maintain and develop the refugee cultural community, but also sought linguistic and cultural homogeneity through solidarity with Koreans, and showed his pursuit of identity as a Korean.

The study showed that Jumma refugees ultimately wanted to settle in Korean society stably, show their capabilities as true Koreans, and achieve a high quality of life. Through research,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living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must be respected, and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gainst them. it was able to confirm that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differentiated policies for refugee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and setting goals for civic education.

Key words: acquisition of citizenship, Jumma refugees,
struggles for recognition, identity, life history method